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2025 - 1

2025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매뉴얼

한부모가족 종합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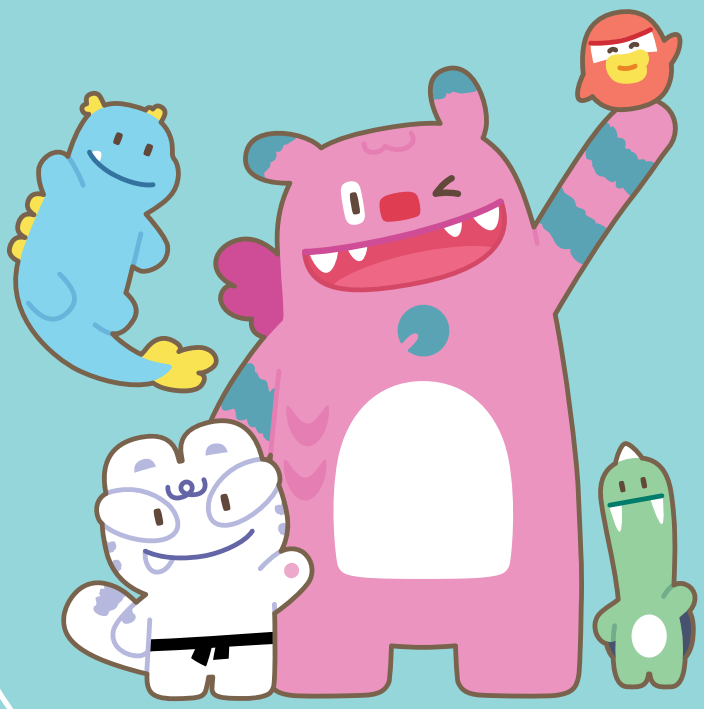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TEL | 02-861-3020

한부모가족 종합가이드북

발간사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한부모가족의 현실에 더욱 깊이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서 꿋꿋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한부모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한부모가족 종합가이드북"이 한부모가족의 손에 닿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양육비 이행 강화', '비양육 부모의 책임성 제고', '가족 다양성에 기반한 복지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며,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약자와의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한부모의 자립지원, 심리지원, 주거지원 등 다방면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제도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부모가족 종합가이드북"은 단순한 제도 나열을 넘어서, 한부모가족이 일상 속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의 유형별로 정보를 정리하였고, 구체적인 이용절차와 준비 서류, 담당 기관까지 꼼꼼히 담았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물론 전국의 한부모가족지원기관,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도 "2025년 한부모 종합가이드북"이 실무자와 한부모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정보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책자가 혼자라 느껴질 때, 앞을 볼 힘이 필요할 때, 조금이나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5년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 이 영 호

2025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1. 주요성과

■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 확대(계속)

○ 서울형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사업 정상 추진

- 지원대상: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실비)

※ 자립촉진수당 및 검정고시 등 학습비는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만 지원

■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25개소) 운영 및 입소자 지원(437명/주거양육, 심리치료 등)

○ 주거비 부담 경감·자립 준비를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총 34호)

■ 재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 맞춤형 정보제공, 사각지대 한부모가족 발굴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운영

- 한부모가족 1:1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심리 지원
- 가사지원서비스와 연계한 마음방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각지대 한부모 발굴

○ 출산, 학령기 자녀 가정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 중·장년 문화활동 시범사업 추진 등

2. 개선 필요사항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지속 발굴 및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자녀 연령 18세 이상이나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등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소득기준 및 금액 상향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지원금액 인상 : ('24년) 월 21만원 → ('25년) 월 23만원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지원금액 인상 : ('24년) 월 35만원 → ('25년) 월 37만원 ※ 0~1세 아동 4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

○ 매입임대주택 3호 추가 확대

- 입소생활인 편의를 고려한 시설(생활실) 리모델링(2인실 → 1인실) 지원 등

○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한부모가족 부담 최소화를 위해 보증금 지원 확대

- 매입임대주택(기존 34호) 신규계약 및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 추가 지원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 한부모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한부모 학업 지원

○ 서울형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정상 추진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 (자립촉진수당) 학업·취업훈련·취업활동 참여 시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비) 검정고시 준비(학원비 등) 또는 중 고교 재학(교통비 등) 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실비)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 한부모가족 발굴 및 맞춤형 지원

○ 한부모가족 통합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한부모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 운영,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등 사업 추진

○ 생애전환기의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중·장년 한부모 대상 인생 재설계 지원을 위한 교육 문화활동 지원사업 <쉼표하나> 추진

■ 한부모가족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

○ 한부모가족지원 종합안내서 제작·배포 및 인식개선 카드뉴스 지속 제작예정

2025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매뉴얼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 길라잡이

· CONTENTS ·

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0p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비전 ····· 11p
2.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 소개(2025)

Ⅱ.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개정내용 24p

1. 소득인정액 기준 ····· 25p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3.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Ⅲ. 서울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안내 28p

1.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29p
2. 출산지원시설
3. 양육지원시설
4. 생활지원시설
5. 일시지원시설
6.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용시설)

Ⅳ. 생활 영역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36p

1. 법률 및 금융 지원 ····· 55p
   - □ 양육비 이행 원스톱종합서비스(양육비이행관리원)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복지법률지원(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법률홈닥터
   - □ 마을변호사
   - □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신용회복위원회)
   - □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한부모가정의료보험1기~3기)

2. 주거 지원 ····· 76p
   - □ 공공임대주택 개요
   -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 □ 임대주택별 세부내용
   - □ 국민주택기금
   - □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 □ 주거복지센터
   - □ 주거급여
   -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 □ 한사랑 전세론(한부모가족 전세자금대출)

3. 교육 지원
   - □ 장학금 지원
     - 1)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 114p
     - 2)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 3) 서울특별시 자치구 장학금 관련기관
     - 4) 아이들과미래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 5) IBK행복나눔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 6)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 7)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 8)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든든 학업지원금 지원
     - 9) KT&G 복지재단 장학사업
     - 10)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지원

□ 학습지원
1) 학력인정 평생교육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초록우산 아이리더"
4)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6)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7) 진로와 진학 주요 정보 검색 사이트 안내

4. 양육지원 ····· **132p**
□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
□ 임신·출산 지원
□ 자녀성장지원
□ 보육지원
□ 돌봄지원
□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기관

5. 자립 및 취업지원 ····· **152p**
□ 취업 및 창업 교육지원
□ 창업 자금 대여
□ 근로복지공단
□ 자산형성 지원

6. 의료지원 ····· **179p**
□ KT&G 복지재단
□ (재)아름다운 동행
□ 한국여성재단
□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의료비 지원
□ 우천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의료비 지원

7. 위기지원 ····· 185p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서울형 긴급복지
□ 바보의 나눔: 여성가장지원사업
□ 신한희망재단: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 이랜드복지재단 위기 지원사업 'SOS위고(WE GO) 사업'
□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8. 기타지원 ····· 192p

210p V. 부록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211p

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 2 3 4 5

Ⅰ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비전

Vision 한부모 가족의 돌봄, 성장, 미래를 함께하는 서울

Mission

함께 만드는 한부모 가족지원
함께 나누는 한부모 가족지원
함께 누리는 한부모 가족지원

Value

한부모 가족의 돌봄
한부모 가족사업의 성장
한부모 가족과 소통
한부모 가족지원의 혁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종합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활성화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 한부모가족 상담지원 체계화 ◆ 한부모가족 스마트서비스	◆ 한부모가족 서비스 총괄지원 ◆ 한부모가족 네트워크 활성화 ◆ 한부모가족 생활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인식개선 사업 확대 ◆ 미래지향적 한부모가족 지원 ◆ 쉼과 여가가 있는 환경조성

2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 소개(2025)

1) 한부모가족 생활밀착형서비스지원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초기 한부모, 위기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선배 한부모 또는 복지·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가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리·정서적 지지, 복지 정보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모집기간	2025. 3. ~ 2025. 10.
지원대상	사회, 정책적 지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1:1 연계를 통한 한부모가족 정책 정보, 자녀양육 정보, 심리/정서적지지, 양육비 이행 정보제공 및 지원기관 동행 서비스 지원(총 5회기)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홈페이지 온라인 양식)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 의	☎02-6337-3026 (맞춤형복지팀)

2)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

한부모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해 서울시 내 전문 심리상담기관을 연계하고, 1인당 최대 10회기 대면 1:1 심리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모집기간	2025. 3. ~ 2025. 10.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센터 연계 및 1:1 맞춤형 심리상담 10회기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홈페이지 온라인 양식)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 의	☎02-6337-3026 (맞춤형복지팀)

3) 한부모 자녀성장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육아용품을 지원합니다.

▢ 출산축하성장용품 "꿈틀박스"

모집기간	2025. 3. ~ 2025. 12.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출산 12개월 이내 한부모
지원내용	영유아 성장용품 꾸러미(아기띠, 젖병 등) 지원 ※ 물품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구성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를 통한 신청 - 이메일: hanbumo1@seoul.go.kr - 팩스: 070-7469-3024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 의	☎02-6337-3025 (복지환경지원팀)

▢ 돌잔치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5. 5. ~ 2025. 11.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생후 10개월 ~ 18개월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내용	돌찬지 장소(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본식, 의상, 헤어, 메이크업, 촬영 및 앨범, 식사(10인분 기준)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를 통한 신청 - 이메일: hanbumo1@seoul.go.kr - 팩스: 070-7469-3024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 의	☎02-6337-3025 (복지환경지원팀)

▢ 미래설계직업체험 프로그램

모집기간	2025. 5. ~ 6.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3~5세 한부모가족 자녀&부·모 20가구
지원내용	학령기 전 아동 대상 미래설계직업체험(키자니아) 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를 통한 신청 - 이메일: hanbumo1@seoul.go.kr - 팩스: 070-7469-3024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 의	☎02-6337-3025 (복지환경지원팀)

▢ 학령기 아동 지원 사업 "우리아이 첫 입학을 축하해!"

모집기간	2025. 1. / 2025. 6.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초등학교에 입학한 한부모가족 자녀와 가족을 축하하기 위한 책가방 구입비(10만원) 지원 & 신발 구입비(8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관을 통한 이메일 신청 - 이메일: hanbumo1@seoul.go.kr
제출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 후기 및 만족도조사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 의	☎02-6337-3025 (복지환경지원팀)

4) 중·장년 한부모가족지원

자녀가 성년이 되어 독립하는 생애전환기의 중·장년 한부모에게 전문기술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합한 훈련을 통해 직·간접적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여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집기간	2025. 5. ~ 2025. 9.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장년 한부모(만 40세 ~ 만 65세)
지원내용	전문기술양성교육(컬러에듀스터), 템플스테이 '쉼표하나'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이메일: hanbumo1@seoul.go.kr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한글파일)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강의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 의	☎02-861-3020 (맞춤형복지팀)

5) 경계선 지능 한부모 지원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합니다.

모집기간	2025. 2. ~ 2025. 11.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지원내용	- 종합심리검사 지원 (센터 연계기관에서 종합심리검사 진행) - 맞춤형 서비스 연계 (양육코칭,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신청방법	-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 진행 후 내방 접수 - 복지기관을 통한 기관 접수(공문 신청)	
제출서류	기관	- 신청공문, 종합심리검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상자	- 종합심리검사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문 의	☎02-861-3023 (맞춤형복지팀)	

6)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이렇게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상호지지를 위한 모임을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자조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서로를 지지하며 자립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임 활동비, 교육, 문화 여가 활동, 봉사활동 등 자립을 향해 함께하는 우리동네 자조모임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우리동네 자조모임 알아보기! (운영기관 문의전화 후 가입신청)				
연번	자치구	자조모임	운영기관	전화번호
1	강남구	여성한부모가족지원사업 '굿맘'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02-2040-1657
2	강동구	도담보담	성내종합사회복지관	☎02-478-2555
3	강서구	나, 너, 우리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02-2668-8600
4	관악구	가족의 꿈을 그리다	서울YWCA 누리봄	☎02-888-7983
5	금천구	우리가(家) 웰빙패밀리	금천구가족센터	☎070-7487-5503
6	노원구	징검다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02-920-4530
7	도봉구	따로 또 같이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8	도봉구	설레임	도봉구가족센터	☎070-8858-0848
9	동대문구	소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02-920-4530
10	동작구	꽃보다 아름다워	동작종합사회복지관	☎02-6298-8130
11	동작구	취, 창업 활동가모임	글로벌한부모센터	☎02-826-8881
12	동작구	공간열고 마음열고	서울한부모회	☎02-815-1563
13	동작구	거북이 오남매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29-7137
14	서초구	나너보듬	서초구가족센터	☎070-7436-2420
15	성동구	아.파.트	선재누리	☎02-6959-6858
16	성북구	해피투게더	월곡종합사회복지관	☎070-4825-3812
17	송파구	We 함께~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서울시지부	☎02-488-1880
18	양천구	울림	목동종합사회복지관	☎02-2651-2332
19	양천구	한마음회	(사)우리더불어이웃	☎02-3280-7002
20	영등포구	맘마미아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070-5202-0551
21	은평구	맘's 터치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02-6951-0301
22	은평구	힐링타임	녹번종합사회복지관	☎070-4441-1312
23	은평구	당당하게 날다	은평구가족센터	☎02-351-3751
24	종로구	웃음꽃 동행	(사)참여성노동복지터	☎02-744-4010
25	종로구	다문화 한부모 자조모임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
26	종로구	좋은 벗	(사)지혜로운여성	☎02-722-2101
27	중랑구	봄봄가족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02-438-4011
28	중랑구	수혜자에서 공헌자로 자립	생각나무BB센터	☎02-2208-0130

7) 한부모가족 위기지원사업

우리 주변에는 미처 돌아보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위기상황 극복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원합니다.

▢ 한방의료지원사업

모집기간	2025. 1. ~ 2025. 12.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출산 직후 ~ 산후 12개월 사이의 중위소득 100% 한부모 24명
지원내용	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른 산후풍 등 치료한약 1개월 분 제공
신청방법	센터 이메일(hanbumo1@seoul.go.kr) → 제출 서류 첨부 → 신청완료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3개월분 제출 시 대체 가능)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 의	☎02-6337-3025 (복지환경지원팀)

▢ 식생활지원사업 “한끼의 품격”

모집기간	2025. 2. ~ 선착순모집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세븐일레븐 편의점 모바일 푸드 쿠폰(7만원) 지급 (연 1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www.seoulhanbumo.or.kr) 홈페이지 (사업신청 → 2025년 식생활지원사업 ‘한끼의 품격’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한글파일)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 의	☎02-6337-3025 (복지환경지원팀)

8)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한부모는 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과 스트레스, 역할과중에 따른 피로감을 느낍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적 안정, 시간빈곤을 해소하여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모집기간	- 1차: 2025. 3. 6. ~ 3. 27. - 2차: 2025. 5. 8. ~ 5. 16. - 3차: 6월 중 모집 예정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한부모가정 - 조건에 따라 선착순 매칭 (1가지 이상 해당 시 우선순위로 연계) < 우선순위 조건> • 신규 신청자 • 다자녀 가정 • 취업 또는 학업 중인 한부모가정 •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가사가 어려운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청소, 세탁, 설거지 (연 15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1회당 3시간 - 서비스 이용료: 무료(예치금 34,000원 입금 필요)
신청방법	- 신청서(홈페이지 내 작성) 공통,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pc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신청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클릭 - 해당사항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홈페이지 주소: http://seoulhanbumo.or.kr
제출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3개월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조건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중 해당사항 택 1
문 의	☎02-861-3012(복지환경지원팀)

9) 한부모가족 권익증진사업

한부모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과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권익증진 포럼을 개최하고 센터 이용자와 전문가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기 간	2025. 3. ~ 12.
내 용	- 한부모가족 권익증진 포럼 진행 - 이용자 욕구파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이용자위원회 회의

10)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아직까지도 사회에 공공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전문적인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일반시민, 한부모가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이해교육을 위한 이해교육 콘텐츠 개발 - 한부모가족 이해자료 노출을 통한 인식개선 진행 - 가족 다양성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11) 모두하나대축제

한부모가족, 자녀, 이웃,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축제의 장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올바른 정보제공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확산 및 통합적 사회환경조성을 위한 자리입니다.

기 간	2025. 9.
내 용	- 한부모가족의 날 축하 캠페인 - 모두하나대축제 특별이벤트 -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 다양한 체험·놀이 부스운영 진행

12)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중장년 한부모는 자녀의 독립 이후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100세 시대에 대비한 생애전환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한부모가 미래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무관리, 건강,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실질적인 생활설계 영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생애전환기 중·장년(만 40세~65세) 한부모
지원내용	생애전환기 중·장년 한부모 미래 설계 교육 프로그램 보급
문 의	☎02-861-3011(복지환경조성팀)

13)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나는 가장이다!"

한부모가족의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서민주택금융재단의 후원으로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청대상

-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취학 시 만 22세 이하)
  -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13,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 계약일자

구 분		2025년 일정		
		1차	2차	3차
대출 조건	신규/재계약 기간	2024년 9월 1일 ~ 2025년 3월 31일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2025년 4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사업일정

구분	1차	2차	3차
서류접수	2025. 3. 17.(월) ~ 4. 25.(금)	2025. 6. 16.(월) ~ 7. 25.(금)	2025. 9. 1.(월) ~ 10. 2.(목)
대상자 발표	2025. 5. 26.(월)	2025. 8. 25.(월)	2025. 11. 10.(월)
약정서류 접수	대상자 발표시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공문 발송		
대출금 입금	5월 중	8월 중	11월 중

대출금액

- 신규,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임차보증금 차액만큼 무이자로 대출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임차보증금 대출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 최대 3백만원)

예) 대출 가능 금액
: (신규 또는 재계약 후 임차보증금)750만원 - (기존 임차보증금)500만원
: 250만원 대출 가능 ⇒ 기존 계약서와 비교하여 상향된 금액 확인

상환방법 및 상환금액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원금상환(무이자)

대출금	상환 금액	상환기간 (최장)
300만원 이하	매월 5만원	60개월
3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50개월

* 인센티브 지급: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대출금의 10% 인센티브 지급

대출조건

일정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기존보다 상향되어야 함

대출불가 세대	-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등 부동산 소유자 •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민법상 대출 불가) •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1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용관리대상자(개인회생, 파산 등)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 일자 기준) 성실상환 중인 자(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 개인 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문 의	☎02-861-3011(복지환경조성팀)

※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재)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지자체 또는 복지지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개인 신청 불가)

필수 서류	신청 기관	- 서식1. 신청기관 신청서	- 센터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로드 - 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필수)
	신청자	- 신분증(앞면)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청기관에서 신청자 본인 여부 신분증 복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신분증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서식2. 대상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자 본인 자필 작성 - 밑줄 등 임의수정, 수정테이프 절대 불가 (수정 필요 시 새로 작성)
		- 서식3. 대출거래약정서	
		- 서식4. 성실상환 확약서	
		- 자동이체 신청 확인서	- 주거래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후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본인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삭제 필수
		- 임대차계약서(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사본),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사본)	- 재계약의 경우 • 보증금 증액 납입고지서 또는 재계약 신청서 추가 제출 - 임대주택 보증금 증액의 경우 • 서식5. 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예정확인서 추가제출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① 무상임차 ② 비주택 거주자 ③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 무상임차 •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 시설거주자 • '시설입소 확인서' 제출
		- 등기부등본	- 신규/재계약 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발급용)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소
		소득증빙서류(택1)	
		1.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50% 이하)	- (발급처) 정부24 및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52%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3.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100% 이하	- (해당)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피부양자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증빙서류 제출
해당자	신청자	심사 평가시 가점 부여	
		- 청소년 한부모	등본(신청자 연령 및 동거자녀) 확인
		- 다자녀(3명 이상) 양육	
		- 장애인증명서 1부	가구원 중 장애등급 1~3등급인 경우에 한함
		신용회복 대상자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각 1부	- 신용회복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

▢ 대출 진행 기본 원칙

심사 원칙	대출 지급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
사업 원칙	이미 대출을 지급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형평성 고려)
협력지원의 원칙	- 대출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개인신청 불가) - 신청기관은 추천 대상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지급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신청기관 • 신청자의 개인 정보(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가 변경될 경우, 본 센터로 전달해야 함 • 추후 대출지급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출지급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함

14) 후원

<table>
<tr><td>개인후원</td><td>- 후원 종류
<table><tr><td>정기후원</td><td>- 매월 정기적으로 약정된 금액 후원</td></tr><tr><td>일시후원</td><td>- 한부모가족을 위한 비정기적 1회 후원</td></tr></table>- 후원 참여 방법
① 센터 홈페이지 접속(www.seoulhanbumo.or.kr) → 후원/자원봉사 → 후원안내 → 화면하단 일시/정기후원하기
② 후원금 전용 계좌: 신한은행 140-012-644295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td></tr>
<tr><td>기업후원</td><td>- 후원 종류
<table><tr><td>기금후원</td><td>- 기업기부(수익금 일부 기부),
- 임직원기부(급여 일부 기부) 등을 통한 기금 후원</td></tr><tr><td>기부물품 후원</td><td>- 생활용품, 양육용품 등 기업이 생산 · 판매하는 물품 후원</td></tr><tr><td>나눔후원</td><td>-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 여행 지원
- 한부모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 형태의 나눔 후원</td></tr></table>- 후원 참여 방법: 후원 상담 → 후원 제안 및 협의 → 후원 확정 및 협약 → 후원(기부증서 발급)</td></tr>
<tr><td>문 의</td><td>☎02-861-7173(복지환경지원팀)</td></tr>
</table>

한부모가족의 후원자가 되시면 모든 후원금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88조의 4 및 법인세법 제24조)

Ⅱ.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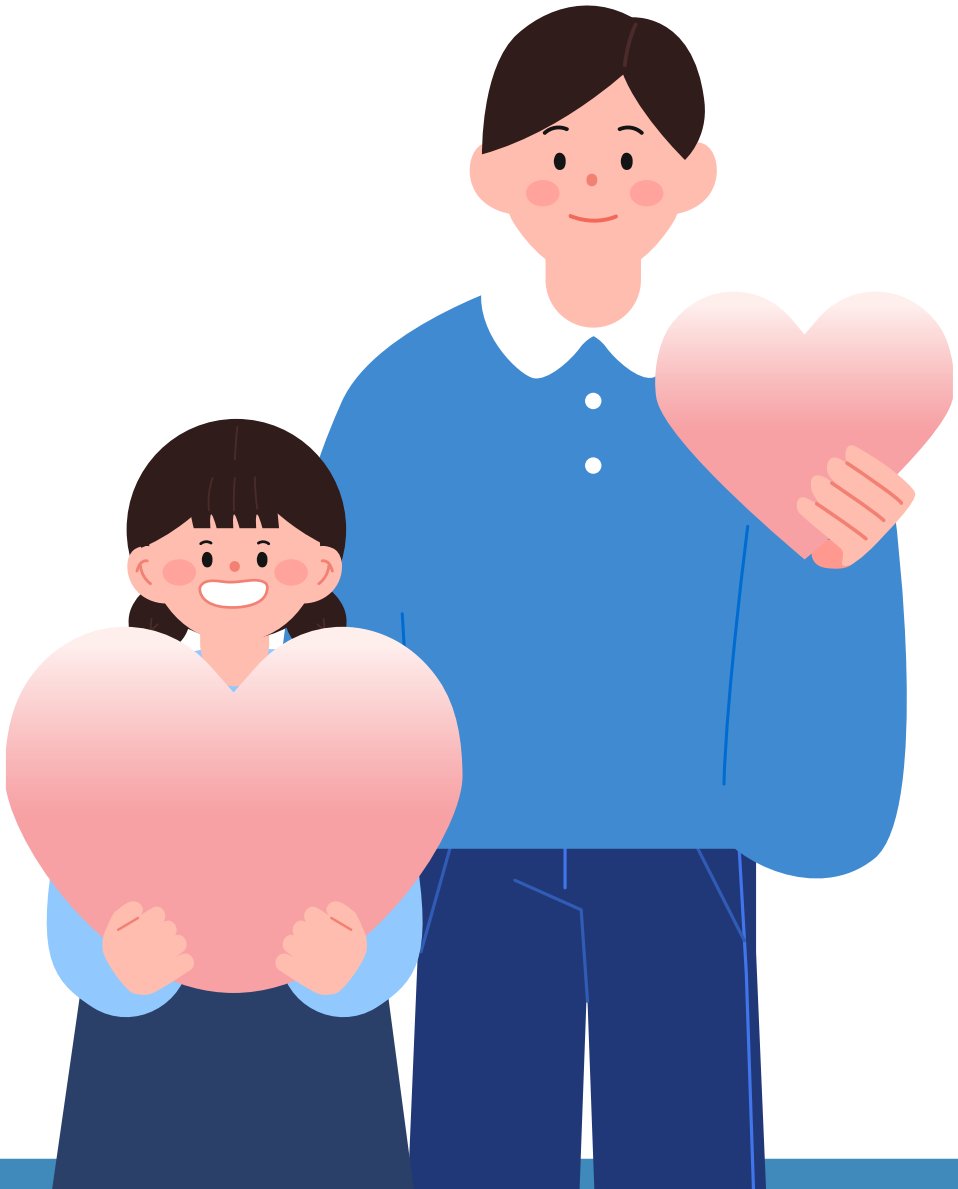

Ⅱ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 소득인정액 기준

1)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 소득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구 분	개정사유	2025년 개정 사항
조사	소득조사	- 근로·사업소득을 '20만원+30%' 공제하는 연령의 범위 상향(25세 이상 → 30세 이상)
조사	소득조사	- 근로·사업소득을 '20만원+30%' 공제하는 연령의 범위 상향(75세 이상 노인 → 65세 이상 노인)
조사	재산조사(자동차)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 완화(차량가액 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복지급여의 실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23만원** 지원
복지급여의 실시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등학생에게 **연 9.3만원** 지원
복지급여의 실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7만원**(단, 0~1세 자녀는 40만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구 분	개정사유	2025년 개정 사항
입소기준	위기임산부 특례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포함)는 출산지원 시설에 소득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복지부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모든 유형의 시설에 입소가능('24.7.19.)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저소득조손가족 반영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제외)에 입소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부 또는 조모로서 18세 미만의 아동 등 양육시

3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월 23만원**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기능보강: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 24세 이하 위기임산부 소득기준 무관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단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	대한법률 구조공단

Ⅲ.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내

1 2 3 4 5

Ⅲ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내

1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시설 유형	시설수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출산지원시설	6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1년 이내) 한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에게 건강관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1년6개월 (6개월)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1년)
양육지원시설	8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3년(1년)
생활지원시설	8	18세 미만[1]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자립을 지원	5년(2년)
일시지원시설	1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	6개월(1년)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 해결 지원	이용시설

* 입소 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은 각 시설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출산지원시설

▢ 시설현황

출산지원시설 (6)	구세군두리홈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41	☎02-363-5722
	마음자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53나길 53	☎02-2691-4365
	애란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02-393-4723
	마포애란원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4나길 5	☎02-711-4725
	(사)깨달음과나눔 도담하우스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23가길 6-4	☎02-449-8893
	애란세움터 (비양육모)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47길 61-22	☎02-703-4406

▢ 입소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 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을 양육하는 여성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 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라. 교정 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의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2)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 전 임신부

3)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 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소득기준 초과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도 포함
- 소득기준 초과자는 시설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입소 가능, 시설 재정상황에 따라 의료비 등 지원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 여부 확인 필요
- 「위기임신 보호 출산법」상 위기 임산부로서 출산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 제1항 1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동반입소 가능

▢ 입소기간

1년 6개월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의 경우 2년 이내로 시설 입소 가능하며, 자립준비 등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총 1년 이내 연장 가능 (단, 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기준 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 승인 시 별도로 입소기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1) 주거 및 식사 제공

2) 분만 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지원 대상자로 관리
- 지역 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임신 및 출산 관련, 분만을 위한 병원 진료, 진료를 위한 병원 이용료로서 의료급여항목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하였을 경우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모와 아이의 질병 진단·치료·입원, 예방접종비 등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료비

※ 의료급여 선정 이전 기간 및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참고에 대해 지원(세부내용은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고자 상담 의료지원 내용 참조)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가능
- 미혼모 특수치료비와 해산급여는 별도임(중복지원 가능)

3) 자립지원

직업교육, 학업 지속(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검정고시 등), 교양교육, 가사교육, 상담지도 등

-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 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영유아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 심리 • 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참고

3 양육지원시설

▢ 시설 현황

양육지원시설 (8)	애란영스빌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20길 44-13, 303호	☎02-333-4725
	구세군디딤돌	서울시 종로구 평창12길 8-18	☎070-7547-8895
	달빛둥지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17길 24-13	☎02-912-1616
	구세군두리마을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41	☎02-313-3370
	애란모자의집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4길9-7	☎02-391-4725
	아름뜰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32-3	☎02-334-4614
	생명누리의집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25가길 3-21	☎02-326-5891
	한남하우스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6가길 302호	☎02-2661-8805

▢ 입소대상

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로서 일정 기간 주거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입소기간

1) 3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2) 기간 연장 시 자녀 양육 계획 및 추후 자립계획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양육 및 건강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

▢ 지원내용

1) 주거 등 생활 지원

2) 자립 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 기관을 활용
- 양육교육, 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 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공동생활지원형 시설은 보장시설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지급 시 참고

4 생활지원시설

▢ 시설 현황

생활지원시설 (8)	동광모자원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23-1	☎02-930-5782
	성심모자원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12길 11-3	☎02-712-5287
	영락모자원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5길 47	☎02-941-1970
	창신모자원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8나길 28	☎02-2612-7142
	평화모자원		서울시 구로구 안양천로539길 18	☎02-2614-4303
	해오름빌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26길 21-3	☎02-754-5702
	부자 가족	선재누리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4길 21	☎02-6959-6858
		구세군한아름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8길 36-5	☎02-2691-8445

▢ 입소대상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 성별(모(母) 또는 부(父))에 따른 전용 시설 입소)
2) 출산 지원시설 또는 양육지원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 입소기간

1) 5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단, 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기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 승인 시 별도로 입소기간 연장 가능)
2) 시설장은 기간 연장 시 현재까지 입소자의 자립성과 및 추후 자립계획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도
   - 법 개정에 따라 입소기간 동안 자녀 중 일부 아동의 연령이 「한부모가족기원법」상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단, 군복무후 취학 시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초과하더라도 연령 초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므로 입소기간 보장 〔단, 연령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지원 중단)하되, 시설 내 입소기간 보장〕

▢ 지원내용

1) 주거 등 생활지원
2) 자립 프로그램 실시: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 시설 내에 직업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 기관을 활용(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3) 심리 • 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4)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5) 자립준비 활동 중 양육 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6)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참고

7) 지역사회 유대 강화

- 지역사회 민간단체•종교단체•기업과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입소자의 편의와 유대감 증진,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 시설의 놀이터, 운동장, 강단 등 문화•체육 부대시설을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하여 운영가능

5 일시지원시설

▢ 시설 현황

일시지원 복지시설(1)	비공개시설	주소 비공개 (서울시 소재)	☎02-1366

▢ 입소대상

1)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모(母) 또는 부(父)의 건강을 해치고 아동을 양육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母) 또는 부(父)와 그 자녀(자녀 동반 없이 혼자 입소를 희망하는 모(母) 또는 부(父)도 가능) 단, 긴급하게 입소 대상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상황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시•도는 부자가족이 이용 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부 또는 조모로서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부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조부모 성별모(母) 또는 부(父) 기준 시설 입소

▢ 입소기간

6월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지원내용

1) 주거 및 식사 제공, 생활보조금 지원(본 지침에 따름)
2) 의료혜택: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지원 대상자로 관리

3) 법률상담, 심리상담
4)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5)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지원

※ 배우자의 면회 요청 시 입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회 여부 결정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

6) 자녀의 방과 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7)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8)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 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9) 학령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시설 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제73조제6항, 제89조제5항, 「가정폭력 방지법」 제4조의 4 등 참조

※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교육장에 전·입학을 신청

※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장시설)」에 따름

10)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가능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 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6호

6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용시설)

▢ 시설 현황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3)	한국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8, 201호	☎02-704-4750
	이주배경 한부모가족상담소	서울시 양천구 월정로48길 15-2, 1,2층	☎02-792-7937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KUMSN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2길 41 유니온빌딩301호	☎02-322-5007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소태산기념관 4층	☎02-861-3020

▢ 이용대상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 해결 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름

Ⅳ.
생활 영역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1 2 3 4 5

■ 생활영역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법률 및 금융지원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양육비이행 전문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p.55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취약계층 가정폭력피해 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면접, 서신 및 전화, 지상, 순회, 인터넷, 출장상담 등 다양한 상담 가능 •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p.61
	복지법률지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률 지원·상담이 필요한 서울 시민 및 복지시설	• 민사, 가사, 주거, 후견, 행정, 사회보장, 형사, 보호,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처리, 청년부상 제대군인 법률상담, 노동, 기타 법률 등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1670-0121)	p.62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계층, 한부모가족 등	• 무료법률상담, 합의중대,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민사, 가사 사건 등의 소송 대리, 형사사건의 무료 변호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p.63
	법률홈닥터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등	•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	지역별 법률홈닥터 (지역구 시·구청)	p.66
	마을변호사	마을 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 변호사와 법률상담 진행	법무부 (☎02-2110-3000)	p.67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자	•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p.68
	금융복지상담 ·지원센터	저소득가구 및 금융취약계층	•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	전국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p.70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종합상담 및 채무조정 • 자금지원 및 고용·복지 연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1397)	p.72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한부모가구아동양육비 대상자 및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상해, 질병 등) • 대상자 조건을 충족시 자동 가입(별도 가입 절차 없음)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1397)	p.75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주거지원	공공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 임대기간: 3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35~90% 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 자산, 소득기준, 공급유형 참고	LH한국주택도시공사 (☎1600-1004)	p.76
	영구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	• 임대기간: 5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30% 수준) • 공급규모: 40㎡ 이하 • 자산, 소득기준, 공급유형 참고		p.78
	국민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 임대기간: 3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60~80% 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통상 60㎡ 이하) • 자산, 소득기준, 공급유형 참고		p.79
	장기전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 임대기간: 2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80% 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통상 60㎡ 이하) • 자산, 소득기준, 공급유형 참고		p.80
	공공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 임대기간: 5년/1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90% 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 자산, 소득기준, 공급유형 참고		p.81
	행복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5분위)	• 임대기간: 3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60~80% 수준) • 공급규모: 60㎡ 이하 • 자산, 소득기준, 공급유형 참고		p.83
	영구임대	사회보호 계층 (입주자격 확인)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p.84
	매입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공동생활 가정 (입주자격 확인)	•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 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p.86
	신혼부부 매입임대	예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입주자격 확인)	• 도심내 저소득층(예비)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하여 시중 시세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LH한국주택도시공사 (☎1600-1004)	p.87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격 확인)	•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 이후 해당 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주택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 콜센터 (☎129)	p.89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저소득층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도심 내 저소득층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	LH 청약 플러스 (apply.lh.or.kr)	p.92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두 명 이상 직계 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입주자격 확인)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 결정하면, 공공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LH한국주택도시공사 (☎1600-1004)	p.93
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p.94
재개발 임대주택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주택의 거주자	•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량하기 위한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인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분양전환되지 않음)	sh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	p.95
5·10년 공공임대주택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 ARS (☎1661-7700)	p.9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일정금액 지불한 저소득 가구	•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 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농협(☎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p.10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p.103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인 가구			p.104
서울형 주택 바우처	중위소득 60%이하 비수급가구	•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 지원	서울시 안심지원반 ☎02-2133-7992	p.105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임대보증금 대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주택만 해당)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제도	SH공사 콜센터 (☎1600-3456)	p.106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선정기준 참조	•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지원, 최대4천5백만원 한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하는 것으로서 일반공급 80%+특별공급 20%(신혼부부) 최대 10년(2년마다 재계약 총 5회 계약)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	SH공사 콜센터 (☎1600-3456)	p.106
	희망의 집수리 사업		소득인정액이 60%이내 저소득가구	• 공공주도형 집수리 사업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공모·선정하여 민간기부금과 시 예산을 매칭한 민간참여형 집수리 사업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107
	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 주거상담사업 및 사례관리 • 긴급주거비 직접지원 및 자원연계사업 •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	2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및 지자체 별 주거복지센터	p.107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내의 가구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 (임차가구: 전월세 지원 / 자가가구: 집수리)	주거지 행정복지센터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p.110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자립 의지가 확고한 저소득, 무주택 법정 한부모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지원(관리비,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지역별 운영기관	p.112
	한사랑전세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조건 충족하는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 지원(최대 200백만원)	KEB하나은행 (☎1599-2222)	p.113
교육지원	장학금지원	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소득 9분위 이하 대학생인 성적 기준 충족자로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분위 파악 된 자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분위 및 지원유형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Ⅰ형, Ⅱ형), 국가근로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1599-2000)	p.11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 장학금 바우처 지급 (중학생 25만원 / 고등학생 35만원 / 대학생 45만원) • 멘토링, 교육캠프 등 맞춤형 지원 • sos장학금: 월 30만원 균등지급		p.116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서울 장학재단 장학사업	서울지역 학생	• 고등학생 장학금 : 고교진로장학금, 예체능 장학금, 오토꿈이룸서울 장학금, 서울꿈길장학금 • 대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서울교환학생장학금,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 청춘smart장학금, 선순환인재 장학금	서울장학재단 (☎02-725-2257)	p.118
				• 서울 내 자치구별 장학금	각 자치구 담당 기관	p.119
		아이들과 미래재단	상세내용 참고	• 기남장학재단 미래그린장학, DB청소년 장학, 우리은행 꿈.꾸.당, 삼성화재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 지원사업, 청년SW아카데미, 우리미래 서울러너 희망샘기금, 폴얀센장학기금, 포니정재단 발돋움 장학, SGI서울보증 파란꿈 희망파트너	아이들과미래재단 (☎02-843-8478)	p.120
		IBK행복 나눔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연간 근로소득 6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미혼의 자녀	• 대학생 최고 300만원, 고등학생 최고 100만원	IBK행복나눔재단 (☎02-3789-3992)	p.124
		아산사회 복지재단 장학금지원 사업	상세내용 참고	•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학금(성적기준)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p.124
		삼성 꿈장학 재단 장학사업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	• 멘토링 꿈장학사업 - 꿈장학사업: 매년 재신청을 통한 매월 장학금 지원 - SOS장학사업: 장학 기간 동안 매월 장학금 지원 (최대 12개월)	삼성꿈장학재단 (☎02-727-5400~5401)	p.125
		한국 야쿠르트 사회복지 재단	취약계층(중위소득 100%이하) 대학생	• 지속적인 학업 유지를 위한 학업 관련 비용 보조 (300만원) •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 및 민간 교육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령 가능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02-3449-6426)	p.126
		KT&G 복지재단	저소득 가정 아동	• 학습 관련 물품 구입비 20만원 지원(1회)	KT&G 복지재단 (☎070-4124-6451)	p.126
			아동 공동생활가정	• 문화예술활동비 50만원 지원(1회)		p.127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필요	• 국가장학금(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1599-2000)	p.127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학습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	연령에 관계없이 학력취득 희망자	• 평생교육법에 의거 초등학교 6년 과정, 중학교 3년 과정,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통해 학력 인정 (학기단축의 경우 초등2년, 중·고등 1년 단축 가능)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869)	p.128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 교육활동비 지원(연 1회 지급) •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12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초록우산 아이리더"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동	• 인재양성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 프로그램 지원 : 발대식, 학업컨설팅, 멘토 만남 및 특강, 멤버십 활동	초록우산 아이리더 (☎1588-1940)	p.129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학업중단 위기를 예방하고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단기 위탁교육기관으로써 청소년한부모가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 제공	각 위탁교육기관 현황별 상이	p.13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중등3)	•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p.131
		청소년 치료재활 센터 (국립중앙 청소년 디딤센터)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ADHD,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9~18세)	• 정서 · 행동 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11박 12일) 제공, 상담 · 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53-665-6914)	p.131
	기타	진로 및 진학 주요 정보 검색사이트	-	• 커리어넷, 워크넷,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등	-	p.131
양육지원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		산모 및 양육자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정보제공 및 상담)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 지원센터 • 우리동네 키움포털 (돌봄서비스 및 시설 검색 등)	각 기관 홈페이지 참고	p.132
	임신 출산 지원 사업	국민 행복카드	서비스 별로 지원대상과 자격 상이함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p.133
		해산 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중 출산한 경우	• 해산급여: 출산 및 출산 예정 시 1인당 70만원 • 긴급복지 해산비: 1인당 70만원 지원		p.135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4개월 경과 후 사산 및 유산포함)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거주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129)	p.136
		영양 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일정기간 지원 • 월 1회 집합교육, 상담, 가정방문 형태로 실시 • 보충식품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거주지 보건소	p.13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 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 포함) • 출산급여 총 150만원	고용노동부 (☎1350)	p.137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가구소득 상관 없이 해당 영유아의 부모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e보건소 (☎1566-3232)	p.137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검사비지원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일부) 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지원 :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환아관리: 질환에 따른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p.13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지원(AOAE, AABR) •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p.138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족 고용보험 가입자 및 가입기간 180일 이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실제 자녀를 양유하고 있는 부모	• 1~3개월 월 통상 임금의 100%(최대 300만원) • 4~6개월 월 통상 임금의 100%(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 임금의 80%(최대 160만원) • 최대 1년 동안 지급 가능(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사용기한: 최대 1년 6개월 가능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시청 가능 • 육아휴직은 기간 내 총 4번에 나누어서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 (☎1350)	p.138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자녀 성장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만 9세~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및 청소년 활동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p.139
		자녀 장려금	부양자녀 요건 및 소득 요건 충족자	•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최대 100만원) 지급	국세청 홈텍스 (☎126)	p.141
		아름다운 동행 위시박스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8세~19세)	• 법적 한부모가족에 속한 미성년 자녀에게 장래희망 실현에 필요한 물건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녀의 원활한 재능개발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ex)악기, 미술도구, 운동용품 등	아름다운 동행 (☎02-737-9595)	
	보육 지원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p.142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	• 만0세 아동: 월 100만원 만1세 아동: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장애 아동수당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	• 중증장애인: 매월 9 ~ 22만원 • 경증장애인: 매월 3 ~ 11만원 ※ 수급 급여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름		
		가정양육 수당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0~7세 아동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아동: 월 10만원 • 0 ~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p.143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19세 미만 자녀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25세 ~ 34세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25세 ~ 34세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여성가족부 (☎02-2100-6000)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부 또는 모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p.144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시간제 보육지원	부모급여 수급 6~36개월 미만 아동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이용단가: 5천원(지원단가: 3천원, 본인부담: 2천원)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p.144
		방과후 보육료 지원	차상위 이하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일일 4시간 이용	•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아동: 특수교사 별도 배치, 장애아보육료의 50% • 종일제 보육 실시한 경우 일반 월 20만원, 장애아동 100% 지원	교육부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0~5세 아동	• 나이와 시간대에 따라 보육료 지원	교육부 (☎02-6222-6060)	p.145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5세	• 만3~5세 (매년 1월1일 현재 만3세이상) • 국공립 유치원 월 10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44-0079)	
	돌봄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자녀 돌봄 희망가정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0세(3개월) ~ 만 36개월 영아 돌봄 지원 • 시간제: 0세(3개월)~ 만 12세 아동 돌봄 지원 •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표전화 (☎1577-2514)	p.146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아동 1명 당 최대 1,080시간 이내의 돌봄서비스, 휴식 지원 프로그램 지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p.147
		서울형 아이 돌봄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서울시 거주 가정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돌봄비 지원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가능(택 1)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친인척육아조력자형(돌봄활동, 기본시간 충족시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민간형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이용시간 비례지원 -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 월 최대 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해도 이월 불가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돌봄 제공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내 만 18세 미만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 • 아동의 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p.148
		돌봄 제공기관 방과후 아카데미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초4~중3)	• 방과후학교, 방과후돌봄안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 •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02-330-2892~5)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6세~12세의 아동	• 정기돌봄 : 일정한 기간(한달 이상)동안 원하는 일정에 이용 • 일시돌봄 : 학교 휴업 및 공휴일,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비정기적 이용 • 학기중: 13:00 ~ 20:00 • 장·단기 방학중: 09:00 ~ 18:00	우리동네 키움포털 (☎02-731-2120)	p.148
	아동 청소년 지원 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중인 부모	• 서울장난감도서관 : 장난감 및 도서, 육아용품, 백일·돌상 대여/ 장난감 수리 및 기부·교환 • 전자책도서관 : 제약 없이 육아 관련 도서를 포함한 전자책 무료 이용 (1회 최대 5권까지 대출 가능) • 아이사랑플래너 양육상담 : 양육·심리상담 전문가 상담 지원 •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 심리상담, 노무상담, 법률상담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p.149
		드림스타트		0세(임산부 포함)~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양육 프로그램 제공	드림스타트 (http://www.dreamstart.go.kr)	p.149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울시 만 9세~24세 위기(가능) 청소년	• 찾아가는 상담지원, 정서적 지원, 지역자원과 연계 • 자기계발 및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연계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2-2285-1318)	p.150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만 9세 ~24세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등	꿈드림 (http://www.kdream.or.kr/index.asp)	p.150
		시소와 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취약계층 만 0세~7세 영유아 및 그 가족	• 통합사례관리, 양육정보지원, 양육활동지원, 부모-아동 관계증진지원, 양육상담, 양육자지원체계구축, 영유아가정 관계형성프로젝트(띵동놀이터), 자조공간기반 양육지원, 희망브릿지-영유아발달지원체계구축, 지역사회연계활동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02-706-0610)	p.151
		따움 상담센터 (영유아 아동발달 상담실)		동작구 관내 장애 및 발달지연,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 및 아동	• 종합심리검사, 놀이평가, 언어검사, 영유아발달검사 등 • 놀이,언어치료, 인지학습, 사회성증진프로그램, 부모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비대면 프로그램, 미술 등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02-825-5575)	p.151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자립 및 취업 지원	취업 및 창업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 제도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등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고용노동부 (☎1350)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p.152
	취업 및 창업 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자활 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 역량을 높이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빈곤과 빈곤 예방을 지원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p.153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국민 누구나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후 5년간 지원 (훈련비, 훈련 장려금 및 훈련비 환급)	고용노동부 (☎1350)	p.157
		서울 우먼업	취업 및 창업 희망 여성	•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취업·창업정보, 교육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서울 우먼업 (https://www.seoulwomanup.or.kr)	p.15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 여성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취업 연계 등 one-stop 종합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p.159
		소상공인 자식배움터 e-러닝 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춘 창업 및 점포경영 관련 무료 인터넷 교육 제공	소상공인 교육 (http://edu.sbiz.or.kr)	p.160
	창업 자금 대여	미소금융 사업수행 기관창업·운영자금	신용평점 100분의 20,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등	• 창업자금: 7천만원, 최대 6년 • 운영자금: 2천만원 한도, 최대 5.5년 •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한도, 최대 5.5년 •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한도,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 4.5% 이내 금리 적용)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p.161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	저소득 여성가장 중 중위소득60%에 해당하는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창업 기본 교육 및 준비 상담 • 창업자금 최대 3,000만원 무이자·담보·보증 • 성실상환 시 최대 200만원 상환금 감액 • 1:1 맞춤 창업 컨설팅 • 사후관리	열매나눔재단 (☎02-2038-8514)	p.162
		취약계층 여성 자립 지원 사업 더나은 네일	네일아트 인턴 과정 수료 3개월 이내 중위소득 70% 이하인 여성가장	• 인턴활동, 교육지원 및 네일숍 창업지원 • 활동 장학금 제공, 기술 코칭, 창업 교육		p.163
		한부모여성 창업대출 지원사업 '희망가게'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 여성 가구주	• 보증금 포함 창업 대출금 4,000만원 지원 (8년 상환/이자1%)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 전후 1:1 사례관리자 동행 •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 통합 지원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p.163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한부모여성 재기지원 사업	맏자녀 기준 고3 이하 자녀 양육중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여성가족	•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비 및 생활안정금 1인당 최대 350만원 지원 • 긴급지원금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대면 네트워크) 지원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p.165
자립지원	창업자금 대여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직업훈련에 3주이상 참여한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취약계층	• 지원내용 : 1인당 1,000만원 이내 대출(월별 한도액 200만원 이내)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 융자금리: 1%	근로복지서비스 (☎1588-0075)	p.165
		근로복지 공단 생활안정 자금	월평균소득 252만원 이하인 자	• 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 생활필수자금 6종에 대해 저금리 대출 지원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등)	근로복지서비스 (☎1588-0075)	p.167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34세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 연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 2,2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 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 가입기간 3년 시 정부 지원액 1,080만원 • 국가공인자격 취득 등 교육 총 3회 이수 필수 •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p.176
		꿈나래 통장	중위소득 80%이하의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의 부모 (서울시 거주)	•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저축하면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매칭하여 적립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본인 저축액의 50% 적립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176
		디딤씨앗 통장	만 0세 ~ 18세 저소득층 아동	• 일정 금액을 아동이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2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적립 • 월 5만원까지 적립(추가적립금은 매칭 없음)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www.adongcda.or.kr)	p.177
의료지원	KT&G 복지재단	성인 보호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2인 이상 가구의 가장 또는 보호자 (19세 이상)	• 치료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검사비, 보장구 구입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KT&G 복지재단 (☎02-563-4459)	p.179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아동 의료비 지원	저소득 가정 아동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청소년 (80% 이하)	• 치료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검사비, 보장구 구입비 등 최대 500만원 지원 • 병명 제한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치료는 지원 불가	KT&G 복지재단 (☎02-563-4459)	p.180
	아름다운동행 개안수술 지원 사업		저소득가정 환자	• 개안수술에 필요한 수술비 및 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 • 매월 2명 선정하여 지원 • 복지사업 수행단체를 통해 신청	나눔사업팀 (☎02-737-9595)	p.181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서울/경기 지역 거주하는 사회참여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장애인	• 사회참여 및 육아지원을 위한 500만원 내외의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사용 및 관리 교육 서비스 제공 • 보조기기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나눔사업팀 (☎02-766-1004)	p.181
	한국 여성 재단	치과 진료 분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 한부모 또는 여성활동가	• 치과진료비(교정치료 지원불가) 사례당 최대 300만원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가능) • 재단에서 연계된 치과에서만 진료 가능 • 2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및 1년 이내 일반치료 지원 받은 자 불가	한국여성재단 (☎02-336-9689)	p.182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의료비 지원		의료소외계층,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 다문화가족 등	• 외래비·입원비 :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지원률(50~100%) 결정 • 진료과목: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등	온드림 희망진료 센터 (☎02-2002-8683)	p.182
	우천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중 치료 중이거나 예정인 자	• 취약계층 중 현재 치료중이거나 치료 예정인 자 • 재단 지원 치료비 100만원 + 네이버 해피빈 모금액	우천복지재단 (☎02-851-6798)	p.183
	아산사회 복지재단 SOS의료비지원		긴급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 수술 등 긴급 치료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연 1회 지원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p.183
위기지원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 사업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그 밖에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 • 민간기관·단체 프로그램 연계, 상담지원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p.185
	서울형 긴급복지		위기상황 중위소득 100%가구 (긴급복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및 기타 연료비 등 지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187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바보의나눔: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실질적 여성 가장이면서 비수급권자	• 만 65세 미만의 실질적 여성 가장 (차상위, 저소득층 포함 비수급권자 우선 지원) • 1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 •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야	바보의나눔재단 (☎02-727-2506~8)	p.188
	신한희망재단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위기상황 겪는 중위소득100% 이하인 가구	• 생계, 교육, 양육, 의료비 1가구당 최대 500만원 • 재해·재난 구호비 1인 최대 1,000만원 • 학대피해아동지원 개인 최대 500만원/단체2,000만원	신한희망재단 (☎02-6424-1556)	p.189
	이랜드복지재단 위기 지원사업 'SOS위고(WE GO) 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	• 치료비: 일반치료비(수술비/입원비), 치과치료비 • 생계비: 수도광열비, 식료품비, 의복비, 공공요금 등 • 주거비: 월임대료, LH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등 • 자립비: 치과진료비, 취업자격 교육비, 간병비 등	이랜드복지재단 (☎02-3142-1900)	p.190
	아산사회 복지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중위소득 100%이하인 위기가정	•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개보수비 등 • 지원비용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p.191
기타지원	저소득 한부모 요금감면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경감 • 복지용 쌀 할인 지원 • 지역 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 에너지효율개선 • 에너지바우처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과태료 50% 이내 감면 • 자동차 검사 수수 • 수도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p.19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기구 (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 (난방)주거지의 단열, 창호 공사 및 보일러 보급 지원 • (냉방)에어컨 보급 지원		p.193
	에너지 바우처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대상	• 냉·난방비 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p.193
	운전면허 교육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 운전면허시험 교육 총 12시간 지원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각 지역 장애인운전지원센터	p.193
	스포츠 강좌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1인당 매월 일정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	p.194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5~18세 유·청소년	•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에서 확인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p.194
4대궁·종묘·조선 왕릉 무료입장	한부모가족	• 4대 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조선 왕릉 무료입장	각 궁, 종묘, 왕릉 관리사무소	p.194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중위소득 125%이하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출생신고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및 법률 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양육비 이행 상담 (☎1644-6621)	p.195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 안내	법원에 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보육료, 가족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p.196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기초생활수급 가구 어린이	• 1인당 10만원 이용권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23)	p.197
온가족보듬사업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 상담, 사례관리, (손)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출산·양육지원 등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법률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가족센터 대표번호 (☎1577-9337) (☎1644-6621)	p.19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9~24세 여성청소년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4,000원, 연 최대 168,000원)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p.197
가사·간병 방문 지원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p.198
여행 활동 지원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 서울·지방 지역 내 개별 숙박여행(1박 2일) 상품 • 1박 2일 여행상품(조식 및 1식 포함), 숙소 부대시설 이용권 및 여행자 보험 포함 • 인근 관광지 액티비티 체험권(남산타워 케이블카, 영화티켓 등) 포함	서울시 관광정책과 (☎02-2133-2787)	p.198
서울 IT희망나눔세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서울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중고PC와 자치구,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무상으로 기증 받은 중고	서울시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p.198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사랑의 PC 신청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기타취약계층	PC를 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보급	(☎02-2133-2891)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사업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 연탄 구매비용: 가구당 47.2만원	복지로 누리집	p.199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12세 이하 어린이	•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지원 • 총 19종	보건소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p.200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완화	-	승용: • 2,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2,500cc 미만 가구원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차령 10년 이상 또는 1,000만원 미만 승합: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1,000만원 미만 생업용: • 2,000cc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p.200
금순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7세 이하 자녀 양육 한부모 및 청소년 가정 양육의지가 있는 한부모 및 청소년 임산부	• 통합사례지원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 7개의 자립로드맵 운영(긴급위기지원 등) • 100% 방문 상담을 통해 지원결정	(☎010-4935-5007)	p.201
긴급 비상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다산콜: ☎120 •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366 • '다 들어줄 개': 어플 '다 들어줄 개'	-	p.201
안전교육 관련	-	• 주관: 교육부 • 내용 : 학교안전교육 안전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 안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를 교육부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교육과정 연계분류에 맞추어 탑재	학교안전지원시스템 (www.schoolsafe24.or.kr)	p.202
		• 주관: 행정안전부 • 내용 : 재난에 대한 각종 정보를 탑재(국민행동요령, 재난 현황, 안전시설정보, 지진옥외대피소 등)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 주관: 행정안전부 • 내용 :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 대처요령 등을 다양한 영상물로 제작 및 송출	행정안전부 안전한TV (www.safetv.go.kr)	
			• 주관: 서울특별시 • 내용: 연령 및 대상자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자료 탑재	맞춤형 교통 안전 교육 (http://tgis.eseoul.go.kr/traffic_safety/index.html)	
			• 주관: 행정안전부 • 내용 :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생활안전/교통안전/자연재난안전/사회기반체계안전/범죄안전/보건안전)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체험관 등 관련 정보 제공	국민안전교육플랫폼 (kasem.safekorea.go.kr)	
	안전체험시설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만 5~7세	•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는 방법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을 무료로 운영 • 최대 30명(최소인원 10명 이상)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관 (☎02-3498-2072)	p.202
		대상연령 (만 4~100세)	• 재난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학습 및 체험 • 최대 30명	목동재난체험관 (☎02-2655-2088)	p.203
		대상연령 (만 4~100세)	• 빗물저류배수시설이 만들어진 이유와 공사과정을 소개 •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7~50세)	• 재난 상황을 가상현실(VR)을 통해 가상으로 체험하여 더욱 쉽고 재미있게 재난 시 대처 상황을 학습 •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4~100세)	• 자연재난 상황을 게임 기반 학습으로 체험 • 최대 30명		
		단체 (유치원, 초중고, 장애인 특수학교 등) 대상연령 (만 5~60세)	• 안전체험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능력 향상 • 응급처치, 화재안전, 풍수해, 지진 체험 등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02-975-5315)	p.204
		대상연령 (만 6~100세)	• 미세먼지·기후변화 VR체험교육 • 최대 20명	송파안전체험교육관 (☎02-406-5868)	p.204
		대상연령 (만 3~100세)	•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 교육과 안전퀴즈를 풀며 안전의식과 안전사고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최대 20명		
		대상연령 (만 3~8세)	• 횡단보도, 통학버스(안전벨트), 자전거 안전교육 • 최대 20명		
		대상연령 (만 18~64세) (대학생 대상)	• 안전체험관 전관 시설 견학 및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 최대 60명		
		대상연령 (만 4~100세)	• 철도안전, 선박안전, 항공안전 • 최대 60명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대상연령 (만 3~5세)	• 가정안전, 신변안전, 승강기안전 • 최대 40명		
		대상연령 (만 2~3세)	• 교통, 위생, 화재 동화 구연 교육(주제 택1) • 최대 25명		
		대상연령 (만 4~100세)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체험 • 최대 20명		
		대상연령 (만 4~100세)	• 지진, 화재, 태풍안전교육 • 최대 20명		
		대상연령 (만7~65세) 7세 보호자 동반	• 심폐소생술 교육(평일 일일 3회) •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실습 • 최대 30명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02-2620-4397)	p.206
		대상연령 (만 20~65세)	• 심폐소생술 심화반(마지막주 금요일 14:00) • 심폐소생술 실습, 소아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실습 •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20~65세)	• 직장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실습 •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8~65세)	• 외상응급처치 교육 • 출혈, 화상, 개물림 사고 발생 시 대처법, 응급지혈법, 상처드레싱, 붕대법 실습 •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7~65세) 어린이 보호자 동반	• 가족단위 심폐소생술 교육 •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실습 •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6~60세) 7세 미만 보호자 동반	• 물소화기이용 가상체험 • 물소화기를 활용한 화재진압에서 발생시까지 상황별 대처법 체험 • 최대 5명		
		대상연령 (만 6~60세) 7세 미만 보호자 동반	• 승강기체험 • 승강식 피난기, 피난사다리 등 완강기사용법 • 최대 1명		
		대상연령 (만 6~60세) 7세 미만 보호자 동반	• 연기피난체험 • 열, 연기속에서 대피요령과 피난방법 체험 • 최대 20명		
	보아스 사회공헌재단 '보리'의료비 지원	중위소득100% 수도권 거주자	• 안과, 치과, 내과, 정형 및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비 지원	보아스사회공헌재단 (☎1661-1402)	p.208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	-	•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중증질환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각 상급종합병원	p.209

Ⅳ 생활 영역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1 법률 및 금융 지원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 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 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자(미혼모 또는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 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1년 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1</td></tr>
<tr><td rowspan="2">지원 내용</td><td>법률 지원</td><td>- 소송관련 상담 및 소송수행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비혼
양육부 • 모</td><td>- 자녀 인지 청구소송
- 양육비 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td></tr>
<tr><td>이혼
양육부 • 모</td><td>- 양육비 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td></tr>
</table>

</td></tr>
<tr><td>추심 지원</td><td>- 추심권원 확보(명령, 이행확보 소송 등)
-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양육비 불이행 반복 시,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 채무자 재산 압류 및 강제 경매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소유재산을 압류·강제경매</td></tr>
</table>

구분	내용
가사소송법	- 이행명령 - 직접 지급명령 - 담보 제공 명령 - 일시금 지급명령 - 과태료 처분 재판 - 감치재판
민사집행법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 재산 명시 - 재산조회

제재조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구분	내용
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또는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제재구분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 공개 - 형사처벌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상세 내용 참조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121/contents.do)

- 현장지원반 운영

구분	내용
고액·고질적 체납자	- 지급 지연으로 고액의 양육비를 체납한 비 양육부·모를 직접 방문하여 채무자의 현황 및 사정 파악 후 양육비 지급 촉구 - 소송, 추심, 명령 등 모든 수단과 방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습 또는 악의적 체납자 방문 조치
감치 미집행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감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감치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사회적 파장	- 고액·고질 체납, 감치 미집행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킨 양육비 채무자 방문 조치

상담 지원

구분	내용
전화상담	- 대표 번호: 1644-6621 - 이용 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방문상담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 스퀘어) 24층 - 이용 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09:00~11:00 / 13:00~17:00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 (전화 예약: 1644-6621, 1번 연결, 온라인 예약) • 방문 상담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은 하루 30분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방문상담 예약
온라인상담	- 신청 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양육비 상담 신청'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소통 • 참여 – 온라인 상담] 메뉴에 접속하시면 되고, 상담 신청 및 조회는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 절차 안내: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 상담글 입력 > 상담 신청 • 본인 인증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처리 현황 조회: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소통 • 참여-온라인 상담 답변]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자신의 상담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사실 관례 및 질문의 요지를 2,0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 온라인 상담은 질문자의 상담 신청 내용에 근거하여 상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생략되거나 지나치게 방대할 경우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 상담 신청 시 파일은 첨부할 수 없으며 질문내용에 단순히 다른 사이트를 링크해 놓는 경우에는 답변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접수일 다음 날부터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을 등록해 드립니다.

면접 교섭 지원

-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별면접교섭	- 중재: 면접교섭 방법 시간·자녀·인도방법등에 관한 중재·합의 지원 - 상담: 양육부·모, 자녀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갈등관리를 위한 개별상담 등 - 모니터링: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후 당사자 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집단면접교섭	- 상담·교육·체험활동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친해질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 제공
지원절차	

지원대상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 신청인 및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모두 신청 가능
제출서류	- 면접교섭 신청서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판결문(결정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 1통(사본)
신청방법	- 우편발송: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 담당자 - 면접교섭서비스 수행 가족센터에 직접 신청 • 전국대표전화(☎1577-9337)을 이용하시면 이용자분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가족센터로 연결됩니다. • 홈페이지(www.familynet.or.kr)을 통해서도 가까운 센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문 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1)

모니터링 지원

구분	내용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지원	-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상담, 합의, 소송, 추심 등의 지원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협의 또는 법적 조치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사를 밝히고 양육비를 지급하면 업무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자녀 나이 만 19세가 되기 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자의 경제적인 안심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구성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불이행 상황 확인 시 이행확보 조치를 연계합니다.
지원절차	 -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 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를 지원해 드립니다.

<table>
<tr><td></td><td>조사
정보
지원</td><td>- 주소 • 근무지/소득 • 재산 조사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주소 • 근무지/
소득 • 재산
조사</td><td>양육비 이행에 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비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td></tr>
<tr><td>지원절차</td><td>
</td></tr>
</table>
-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를 지원해 드립니다.</td></tr>
<tr><td></td><td>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안내</td><td>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지원대상</td><td>-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지원 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 조부모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결정이 된 경우
- 그 밖에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td></tr>
</table>
</td></tr>
</table>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총 9개월 지원 - 1회에 한 해 3개월 연장 가능(위기 상황 지속시)
		지원절차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절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신청인 및 자녀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지원 업무 선택 →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 완료
		대상자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이혼 한부모, 비혼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자녀가 군 복무 또는 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자가 진단 해보기'를 참고
		이행지원절차	-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 집행 또는 추심 지원 -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 집행 또는 추심 지원
문 의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전화상담: ☎1644-662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원내용</td><td>- 법률구조
•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 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
- 법률상담
• 가사, 민사, 형사, 파산 및 면책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 제공
- 소장 등 서류작성
•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 관련 서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소송 관련 서류 무료 작성
- 화해조정
• 당사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상담소에 내방하게 하여 조정 진행
- 소송구조
•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무료 소송구조 제공
• 전반적으로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나 필요한 경우 민·형사 사건도 진행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절차 무료 지원</td></tr>
<tr><td>신청방법</td><td>- 절차: 상담 진행 →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상담방법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면상담</td><td>-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 이용 시간: 월~금 10:00~17:00 (16:00까지 접수)
- 매주 월요일 야간상담 진행: 18:00~21:00 (19:00까지 접수)
※ 점심시간: 12:30 ~ 13:00</td></tr>
<tr><td>외국인 상담</td><td>- Counseling in English for Foreigner
- 1644-7077(영어 상담은 전화로 사전 예약해 주세요)
- 시간: 매주(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 : 오후 7시까지)</td></tr>
<tr><td>출장상담</td><td>-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 행정법원 청사 민원실
- 무료 출장상담 진행: 월~금 10:00~17:00</td></tr>
<tr><td>전화상담</td><td>- 대표번호: 1644-7077</td></tr>
<tr><td>온라인상담</td><td>- 신청 방법
: 메인화면 상단에서 ‘사이버상담실’에 접속 → 상담글 입력 → 상담 신청 완료
- http://lawhome.or.kr 사이버 상담실</td></tr>
</table></td></tr>
<tr><td>문 의</td><td>- 홈페이지 (http://lawhome.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td></tr>
</table>

▢ 복지법률지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법률 지원: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시민 - 법률 상담: 법률 상담이 필요한 서울 시민 및 복지시설 등
신청방법	- 전화상담 • 운영시간: 10시 ~ 17시 • 신청방법: 1670-0121로 전화 - 인터넷 상담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이용 ※ 방문상담은 사전예약한 경우에만 가능함
상담분야	- 민사(채권채무, 손해배상 등) - 가사(혼인관계, 모자관계, 신분관계, 일반 상속 등) - 주거(임대차, 전세사기, 공공 주택 등) - 후견(성년후견, (시설) 미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 행정(조세, 난민, 토지수용, 도시정비 등) - 사회보장(기초 생활 보장,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 형사(강력 범죄, 재산범죄, 신용 범죄 등) - 보호(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인신 보호 등) -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처리 - 청년부상 제대군인 법률상담 - 노동 - 기타 법률
문 의	- 홈페이지 (http://swlc.welfare.seoul.kr) - 복지 법률 종합상담전화: ☎1670-0121

▢ 대한법률구조공단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민사, 가사사건</td><td>

-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 대상자,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 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 공단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형사사건</td><td>

-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 대상자,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조사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td></tr>
<tr><td>법률상담</td><td>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챗봇상담</td><td>- 법률상담 사례, 법률 서식 정보, 공단 위치, 상담 예약 등</td></tr>
<tr><td>면접상담
(예약)</td><td>- 상담 방법: 예약+공단+방문+면접상담(예약 원칙)
- 이용 상황(주 이용 고객): 법률구조가 필요한 고객
- 제공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12시~1시 불가)
- 상담 시간: 20분 이내
- 1일 최대 상담건수: 제한 없음</td></tr>
</table>
</td></tr>
</table>

	- 유의 상황 • 면접상담은 예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 예약 접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매일 예약이 가능합니다) • 당일 예약 접수가 마감된 경우 근무일 기준 익일 오전 9시에 다시 예약 접수가 시작됩니다.(오늘 예약을 하면 각 기관에서 설정한 접수기간 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고객이 공단의 법률상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경우 예약이 제한됩니다. • 노쇼(예약취소 없이 내방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제한)
132 전화상담	- 상담 방법: 국번 없이 132전화를 통한 실시간 상담 - 이용 상황(주 이용 고객):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 - 제공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12시~1시 불가) - 상담 시간: 5분 이내 - 1일 최대 상담건수: 제한 없음 - 유의 사항: 시간대별 직원 수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채팅상담	- 상담방법: 132전화, 챗봇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채팅 상담 - 이용 상황(주 이용 고객) •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파산, 등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 - 제공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12시~1시 불가) - 상담 시간: 10분 이내 - 1일 최대 상담건수: 50~100건 - 유의 사항: 상담 인원 제한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화상상담	- 상담 방법: 예약 일시에 화상을 통한 예약상담 - 이용 상황(주 이용 고객) • 거동불편 취약계층 우선 이용+서류를 보여줄 필요+100자 이상 상담 내용 기재 - 제공시간: 예약 일시 - 상담 시간: 20분 이내 - 1일 최대 상담건수: 40~60건 - 유의 사항: 상담 인원 제한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사이버상담	- 상담 방법: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에서 상담 신청 - 이용 상황(주 이용 고객):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을 원하는 고객 - 1일 최대 상담건수: 70건 - 유의 사항: 1일 상담 건수 제한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table>
<tr><td>유의사항</td><td>-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대한 상담 직원의 의견이므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 예약 면접상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등은 월·화요일,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상담 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상담 고객을 위하여 상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제 한</td><td>-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 · 정관 · 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전문분야</th><th>상담기관</th><th>전화번호(국번없이)</th></tr>
<tr><td>세무 상담</td><td>국세청</td><td>126</td></tr>
<tr><td>소비자 상담</td><td>소비자 상담 센터</td><td>1372</td></tr>
<tr><td>고용관계(실업급여 등)</td><td>고용노동부</td><td>1350</td></tr>
<tr><td>금융분쟁</td><td>금융감독원</td><td>1332</td></tr>
</table></td></tr>
<tr><td>문 의</td><td>-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td></tr>
</table>

▢ 법률홈닥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상담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구조기관으로 연계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 월~금 10:00~17:00 인근 기관 연락처로 문의 - 필요시 예약 후 방문 상담
문 의	-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 - 지역별 법률홈닥터 배치 기관으로 연락 (아래 표 참고)

1) 지역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시도	배치기관명	전화번호	시도	배치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15)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07	인천 / 경기 (15)	인천 강화군청	032-932-7179
	강서구청	02-2600-6530		인천 미추홀구청	032-880-5910
	관악구청	02-879-7631		인천사회복지협의회	032-437-7432
	광진구청	02-450-7408		경기 광주시청	031-760-3795
	노원구청	02-2116-3508		경기 구리시청	031-5550-2575
	도봉구청	02-2091-3009		고양 덕양구청	031-8075-5600
	동작구청	02-820-9612		광명시청	02-2680-6507
	마포구청	02-3153-8529		남양주시청	031-590-8721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류션센터	1577-1701		동두천시청	031-860-2036
	서대문구청	02-330-1558		성남시청	031-729-2493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45		안산시청	031-481-2592
	양천구청	02-2620-3352		안성시청	031-678-2178
	은평구청	02-351-7020		오산시청	031-8036-7427
	종로구청	02-2148-1384		이천시청	031-645-3855
	중랑구청	02-2094-1623		하남시청	031-5182-1596
강원 (2)	삼척시청	033-570-3633	대전 (8)	대전 동구청	042-251-6229
	속초사회복지협의회	033-639-2632		대선 유성구청	042-611-2931
				대전광역시청	042-270-2384
				논산시청	041-746-6044
				서산시청	041-664-1739

시도	배치기관명	전화번호	시도	배치기관명	전화번호
				아산시청	041-540-2075
				충북 사회복지협의회(청주)	043-238-0843
				충주시청	043-850-5959
광주 / 전라 (6)	광주 광산구청	062-960-3672	대구 / 경북 (8)	대구 달서구청	053-667-3541
	광주 남구청	062-607-2249		대구 동구청	053-667-6921
	광주 서구청	062-360-7039		대구 북구청	053-665-3123
	순천시청	061-749-3394		대구 수성구청	053-666-2667
	익산시청	063-858-9280		대구 중구청	053-661-2148
	전주시청	063-281-0309		경산시청	053-810-5925
				영주시청	054-639-6059
				포항시청	054-270-5754
부산 (5)	부산 남구청	051-607-4316	울산 / 경남 (3)	울산광역시청	052-229-2278
	부산 사상구청	051-310-4317		진주시청	055-755-7560
	부산 수영구청	051-610-4027		창원시청	055-220-5466
	부산 해운대구청	051-749-5689			
	부산광역시청	051-888-3155			

▢ 마을변호사

구분	세부내용
마을변호사란?	- 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洞)마다 연결된 우리 동네 주치의 같은 변호사가 '마을 변호사'입니다.
지원대상	- 마을 변호사가 배정된 읍 • 면 • 동에 거주하는 주민
지원내용	-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 변호사와 법률상담 진행 - 마을 변호사는 비상근으로 원격상담(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원칙

신청방법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전화상담</td><td>- 읍·면·동 사무소, 지방 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 변호사 연락처 확인 - 마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 진행</td></tr><tr><td>방문상담</td><td>-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마을 변호사 상담카드」 작성 - 마을 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 송부 - 마을 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td></tr><tr><td>현장상담</td><td>- 희망자 수, 마을 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상담 진행 -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 여부 문의</td></tr></table>
문 의	-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02-2110-3000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사이트 상단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경찰] – [마을 변호사] – [자료실]' 접속 • '마을 변호사 지역별 배정 현황' 통해 각 지역별 문의처 확인 가능

▢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신용회복위원회)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자 ※ 다만, 다른 채무 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 •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Fast track)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 •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지원 부가 신청 대리 •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 지원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 대,파산 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 • 지원 절차 <table><tr><th>신용회복위원회</th><th></th><th>법률구조기관</th><th></th><th>법원</th></tr><tr><td>- 채무종합상담 - 채무조정 절차 안내 - 신용 상담 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 서류 작성 지원</td><td>⇒</td><td>- 신용회복위원회 이관 서류 검토 및 보완 - 무료 법률구조 -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 접수 후 관리</td><td>⇒</td><td>-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td></tr></table>

	- 유의사항 •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에서 결정하는 소송구조 절차이므로 신청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함
신청방법	- 준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원 신청 서류는 별도 상담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각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문 의	- 홈페이지 (http://www.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센터: ☎1600-5500 / 해외 거주 시: ☎+82-2-6337-2000

▢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금융복지 서비스(재무상담, 채무조정, 복지자원 연계 등)가 필요한 저소득가구 또는 금융취약계층
지원내용	- 재무 상담 • 고객의 자산·부채 상태와 수입·지출 현황을 토대로 맞춤형 재무 설계 제공 - 채무조정 지원 • 과다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회생 지원 - 복지 서비스 연계 • 금융상담 서비스 외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복지자원 연계
신청방법 및 문의	- 전국 금융복지 상담지원센터로 문의 (아래 표 참고)

1) 전국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지역	센터명	주소	관할	연락처
서울 (11)	중앙	동작구 현충로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 6층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1644-0120
	도봉	도봉구 마들로 656 (방학동), 도봉구청 지하 1층 종합상담센터 내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	중랑구 면목로 242,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2층 내	중랑구, 강동구	
	성북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세무종합민원실 옆	성북구, 동대문구	
	시청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 2청사(씨티스퀘어) 7층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성동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층 행복민원실 내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마포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6층	마포구, 은평구	
	양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LH서울서부 주거복지지사 1층	영등포구, 용산구	
	금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내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청년동행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	서울시 전역	
경기 (19)	원스톱센터	의정부시 평화로 325, 5층	의정부, 동두천, 포천	1899-6014
	동부권역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0, 6층	하남 등 동부권역	
	광주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	
	남양주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43, 4층	남양주, 가평	
	안성	안성시 배티로 1095	안성	

지역	센터명	주소	관할	연락처
	서부권역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8	군포 등 서부권역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 의왕, 과천	
	부천	부천시 부일로 501, 4층	부천	
	김포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80-3	김포	
	시흥	시흥시 함송로 29번길 67	시흥	
	남부권역(수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0번길 23, 4층	수원 등 남부권역	
	용인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용인, 여주, 이천	
	평택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 오산	
	화성	화성시 여울로2길 33	화성	
	안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11	안산	
	북부권역(양주)	양주시 고읍남로 6-14, 5층	양주 등 북부권역	
	고양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	
	파주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파주, 연천	
	구리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	
광주 (1)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28		062-954-0019
전남 (2)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동부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전남신보빌딩 3층		061-727-2590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서부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85-3980
경남 (2)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055-716-8174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055-794-2761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채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자
지원내용	- 종합상담 • 맞춤대출, 고금리 전환,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신용 정보 조회 및 진단 -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제도로, 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채무상태와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일부를 감면하고 최장 8년 동안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 가능) 등 지원 •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로, 대출 상환 부담이 과중한 개인채무자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고객이 대상이 된다. 최장 10년 분할 상환 가능) 등 지원 •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연계 지원 - 자금 지원 •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상담 및 지원 - 고용·복지 연계 • 지자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일자리 상담, 취업 안내, 복지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전화 상담: ☎1397 (월~금 9:00~18:00 / 야간상담 18:00~20: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기초상담 → 서비스 지원 • 전국 센터 중 가까운 센터로 방문 (아래 표 참고)
문 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대표번호: ☎1397

1)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역	센터명	주소
서울 (6)	강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5 라임타워 3층
	양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광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 사무동 5층
	관악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노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빌딩 3층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
인천 (2)	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계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계산동) 삼환1빌딩 2층

지역	센터명	주소
경기 (11)	부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성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예미지 빌딩 2층
	고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안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안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의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하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빌딩 3층
	김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평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2층
	구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강원 (4)	춘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강릉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원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속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고용복지+센터 3층
대전 (1)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 3층
충남 (4)	천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보령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아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 7층(충무빌딩)
	당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충북 (2)	청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대우증권빌딩 4층
	충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부산 (3)	부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사상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수영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90-5 메디세움 13층
울산 (1)	울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8, 2층
대구 (2)	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8 하나은행 3층
	서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50-6 삼희빌딩 2층
경북 (4)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6층
	구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손해보험빌딩 2층 KB은행

지역	센터명	주소
	경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96 동천동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안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태화동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경남 (3)	거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 5길 6, 우형빌딩 3층
	진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장대동) 진주고용복지+센터 2층
	창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생명빌딩 3층
광주 (2)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북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1~3호
전남 (2)	목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순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전북 (3)	군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익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16길 39 SK빌딩 11층
	전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세광타워 3층
제주 (1)	제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한부모가정의료보험1기~3기)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원대상</td><td>-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동 가입 별도 가입 절차 없음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td></tr>
<tr><td>지원내용
(3기)</td><td>
<table>
<tr><th>구분</th><th>보장내용</th><th>보장금액</th></tr>
<tr><td rowspan="4">부양자</td><td>24시간 상해 후유장해</td><td>3,000만원</td></tr>
<tr><td>질병 후유장애(3~100%)</td><td>3,000만원</td></tr>
<tr><td>암진단비100%(재진단X)</td><td>30만원</td></tr>
<tr><td>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td><td>3,000만원</td></tr>
<tr><td rowspan="9">아동</td><td>상해 입원일당(180일)</td><td>5만원</td></tr>
<tr><td>질병 입원일당(180일)_출산제외</td><td>5만원</td></tr>
<tr><td>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td><td>15만원</td></tr>
<tr><td>암 진단비100%(재진단X)</td><td>500만원</td></tr>
<tr><td>수술비</td><td>8만원</td></tr>
<tr><td>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위로금</td><td>30만원</td></tr>
<tr><td>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td><td>7만원</td></tr>
<tr><td>폭력피해 위로금</td><td>100만원</td></tr>
<tr><td>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td><td>3,000만원</td></tr>
</table>
</td></tr>
<tr><td>보험기간</td><td>- 2024년 7월 31일 00시 01분 ~ 2027년 7월 30일 23시 59분
• 보험기간 내 사건 발생 건 사고 일자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 가능</td></tr>
<tr><td>보상문의</td><td>- 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
- 전화: ☎02-3471-5116</td></tr>
<tr><td>문 의</td><td>-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대표번호: ☎1397</td></tr>
</table>

2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개요

1) 종류별 공급주체

구분	유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85㎡ 이하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영구	40㎡ 이하
			50년	40㎡ 이하
	국민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60㎡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20년	85㎡ 이하
	매입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전세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행복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6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10년	85㎡ 이하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 없음
	매입임대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1) 통합공공임대

구분	세부내용
임대기간	3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자산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금액기준: 총자산 34,5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

<table>
<tr><td>소득기준</td><td>
<table>
<tr><td>적용대상</td><td>모든공급유형(단, 우선 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td></tr>
<tr><td>금액기준</td><td>우선공급: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기준중위소득 150%이하</td></tr>
</table>
</td></tr>
<tr><td>공급유형</td><td>
<table>
<tr><td>일반</td><td>
<table>
<tr><td>자격</td><td>청년, 신혼부부(예비포함)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td></tr>
<tr><td>선정</td><td>추첨으로 선정</td></tr>
</table>
</td></tr>
<tr><td>특별·우선</td><td>
※ 구분별 상세한 자격 및 선정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분류</th><th>자격</th><th>선정</th></tr>
<tr><td>철거민 등</td><td>철거민 등</td><td>배점 등</td></tr>
<tr><td>국가유공자 등</td><td>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td><td>관련 기관의 추천 등</td></tr>
<tr><td>다자녀 가구 등</td><td>다자녀 가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등</td><td>배점 등</td></tr>
<tr><td>장애인</td><td>장애인 등록 등 교부</td><td>배점 등</td></tr>
<tr><td>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td><td>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td><td>배점 등</td></tr>
<tr><td>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td><td>장기 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td><td>배점 및 관련 기관의 추천 등</td></tr>
<tr><td>비주택 거주자 등</td><td>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td><td>관련 기관의 추천 등</td></tr>
<tr><td>청년</td><td>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등</td><td>배점 등</td></tr>
<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td><td>혼인 기간 7년 이내 등</td><td>배점 등</td></tr>
<tr><td>고령자</td><td>만 65세 이상</td><td>배점 등</td></tr>
<tr><td>신생아</td><td>만 2세 이하 자녀</td><td>배점 등</td></tr>
</table>
</td></tr>
</table>
</td></tr>
</table>

2) 영구임대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임대기간</td><td>50년</td></tr>
<tr><td>공급조건</td><td>보증금+임대료
(시세 30% 수준)</td></tr>
<tr><td>공급규모</td><td>40㎡ 이하</td></tr>
<tr><td>공급대상</td><td>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td></tr>
<tr><td>자산기준</td><td>
<table>
<tr><td>적용대상</td><td>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td></tr>
<tr><td>금액기준</td><td>총자산 3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td></tr>
</table>
</td></tr>
<tr><td>소득기준</td><td>
<table>
<tr><td>적용대상</td><td>모든공급유형(단, 수급자 등 일부 적용 제외)</td></tr>
<tr><td>금액기준</td><td>- 일반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순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장애인)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 2순위 (장애인)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td></tr>
</table>
</td></tr>
<tr><td>공급유형</td><td>
<table>
<tr><td>일반</td><td>
<table>
<tr><td>자격</td><td>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td></tr>
<tr><td>선정</td><td>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td></tr>
</table>
</td></tr>
<tr><td>특별·우선</td><td>-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 국가유공자 등
- 귀환 국군 포로
- 수급자 신혼부부</td></tr>
</table>
</td></tr>
</table>

3) 국민임대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임대기간</td><td>30년</td></tr>
<tr><td>공급조건</td><td>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td></tr>
<tr><td>공급규모</td><td>85㎡ 이하 (통상 60㎡ 이하)</td></tr>
<tr><td>공급대상</td><td>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td></tr>
<tr><td>자산기준</td><td>
<table>
<tr><td>적용대상</td><td>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td></tr>
<tr><td>금액기준</td><td>총자산 3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td></tr>
</table>
</td></tr>
<tr><td>소득기준</td><td>
<table>
<tr><td>적용대상</td><td>모든공급유형(단, 수급자 등 일부 적용 제외)</td></tr>
<tr><td>금액기준</td><td>- 60㎡ 이하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 60㎡ 초과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td></tr>
</table>
</td></tr>
<tr><td>공급유형</td><td>
<table>
<tr><td>일반</td><td>
<table>
<tr><td>자격</td><td>무주택세대 구성원</td></tr>
<tr><td>선정</td><td>순위, 자녀 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 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 초과 –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td></tr>
</table>
</td></tr>
<tr><td>특별·우선</td><td>
<table>
<tr><th>분류</th><th>자격</th><th>선정</th></tr>
<tr><td>다자녀 가구</td><td>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td><td>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 높은 자</td></tr>
<tr><td>국가유공자 등</td><td>국가유공자</td><td>국가보훈처 추천</td></tr>
<tr><td>영구임대 입주자</td><td>영구임대 거주자</td><td>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td></tr>
<tr><td>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td><td>비닐하우스 거주자 등</td><td>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td></tr>
</table>
</td></tr>
</table>
</td></tr>
</table>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혼인 기간 내 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경쟁 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사업 지구 철거민	사업 지구 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기타 공급 대상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파독로자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4) 장기전세

구분	세부내용
임대기간	2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8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 (통상 60㎡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자산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금액기준: 총자산 65,500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
소득기준	적용대상: 모든 공급유형 (단, 우선 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금액기준: - 60㎡ 이하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60㎡ 초과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공급유형	

<table>
<tr><td></td><td>
<table>
<tr><td rowspan="2">일반</td><td>자격</td><td colspan="2">무주택세대 구성원</td></tr>
<tr><td>선정</td><td colspan="2">순위, 자녀 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 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 초과 –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td></tr>
<tr><td rowspan="8">특별·우선</td><td colspan="2">분류</td><td>자격</td><td>선정</td></tr>
<tr><td colspan="2">다자녀 가구</td><td>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td><td>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 높은 자</td></tr>
<tr><td colspan="2">국가유공자 등</td><td>국가유공자</td><td>국가보훈처 추천</td></tr>
<tr><td colspan="2">영구임대 입주자</td><td>영구임대 거주자</td><td>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td></tr>
<tr><td colspan="2">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td><td>비닐하우스 거주자 등</td><td>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td></tr>
<tr><td colspan="2">신혼부부</td><td>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td><td>혼인 기간 내 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경쟁 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td></tr>
<tr><td colspan="2">사업 지구 철거민</td><td>사업 지구 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td><td>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td></tr>
<tr><td colspan="2">기타 공급 대상</td><td>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파독로자 등</td><td>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td></tr>
</table>
</td></tr>
</table>

5) 공공임대(5년/10년/분납)

구분	세부내용
임대기간	5년/10년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9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자산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금액기준	총자산 3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
소득기준	적용대상	신혼,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 이하)
	금액기준	- 60㎡ 이하 : 일반공급, 생애 최초 우선 공급, 신혼부부 우선 공급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혼부부 잔여 공급, 생애 최초 잔여 공급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공급유형

일반	자격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순차)

특별·우선

분류	자격	선정
다자녀 특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	다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신혼부부 특별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신혼부부 가점, 잔여공급 추첨
생애 최초 특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추첨
노부모 부양 특별	만 65세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	순위, 순차특별
국가유공자 특별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처 추천
기타 특별	장애인, 철거민 등	관계 기관 추천

6) 행복주택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세부내용</th></tr>
<tr><td>임대기간</td><td colspan="3">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td></tr>
<tr><td>공급조건</td><td colspan="3">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td></tr>
<tr><td>공급규모</td><td colspan="3">60㎡ 이하</td></tr>
<tr><td>공급대상</td><td colspan="3">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5분위)</td></tr>
<tr><td>자산기준</td><td>적용대상</td><td colspan="2">모든공급유형</td></tr>
<tr><td></td><td>금액기준</td><td colspan="2">총자산 3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
대상별 자산 기준 상이</td></tr>
<tr><td>소득기준</td><td>적용대상</td><td colspan="2">모든 공급유형 (단,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td></tr>
<tr><td></td><td>금액기준</td><td colspan="2">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이하,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td></tr>
<tr><td rowspan="8">공급유형</td><td rowspan="2">일반</td><td>자격</td><td colspan="2">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td></tr>
<tr><td>선정</td><td colspan="2">순위 및 추첨으로 선정</td></tr>
<tr><td rowspan="6">특별·우선</td><td>분류</td><td>자격</td><td>선정</td></tr>
<tr><td>대학생(취준생 포함)</td><td>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등</td><td>순위, 추첨 등</td></tr>
<tr><td>청년
(사회초년생 포함)</td><td>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소득활동 합산 기간 5년 이내인 사람 등</td><td>순위, 추첨 등</td></tr>
<tr><td>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 포함)</td><td>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td><td>순위, 추첨 등</td></tr>
<tr><td>고령자</td><td>만 65세 이상인 사람</td><td>추첨 등</td></tr>
<tr><td>주거급여 수급자</td><td>주거급여 수급자</td><td>추첨 등</td></tr>
</table>

※ 공고 임대주택은 통계청 발표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가,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규정 시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상향 적용합니다.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가액 2억 4천100만 원, 자동차 가액 3천708만 원입니다. 그 외 공급 유형별 자산 기준은 다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50%	1,799,082	2,738,502	3,813,487	4,289,044	4,515,524
60%	2,158,898	3,286,202	4,576,184	5,146,853	5,418,629
70%	2,518,715	3,833,902	5,338,881	6,004,662	6,321,734
100%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 임대주택별 세부내용

1) 영구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세부내용</th></tr>
<tr><td rowspan="5">입주자격</td><td col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정해진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자</td></tr>
<tr><td colspan="2">순위</td><td>입주자격</td><td>비고</td></tr>
<tr><td colspan="2" rowspan="3">우선공급</td><td>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td><td>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td></tr>
<tr><td>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td><td>- 신혼부부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td></tr>
<tr><td>귀환 국군 포로</td><td>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td></tr>
<tr><td>일반 공급</td><td>1순위</td><td>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td></tr>
</table>

		②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⑥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6조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⑩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⑪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⑫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신청절차 및 방법	입주신청 (신청자->지자체)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입주자 신청 (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계약 안내 (공급기관->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계약체결 (공급자-> 입주대상자)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임대기간 및 조건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시중 시세의 30% 수준	

2)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구분	세부내용	
	구분	내용
입주자격	기초 생활 수급자 등	-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순위: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③ 기초생활수급자 ④ 만 65세 이상 고령자 ⑤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 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단,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는 입주대상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 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 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신청절차 및 방법	입주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 운영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 도지사 등이 운영 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
주택규모	- 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임대기간 및 조건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3) 신혼부부 매입임대 (한부모가족 포함)

도심 내 저소득층 (예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시중 시세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유자녀 혼인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유형만 지원 가능)

<table>
<tr><td>입주순위</td><td>
<table>
<tr><th>구분</th><th>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th><th>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th></tr>
<tr><td>1순위</td><td>- 신생아 가구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td><td>- 신생아 가구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td></tr>
<tr><td>2순위</td><td>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td><td>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td></tr>
<tr><td>3순위</td><td>-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td><td>-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td></tr>
<tr><td>4순위</td><td>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td><td>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td></tr>
<tr><td>5순위</td><td>(없음)</td><td>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 가구</td></tr>
</table>
</td></tr>
<tr><td>소득 자산 기준</td><td>-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Ⅰ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Ⅱ
• 1,2,3,4순위: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5순위: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 분양) 자산기준 충족</td></tr>
<tr><td>임대조건</td><td>-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Ⅰ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Ⅱ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td></tr>
<tr><td>임대기간</td><td>-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Ⅰ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Ⅱ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 최장 14년)</td></tr>
</table>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 이후 해당 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입주자격</td><td>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수급자 등</td><td>-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1순위: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③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RIR이 30% 이상인 자
④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⑤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2순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②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비정상 거처 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td></tr>
<tr><td>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td><td>-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td></tr>
<tr><td>보증거절자</td><td>- LH가 임대하는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 선정되고, 기금 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 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한함</td></tr>
<tr><td>주거지원시급 가구</td><td>-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td></tr>
<tr><td>공동생활가정</td><td>-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d></td><td>퇴소자, 분만취약지의 임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td></tr>
<tr><td>국가유공자 등</td><td>-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td></tr>
<tr><td>이재민</td><td>-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td></tr>
</table>
</td></tr>
<tr><td>주택 유형</td><td>-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 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보증부월세 및 월세 주택은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 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 소유자에게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td></tr>
<tr><td>전세지원금 한도액</td><td>-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 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포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거주중 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공동생활 가정인 경우 예외 인정 가능</td></tr>
<tr><td>임대조건</td><td>-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 임대 1순위자 중 신규 계약자('19.6.1.이후)는 선택 가능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단, 보증 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 1~2%)를 월 임대료에 가산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 p (단, 최저금리는 1.0%)</td></tr>
<tr><td>신청방법</td><td>
<table>
<tr><th>입주대상</th><th>신청방법</th></tr>
<tr><td>수급자 등</td><td>- 입주자 모집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td></tr>
<tr><td>보증 거절자</td><td>-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td></tr>
<tr><td>공동생활가정
(그룹홈)</td><td>- 운영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td></tr>
<tr><td>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td><td>-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td></tr>
</table>
</td></tr>
</table>

	이재민	- 재난 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신혼 • 신생아, 청년, 다자녀	- 입주자 모집 시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	- 입주 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주택규모	- 전용 85㎡ 이하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30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중증 장애인,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5) 신혼부부 전세임대 (한부모가족 포함)

도심 내 저소득층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세부내용</th></tr>
<tr><td rowspan="3">입주자격</td><td>공통</td><td>- 1순위: 신생아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신혼•신생아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자,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3순위: 신혼•신생아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 4순위: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자
- (예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일반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혼인 가구)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혼인 기간 무관)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td></tr>
<tr><td>신혼·신생아 I</td><td>-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td></tr>
<tr><td>신혼·신생아 II</td><td>-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td></tr>
<tr><td>대상주택</td><td colspan="2">-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주택 또는 부분전세 주택(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포함)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 초과 가능
-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 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td></tr>
<tr><td>전세지원금 한도액</td><td colspan="2">- Ⅰ형: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원
- Ⅱ형: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td></tr>
</table>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거주 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임대조건 (입주자부담)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 (단, 최저금리는 1.0%)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 시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임대기간	- Ⅰ형: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Ⅱ형: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 다만, Ⅱ형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6)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 결정하면, 공공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수급자 등) • 1순위: 신생아 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신생아 가구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주택 또는 부분전세 주택(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포함)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 초과 가능 -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 치는 지급 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지원 내용	한도액	- 수도권 15,500만원, 광역시 1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0,500만원 -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대출한도 상향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거주 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7) 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지원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방수 미달)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 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 피해자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인가구 70%이하, 2인가구 60% 이하, 3인 이상가구 50%이하인 가구
지원금액	-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상한선: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본인부담보증금 50만원)
신청절차	

<table>
<tr><td rowspan="2">지원
내용</td><td>유형</td><td>
<table>
<tr><th>유 형</th><th>사 업 내 용</th></tr>
<tr><td>기존주택 매입 임대</td><td>-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td></tr>
<tr><td>기존주택 전세 임대</td><td>-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td></tr>
<tr><td>운영 기관을 통한
주거지원</td><td>- 입주자 관리,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
(주거복지재단이 선정)을 통하여 주거지원</td></tr>
<tr><td>국민임대주택</td><td>-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60㎡
이하 규모)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 피해자만 해당</td></tr>
</table>
※ 입주 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td></tr>
<tr><td>임대료
및
보증금</td><td>
<table>
<tr><th>구분</th><th>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
거주자</th><th>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 피해자</th></tr>
<tr><td>임대 보증금</td><td>50만원(고정)</td><td>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td></tr>
<tr><td>월임대료</td><td colspan="2">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td></tr>
</table>
</td></tr>
<tr><td colspan="2">지원기간</td><td>-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td></tr>
<tr><td colspan="2">문 의</td><td>- 읍·면·동 주민센터
- 서울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td></tr>
</table>

8) 재개발 임대주택(SH)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인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분양전환되지 않음)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입주자격</td><td>
<table>
<tr><td>특별공급</td><td>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로서 해당 조합에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 세입자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 대상자
• 당해 재개발사업 지구 철거세입자, 당해 재개발사업 지구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 포기자, 타 재개발사업 지구 철거세입자, 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자</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d>일반공급</td><td>•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 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 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단,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td></tr>
</table>
</td></tr>
<tr><td>자산기준</td><td>- 특별 공급은 자산기준이 없으며, 일반공급만 해당 총자산(부채 제외) • 자동차 기준액
<table>
<tr><th>구분</th><th>자산</th></tr>
<tr><td>총자산(부채 제외)</td><td>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원</td></tr>
<tr><td>자동차 기준액</td><td>차량 가액 3,708만원 이하</td></tr>
</table>
</td></tr>
<tr><td>임대기간
및 보증금</td><td>- 임대 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자격(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유지 시 최장 10년)
- 공급 규모: 전용면적 24~73㎡
-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22.12.31기준)
• 33㎡ 이하: 임대보증금 1,890,000 ~ 35,620,000원, 월 임대료 42,000 ~ 271,000원
• 33 ~ 39㎡: 임대보증금 10,440,000 ~ 39,010,000원, 월 임대료 113,000 ~ 315,000원
• 39 ~ 49㎡: 임대보증금 15,400,000 ~ 59,160,000원, 월 임대료 121,000 ~ 337,000원
• 49 ~ 59㎡이하 : 임대보증금 22,810,000 ~ 73,070,000원, 월 임대료 169,000 ~ 421,000원
• 59 ~ 73㎡이하 : 임대보증금 41,930,000 ~ 66,780,000원, 월 임대료 240,000 ~ 327,000원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철거민에게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합니다. (분양전환 불가)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td></tr>
<tr><td>신청방법</td><td>-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신청 준비물: 공급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임신 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류심사용),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함</td></tr>
</table>

신청절차	1. 우선공급 2. 일반공급

9) 5·10년 공공임대주택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구분	세부내용			
	공급대상	비율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입주자격	우선공급 (1순위자)	건설량의 25%	- 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투기청약 과열 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m²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
	잔여공급		가입한 자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m²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

주택 유형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신청절차 및 방법	입주자모집 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입주 이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임대기간 및 조건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10) 임대주택 공급기관

구분	공급기관		전화번호
전국	LH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1600-1004
시도	서울특별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051-810-1200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공사	☎053-350-0300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032-260-500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600~7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042-530-9200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	☎052-219-8400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1588-0466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033-259-6223~4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063-280-7500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055-269-04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064-780-3300
시군	경기도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1533-0410
	경기도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031-790-9500

※ 임대주택의 자산 보유기준은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별 임대주택 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해당 지역 도시공사로 문의해주세요.

11) 임대주택 관련 문의기관(마이홈센터)

연번	소관본부	마이홈센터	센터주소	상담 전화번호 (유선 응대 번호)
1	서울	서울남부권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삼성동 141) 성원타워 1층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02-2182-2792
2		서울중부권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7(인의동 28-9) 인의빌딩 1층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02-6454-2700
3		서울서부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07(당산동3가 370-5) 인곡빌딩 1층 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02-2169-8801
4		서울동부권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7(인의동 28-9) 인의빌딩 1층 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02-6454-2789
5	인천	인천중북권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8층 인천중부권주거복지지사	032-717-8501
6		인천남부권	인천 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032-717-5251 032-717-5210
7	경기남부	수원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46(이의동 1329) 광교 안효회관 11층 수원권주거복지지사	031-323-9118
8		안양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관양동 1591-10) 2층 안양권주거복지지사	031-467-5723
9		성남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야베스밸리 11층 성남권주거복지지사	031-778-3106
10		용인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 스타월드 9층 용인권주거복지지사	031-280-4711
11		화성동부권	경기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반송동 92-7) 스타플라자 4층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031-831-2441

12		화성서부권	경기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6층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031-231-0623 031-231-0624
13		오산권	경기 오산시 수청동 619-7번지 수청빌딩 2층 오산권주거복지지사	031-8092-5836
14		평택안성권	경기 평택시 정암로 10(서정동) 아트타워 2층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031-8094-5023
15		부천권	경기 부천시 길주로 281(중동 1058-5) 동화빌딩 6층 부천권주거복지지사	032-450-8251
16		시흥권	경기 시흥시 능곡동 750 다우빌딩 3층 시흥권주거복지지사	031-362-7723
17		하남권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망월동1140) 희망상가 2층 하남권주거지원종합센터	031-622-2700
18	경기 북부	의정부권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031-822-4023
19		남양주권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031-590-6692
20		양주권	경기 양주시 옥정동 963-1 한길프라자2, 5층 양주권주거복지지사	031-822-5507
21		고양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타워 기계동 5층 고양권주거복지지사	031-927-3056
22		파주권	경기 파주시 경의로 1004번길 33(야당동1041) 월드타워 8차 6층 파주권주거복지지사	031-934-5604
23		김포권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장기동 1603) 하나썬시티 11층 김포권주거복지지사	031-8048-5303 031-8048-5304
24	부산 울산	부산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동 1199-1) LH 부산울산지역본부 4층 부산권주거복지지사	051-460-6814
25		부산동부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7(구서동 84-18) BN(BIP) 빌딩 3층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051-460-6900
26		부산서부권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81(범천동877-2) 사학연금회관 3층 부산서부권주거복지지사	051-460-6824
27		울산권	울산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빌딩 2층 울산권주거복지지사	052-932-4801
28	강원	춘천권	강원 춘천시 공지로 337(효자동 692-10) LH 강원지사 1층 춘천권주거복지지사	033-258-4166
29		원주권	강원 원주시 양지로 26(반곡동 1880-10),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 3층 원주권주거복지지사	033-737-7711
30		강릉권	강원 강릉시 율곡로 2846(옥천동 145) SH타워 2층 강릉권주거복지지사	033-610-5178
31	충북	청주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성화동 936) LH충북지사 5층 청주권주거복지지사	043-901-4513
32		충북동북부권	충북 증평군 중앙로 88 농협홍삼 관리동 3층 충북동북부권주거복지지사	043-913-1878
33		충남북부권	충청도 공주시 신관로 38 (신관동 599-1) 주원빌딩 3층	041-854-8359
34		충북남부권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BYC건물 8층 충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	043-913-1828
35	대전 충남	대전권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동 1380)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대전권주거복지지사	042-470-0814 042-470-0813
36		대전북부권	대전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 더그린2차 2층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042-349-0823

37		천안권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장재리 1719) 2층 천안권주거복지지사	041-538-5835
38		충남북부권	충남 공주시 신관로 38(신관동 599-1) 주원빌딩 3층 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	041-854-8308
39		충남남부권	대전 동구 우암로 250 나로프라자 5층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042-349-4613
40	전북	전주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효자동2가 1333-1)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1층 전주권주거복지지사	063-230-6162
41		전북남부권	전북 정읍시 중앙로56 금오빌딩 4층(연지동 49-22) 전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	063-570-2313
42		익산권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모현동1가 869) 금오빌딩 5층 익산권주거복지지사	063-840-0912
43	광주 전남	광주권	광주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1210) LH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권주거복지지사	062-360-3128
44		광주광산권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6-7(우산동 1599-1) 행복주택상가 3층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062-441-2963
45		광주북부권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번길 11-5 행복주택상가 2층 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062-410-1914
46		광주동남권	광주 남구 서문대로 339(임암동 893번지), 그랜드타워 4층 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062-411-4130
47		목포권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164) 남교트윈스타 2층 목포권주거복지지사	061-983-3302
48		순천권	전남 순천시 중앙로 260(석현동 87) KT 북순천지사 3층 순천권주거복지지사	061-900-4321
49	대구 경북	대구권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1445) LH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대구권주거복지지사	053-603-2346
50		대구동부권	대구 동구 신서로 40(명진빌딩) 4층 대구동부권주거복지지사	053-960-3626
51		대구서부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58-2 5층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053-610-9924
52		대구북부권	대구 북구 원대로 130(침산동 614-4) 1층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053-210-8300
53		경북동부권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054-280-4764
54		경북서부권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송정동 58) 용은빌딩 1층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054-450-3800
55		경북북부권	경북 안동시 광명로 166 한양빌딩 3층 경북북부권주거복지지사	054-851-9921
56	경남	창원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4-2) LH 경남지역본부 1층	055-210-8405
57		경남서부권	경남 진주시 가호로 13, MBC 경남진주사옥 6층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055-922-1501
58		양산권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범어리 2714-3)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2층 양산권주거복지지사	055-362-7282
59		김해권	경남 김해시 장유로 270 2층 김해권주거복지지사	055-907-8102
60	제주	제주권	제주 제주시 전농로 100(삼도1동 305-4) LH 제주지역본부 1층 제주권주거복지지사	064-720-1091
61	세종	세종권	세종 다정중앙로20 가온마을7단지상가 1층 세종권주거복지지사	044-902-2324

▢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 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1) 버팀목전세자금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신청 대상</td><td>-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3.37억원</td></tr>
<tr><td>신청시기</td><td>-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td></tr>
<tr><td>대출한도 및 금리</td><td>- 대출한도
<table>
<tr><th>구분</th><th>수도권(서울,인천,경기)</th><th>수도권 외</th></tr>
<tr><td>일반가구</td><td>최대 1억 2천만원</td><td>최대 8천만원</td></tr>
<tr><td>2자녀 이상 가구</td><td>최대 3억원</td><td>최대 2억원</td></tr>
</table>
- 대출금리: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
<table>
<tr><th rowspan="2">소득구분</th><th colspan="3">임차보증금</th></tr>
<tr><th>5천만원 이하</th><th>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th><th>1억원 초과</th></tr>
<tr><td>~ 2천만원 이하</td><td>2.3%</td><td>2.4%</td><td>2.5%</td></tr>
<tr><td>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td><td>2.5%</td><td>2.6%</td><td>2.7%</td></tr>
<tr><td>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td><td>2.8%</td><td>2.9%</td><td>3.0%</td></tr>
<tr><td>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td><td>3.1%</td><td>3.2%</td><td>3.3%</td></tr>
</table></td></tr>
</table>

구분	내용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DGB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2)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구분	세부내용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65% ~ 연 3.95%
대출한도	일반가구: 2억 5천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LTV 7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iM뱅크 1588-0956 BNK부산은행 1800-1333

3) 주거안정 월세대출

구분	세부내용
대출대상	-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① 우대형 • 취업 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 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 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② 일반형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중도 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1)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세부내용</th></tr>
<tr><td>지원내용</td><td colspan="2">-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 지원</td></tr>
<tr><td rowspan="2">신청자격</td><td>일반
바우처</td><td>- <u>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u>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 한부모, 차상위 계층, 교육급여, 서울형 수급자 등 주거급여 미수급 가구 신청 가능
<u>※ 제외</u>
<u>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용대차(무상임차), 전대차,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u></td></tr>
<tr><td>특정
바우처</td><td>- <u>아동특정바우처</u>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지속 지원</td></tr>
<tr><td>지원금액</td><td colspan="2">- 일반바우처
<table>
<tr><th>구 분</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r>
<tr><td>지원금액</td><td>120,000원</td><td>130,000원</td><td>140,000원</td><td>150,000원</td></tr>
</table>
- 아동특정바우처: 아동 1인당 6만원 추가지급</td></tr>
<tr><td>신청방법</td><td colspan="2">-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 지급 시기: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급 방법: 지원 대상자 계좌 또는 임대인(집주인) 계좌에 입금
- 지급일: 매월 25일</td></tr>
<tr><td>문 의</td><td colspan="2">- 서울시 안심지원반: ☎02-2133-7992</td></tr>
</table>

2)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임대보증금 대출(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주택만 해당)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제도
신청자격	- 영구임대, 장기전세, 희망하우징, 장기안심, 전세임대, 근로신혼부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매입임대, 재개발임대 입주가구 다수 사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저소득 한부모세대,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 상한액 1천만원
대출금리	- 연 2% / 10년 균등분할 상환, 매달 고지서 상환
신청방법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사회복지기금대출담당 -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

3)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지원, 최대4천5백만원 한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하는 것으로서 일반공급 80% + 특별공급 20%(신혼부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10년(2년마다 재계약 총 5회 계약)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임.
선정기준	-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월평균소득 120% 이하 ※2023년부터 1인가구와 2인가구 각각 20%, 10% 완화 - 자산기준(2024년 기준) -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보유기준 -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3,803만원 이하 - 입주대상: 일반입주자(80%)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20%)
대상주택 지원내용	-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60㎡ 이하 (*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인 주택 -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보증금과 월세의 전환보증금 합계액이 4억9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단,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최대 4천5백만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12/전월세전환율(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접수 (방문) 온라인접수 ▶ 소득.주택 자동차 공공임대조회 ▶ 소명대상자 및 입주대상자 발표 ▶ 소명대상자 소명 후 개별연락 ▶ 계약 체결 - 현장접수: sh공사(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기간 내 방문접수 - 인터넷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app)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1단계(공고선택)→2단계(단지 또는 지구 선택)→3단계(신청자격 확인)→4단계(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5단계(가점입력)→6단계(공인인증서 인증확인)→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인터넷 청약: 공인인증서 필수
문 의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4) 희망의 집수리 사업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원대상</td><td>-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 가구(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
※ 자가인 경우, 그 주택 등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제외: 공공임대주택(건설 • 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신청 제한: 희망의 집 수리 사업 기 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 불가
※ `25년 신청 불가: 2022~2024 희망의 집수리 수혜가구</td></tr>
<tr><td>지원내용</td><td><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수리항목</td><td>- 맞춤형 집수리 시행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제습기, 환풍기, 방역(곰팡이 제거·해충구제 등),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LED등,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td></tr><tr><td>지원금액(사업비)</td><td>- 가구당 250만원</td></tr></table></td></tr>
<tr><td>신청방법</td><td>-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6</td></tr>
</table>

▢ 주거복지센터

보증금, 월임대료, 수도광열비 등 주거비 체납 등으로 주거불안정한 상태의 취약가구에 대한 긴급주거비 지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간편집수리, 가구주택관리서비스 등 취약계층 맞춤형 상담 및 주거지원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기관에 상담이 우선 필요함)

구분	세부내용
상담사업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 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매입 • 전세임대 등)에 대한 입주관련 상담, 안내, 입주신청을 지원 -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융자,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제도에 대한 상담 • 안내 (온라인, 전화, 방문, 내방 상담 가능)
긴급주거비 직접지원 및 자원연계 사업	- 주거취약계층(장애인,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발굴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보증금, 월 임대료, 연료비 체납, 집수리 등 직접 지원을 통해 긴급 위기에 놓인 가구 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	- 자치구(주민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상담 연계 등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급주거비 지원

	- 지역자원과 연계 지원을 추진하며, 단체 실무자,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교육 실시
주거복지센터 현황	

연번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1	서울	중앙주거복지센터	02-3410-7248
2		강남주거복지센터	02-3453-2270
3		강동주거복지센터	02-6933-6870
4		강북주거복지센터	02-980-4808
5		강서주거복지센터	02-2661-0896
6		관악주거복지센터	02-875-3197
7		광진주거복지센터	02-2138-8373
8		구로주거복지센터	02-853-9275
9		금천주거복지센터	02-855-4522
10		노원주거복지센터	02-930-1180
11		도봉주거복지센터	02-6098-1200
12		동대문주거복지센터	02-6496-5460
13		동작주거복지센터	02-816-1688
14		마포주거복지센터	02-6383-6100
15		서대문주거복지센터	02-303-3733
16		서초주거복지센터	02-6990-5500
17		성동주거복지센터	02-6933-8051
18		성북주거복지센터	02-922-5942
19		송파주거복지센터	02-400-2271
20		양천주거복지센터	02-6933-6190
21		영등포주거복지센터	02-785-7044
22		용산주거복지센터	02-6713-5055
23		은평주거복지센터	02-388-2979
24		종로주거복지센터	02-722-8658
25		중구주거복지센터	02-2138-8791

연번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26	경기	중랑주거복지센터	02-490-1700
27		시흥주거복지센터	031-318-1500
28		성남 주거복지센터	031-735-9600
29		수원주거복지센터	031-280-6342
30	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031-548-4046
31		서구 대구주거복지센터	070-4725-8447
32	부산	중구 대구주거복지센터	053-425-5539
33	전북	강서구/연제구 부산광역주거복지센터	051-710-5794~6
34		전북주거복지센터	063-283-9704
35	충남	전주시주거복지센터	063-281-5276
36	인천	천안주거복지센터	041-572-0606
37	강원	인천주거복지센터	1811-7757
38	충북	원주주거복지센터	033-745-2333
39	제주	청주 주거복지센터	010-7151-9316
40		서귀포주거복지센터	064-767-9500
41	세종	제주시권역주거복지센터	064-753-9500

▢ 주거급여[2)]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근거법:「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세부내용</th></tr>
<tr><td rowspan="2">지원대상</td><td colspan="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단위: 원)
<table>
<tr><th>가구규모 / 구분</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th></tr>
<tr><td>기준 중위소득</td><td>2,393,000</td><td>3,933,000</td><td>5,026,000</td><td>6,098,000</td><td>7,109,000</td><td>8,065,000</td></tr>
<tr><td>주거급여 (중위소득 45%)</td><td>1,148,166</td><td>1,887,676</td><td>2,412,169</td><td>2,926,931</td><td>3,411,932</td><td>3,871,106</td></tr>
</table></td></tr>
<tr><td colspan="2">-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td></tr>
<tr><td rowspan="3">지원내용</td><td>선정기준</td><td>-「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 연4%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보증금이 있는 경우 통장에 주거급여는 보증금/임대료 산정 주거급여 금액이 각각 명기됨)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생계급여 초과금액 중1/3)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td></tr>
<tr><td>임차급여</td><td>-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원/월)
<table>
<tr><th>구분</th><th>1급지 (서울)</th><th>2급지 (경기,인천)</th><th>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th><th>4급지 (그 외)</th></tr>
<tr><td>1인</td><td>352,000</td><td>281,000</td><td>228,000</td><td>191,000</td></tr>
<tr><td>2인</td><td>395,000</td><td>314,000</td><td>254,000</td><td>215,000</td></tr>
<tr><td>3인</td><td>470,000</td><td>375,000</td><td>302,000</td><td>256,000</td></tr>
<tr><td>4인</td><td>545,000</td><td>433,000</td><td>351,000</td><td>297,000</td></tr>
<tr><td>5인</td><td>564,000</td><td>448,000</td><td>363,000</td><td>307,000</td></tr>
<tr><td>6인</td><td>667,000</td><td>531,000</td><td>428,000</td><td>363,000</td></tr>
</table></td></tr>
<tr><td>지원개요</td><td>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td></tr>
</table>

2) 마이홈(https://www.myhome.go.kr/) →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주거급여

<table>
<tr><td rowspan="3"></td><td></td><td>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설치하고,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3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td></tr>
<tr><td>수선유지 급여</td><td>- 지급기준 및 산정 방법
<table>
<tr><td colspan="3">기준금액(주기)</td><td>I</td><td>II</td><td>III</td></tr>
<tr><td>보수 범위</td><td>주기</td><td>지원금액</td><td>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td><td>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 소득 40%이하</td><td>중위 소득 40%초과 ~ 48%이하</td></tr>
<tr><td>경보수</td><td>3년</td><td>590만원</td><td rowspan="3">100% 지원</td><td rowspan="3">90% 지원</td><td rowspan="3">80% 지원</td></tr>
<tr><td>중보수</td><td>5년</td><td>1,095만원</td></tr>
<tr><td>대보수</td><td>7년</td><td>1,601만원</td></tr>
</table>
- 경보수: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 중보수: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공사(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td></tr>
<tr><td>긴급보수 대상 사유</td><td>-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 보강하는 경우
- 노후화에 의하여 파손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심각한 누수, 동파가 발생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주택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td></tr>
<tr><td>신청방법</td><td colspan="2">-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td></tr>
</table>

지원절차	신청접수	- 읍·면·동
	소득·재산 등 조사	- 시·군·구: 소득, 재산조사
	주택조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계약조사, 주택 상태 조사
	보장결정	- 시·군·구: 결정통지
	급여지급	- 시·군·구
주거급여 상세안내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지원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운영기관	

권역	운영기관	전화번호
서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구세군두리홈)	☎0507-1405-5722
경기	홀트아동복지회(고운뜰)	☎031-216-9004
경기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강원	원주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765-8314
대전	홀트아동복지회(아침뜰)	☎042-585-3004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1577-3053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1-620-9300
전북	전주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182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5790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3-355-8042
경북	포항건강가정지원센터	☎054-244-9702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055-716-2363

▢ 한사랑 전세론(한부모가족 전세자금대출)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동인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구 (단,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동일 세대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손님 (단,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연 소득 1억원 이하) • 아동: 만 18세 미만인 국민(단,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대출내용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
대출한도	- 최대 200백만원의 범위 내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신청인의 연간 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의 한사랑 전세론 상담 예약 및 방문
문 의	- KEB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2222

3 교육지원

▢ 장학금 지원

1)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국가
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td><td>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학 명단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24.12.13.) 보도자료 참고
- 신청기간: (1학기) (1차)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2학기) (1차) '25.5~6월, (2차) '25.8~9월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소득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심사기준(성적 기준)
<table>
<tr><th>분류</th><th>성적 기준</th></tr>
<tr><td>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td><td>-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td></tr>
<tr><td>재학생</td><td>-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td></tr>
</table>
- 지원금액
<table>
<tr><th>소득구간</th><th>학기별 최대지원 금액</th><th>연간 최대지원 금액</th></tr>
<tr><td>기초/차상위</td><td>전액</td><td>전액</td></tr>
<tr><td>1구간</td><td>285만원</td><td>570만원</td></tr>
<tr><td>2구간</td><td>285만원</td><td>570만원</td></tr>
<tr><td>3구간</td><td>285만원</td><td>570만원</td></tr>
<tr><td>4구간</td><td>210만원</td><td>420만원</td></tr>
</table>
</td></tr>
</table>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9구간	50만원	100만원

- 지원절차

절차	수행주체	세부내용
신청	학생	-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부모/배우자)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서류 제출
소득 정보 확인	한국장학재단	- 소득정보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보건복지부) -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행안부, 대법원) -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 제공
심사	대학, 한국장학재단	-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 - 재단정보심사 기준 확인
선발	한국장학재단	- 선발결과 안내(신청현황 확인) -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 우선감면금액 대학에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 지급 -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후 학생에게 지급

국가 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대학: 당해년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 참여 대학
- 지원제한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대학 신 · 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신 • 편입생지원)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관련 안내’ 확인

-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자립준비 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능,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분에 한하여 10구간 학생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신청대상

꿈장학금	SOS 장학금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소득기준)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긴급구난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항 ~ 7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1항~7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

다문화 장학금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중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소득기준)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 자격기준

<table>
<tr><th colspan="2">꿈장학금, 다문화 장학금</th><th>SOS 장학금</th></tr>
<tr><td colspan="2">학교에서 추천한 우수 학생(학교별 2인 추천)
다문화 장학금의 경우 추천인원 제한 없음</td><td rowspan="3">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학생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td></tr>
<tr><td>교과</td><td>(중1)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중2~고1) 직전 학년 이수 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자유학기제 운영 시 자유학기 성적
(고2~고3) 직전 학년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td></tr>
<tr><td>비교과</td><td>-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직전 학년 봉사활동실적 연간 10시간 이상</td></tr>
</table>

- 지원내용

<table>
<tr><th>꿈장학금, 다문화 장학금</th><th>SOS 장학금</th></tr>
<tr><td>- 중학생: 월 25만원 지원
- 고등학생: 월 35만원 지원
- 대학생: 월 45만원 지원
※ 대학생은 학기 중 휴학(군 · 질병 휴학 포함) 시 복학 시까지 장학금 지원이 중단(자격유예)되며, 휴학시점 이후 선지급된 장학금은 총 지급 가능 횟수에서 차감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발생 즉시 장학생이 '학적변경 신청서' 제출을 통해 자진신고 필요,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일 이후 장학금 초과 수혜 시 반환 등의 조치 가능
※ 홈페이지 내 '학적정보변경신청(대학생)'을 통해 학적변경 신청 가능</td><td>- 중 · 고등학생
• 월 30만원 학제 상관 없이 균등 지급
• 선발 후 총 10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
※ 원칙적으로 10개월 간 지원하되, 지원 기간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 종료

※ 차년도('25년) 도래 시 학적 확인을 통해 학년 미진학, 상급 학교로 미진학 시 차년도 2월까지만 지원</td></tr>
</table>

문 의	- 홈페이지: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전화번호: ☎1599-2000

2)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 고등학생 장학금

분류	선발 시기	선발 인원	신청 자격	장학금 구분
서울희망 고교 진로 장학금	4~5월	1,324명	- 서울소재 고교 재학생으로 재능과 진로개발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 - 저소득 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연간 200만원 (학업장려금)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	5~7월	180명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서울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음악, 미술, 체육, 무용 특기자	연간 350만원 (학업장려금
오토꿈이룸 서울 장학금	4~5월	30명	-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3학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자녀	연간 200만원 (학업장려금)
서울꿈길 장학금	3~4월	100명	-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초•중•고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대안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 가정 청소년	연간 200만원 (학업장려금)

- 대학생 장학금

분류	선발 시기	선발 인원	신청 자격	장학금 구분
서울희망대학 진로 장학금	7~8월	1,013명	- 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전체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장학금 내 진로 활동 분야별 공고 시 별도 안내)	최대 400만원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	3~4월	50명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전공대학의 정규학기 학부생(휴학생 포함) - 최근 3년 이내 사회공익분야에서 지속해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 - 공익 프로젝트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실행하며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열정과 도전 정신을 지닌 학생	최대 400만원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	5월	60명 (아시아 15명, 비아시아 45명)	- 대한민국 국적자 - 서울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전체성적 평균 85점 이상 이며 해외 교환학생 파견 예정 학생	400만원~ 550만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4~6월	120명	-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로서 타 시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정규학기 등록 학부생) -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후손(4~6대 후손)	300만원
서울희망직업 전문학교 장학금	3, 9월	200명	-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에 재학중이며 12학점 이상 수강 등록금 150만원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50만원
청춘 Start 장학금	3~4월	40명	- 서울소재 대학 신입생(입학년도 고교 졸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 고교시절 복지시설(보육원, 쉼터, 그룹홈 시설) 거주 이력자	신규: 연간 300만원, 기존: 연간 200만원
선순환 인재 장학금	12월	50명	-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시민 중 비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서울런에서 8개월 이상 활동한 멘토	100만원

3) 서울시 자치구 장학금 관련기관

- 서울시 장학금 관련 기관[3)]

자치구명	기관명	전화번호
종로구	종로구장학회	☎02-2148-2012
중구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02-3396-4664
용산구	용산복지재단	☎02-2074-9191
성동구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02-2286-5860
광진구	교육지원과	☎02-450-7191
동대문구	교육진흥과	☎02-2127-4515
중랑구	교육지원과	☎02-2094-1892
성북구	교육지원담당관	☎02-2241-2393
강북구	복지정책과	☎02-901-6625
도봉구	교육지원과	☎02-2091-2303
노원구	노원교육복지재단	☎02-949-7920
은평구	은평구민장학재단	☎02-351-8512~3
서대문구	안산장학회	☎02-330-8190
마포구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02-3153-6361~2
양천구	교육지원과	☎02-2620-3113
강서구	강서구장학회	☎02-2600-6917

3) 출처: 서울장학재단

구로구	구로구장학회	☎070-4916-2977~9
금천구	금천미래장학회	☎02-2627-2229, 2812
영등포구	영등포구장학재단	☎02-2670-3070~4
동작구	교육정책과	☎02-820-9094
관악구	교육지원과	☎02-879-5655
서초구	서초장학재단	☎02-2155-8822
강남구	강남복지재단	☎02-3446-1612
송파구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02-2147-2389
강동구	강동구복지포털	☎02-3425-5213, 02-1577-1188

※ 120다산콜센터는 장학금 정책문의 등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02-120 (02-731-2120)

4) 아이들과미래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기남장학재단
미래그린 장학</td><td>- 사업요약: 학업에 재능이 있는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및 프로그램 지원
- 지원목적: 학업에 재능이 있는 장학생에게 해당 분야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밝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중학생 1인 최대 800만원, 고등학생 1인 최대 1500만원 지원
•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독서실 이용비, 입시 비용 등 활용
- 프로그램 지원: 장학증서 수여식, 대학교 탐방, 진로 멘토링 캠프, 수료식 등</td></tr>
<tr><td>DB드림
청소년
장학</td><td>- 사업요약: 보호대상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학업을 지원
- 지원목적: 보호대상 청소년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지원을 통해 성장 및 발전의 기회 제공,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장학금과 도서, 학습 수강권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 및 미래 준비
- 지원내용
<table><tr><td>경제적 지원</td><td>- 장학금 30만원씩 매월 지급</td></tr><tr><td>학습지원</td><td>- 온라인 수강권 (연1회)
- 도서 지원(연2회)</td></tr><tr><td>정서지원</td><td>- 기념일(생일) 선물 1회 지원</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우리은행 우리 꿈.꾸.당</td><td>- 사업요약: 우리 사회의 청(소)년이 미래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면한 위기 해소 및 진로 탐색, 재능 계발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미래지원사업
- 지원목적: 진로/재능 멘토링 지원을 통한 청(소)년 재능 발굴
- 지원내용
<table>
<tr><td>분야별 지원</td><td>* 재능멘토링: 교육, 대회 참석 등 재능 계발을 위한 멘토링 지원 (지원금액 1인 1,000만원 / 10명)
* 진로멘토링: 진로 계발 및 취업 준비를 위한 멘토링 지원 (지원금액: 1인 180만원 / 90명)</td></tr>
<tr><td>공통지원</td><td>* 생계 및 의료 지원
: 의료비, 난방비 등 생계 및 의료지원 (지원금액: 1인 120만원 / 100명)
* 프로그램 지원: 발대식, WOORI 멘토링 DAY, 수료식
* 온라인 SNS 커뮤니티 활동
: 우리 꿈.꾸.당 소식 나눔, 미션 이벤트 등 장학생 소통창구</td></tr>
</table></td></tr>
<tr><td>삼성화재 교통사고유자녀 장학지원사업</td><td>- 사업요약: 교통사고로 인해 상실을 경험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을 통해 올바른 성장 기여
- 지원목적: 교통사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서적 지원을 통한 교통사고 유자녀의 정서 안정
- 지원내용: 물적지원(매월 장학금, 명절 선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정서지원(신학기 선물, 생일 선물, 수능 응원 선물, 임직원 북멘토링) 방학캠프를 통한 임직원과의 교류활동, 문화체험 기회 제공</td></tr>
<tr><td>[삼성SSAFY]삼성 청년 SW 아카데미</td><td>- 사업요약: 취업준비생에게 SW 역량 향상 교육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 지원목적: 미취업 청년 및 국내 IT/SW 기술 교육 소외 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IT/SW 교육 기회와 교육 장학금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국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지원내용: 전문화된 SW 교육 제공 지원, 교육지원금 매월 100만원, 취업지원 서비스, 심리 정서 지원, 졸업생 공익 활동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지원</td></tr>
<tr><td>우리미래금융재단 우리미래 서울러너</td><td>- 사업요약: 서울런을 이용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장학,교육사업
- 지원목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미래 준비
- 지원내용
<table>
<tr><td>학습 비용 지원</td><td>- 우리카드 바우처를 통한 학업 비용 지원
- 반기 별 100만원 지원 (총 200만원)</td></tr>
<tr><td>여름 진로 캠프 진행</td><td>- 서울대학교 내 10일 간 통학형으로 진행
- 재학생 멘토링 및 캠퍼스 투어 진행
- 창의과학/인문사회/창의성 프로젝트 등 서울대교수진 강의 (한국 창의성학회 연계)로 관련 프로그램 진행
- 우리금융그룹 본사 투어 및 임직원 토크콘서트 진행</td></tr>
</table></td></tr>
</table>

구분	세부내용
	겨울 학습 캠프 진행: - 전문 학습기관과 연계, 숙박형 학업캠프 진행 - 입시/학습컨설팅, 취약과목 집중 학습 등 수준별 교육을 통한 학업 능력 향상 해외 캠프 진행: - 일부 참여자 별도 선발하여 YYGS 캠프 신청 지원 - 캠프 신청을 위한 전문 유학원 연계
희망샘기금	- 사업요약: 암환자가정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 파트너기업 임직원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아동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지원 - 지원목적: 암환자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 및 다양한 정서적 교류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지지망 형성 - 지원내용 • 장학금(매월 1회) 및 기념일(생일,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 북멘토 프로그램: 장학생 희망도서 및 임직원 추천도서 전달(연 4회) • 임직원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진행(연 1회) • 장학생 몸건강,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연 1회) • 새희망샘기금: 졸업장학생 장학금 지급(연 5명 / 1인 100만원 지원) • 새학년 준비비(상급학교 진학자), 고등학교 졸업 축하금
폴얀센장학기금	- 사업요약: 정신장애인 가정의 자녀 및 정신질환을 가진 아동•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 - 지원목적: 정신장애인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 - 지원내용 • 정신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초등~성인) 지원 • 장학금 지원: 매월 15만원 씩, 연4회 • 새학년준비비 지원: 1인당 15만원씩, 1회 • 어린이날 선물 지원 프로그램 1회 시행
포니정재단 발돋움장학	- 사업요약: 보호종료를 앞두거나 기종료된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주도적 자립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 제공 - 지원목적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립기반 마련 • 직업훈련 및 취업을 위한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 진로/취업, 심리/정서, 금융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정보습득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td><td>- 지원내용
<table>
<tr><td>발돋움
장학금 지원</td><td>- 직업훈련비(1인 최대 1,200만원/2년)
- 생활지원금(매월 40만원) 및 실손의료비
- 학업성취수당(1회당 30만원/중복가능)
- 취업축하금(1회 100만원)</td></tr>
<tr><td>발돋움
프로그램</td><td>- 진로/취업, 심리/정서, 금융 프로그램
- 자립워크숍(1박2일)
- 자립특강</td></tr>
<tr><td>네트워크
프로그램</td><td>- 소모임 활동, 전체 봉사활동
- 장학금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 중간/최종 보고회</td></tr>
</table></td></tr>
<tr><td>SGI서울보증
파란꿈 희망파트너</td><td>- 사업요약: *SGI꿈나무희망파트너, SGI파란청춘 사업 통합 운영
•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과 자립준비 청년의 학업 비용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화 지원, 문화체험활동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와 장학생 간 네트워크 활동 촉진
- 지원목적: 저소득 가정 아동 대상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 단절 방지,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문화 소외 예방 및 진로탐색에 대한 부담감 해소, 자립준비 청년 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 유지및 학업 지속 지원, 자립준비 청년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속감 부여 및 사회적 •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 지원내용
<table>
<tr><td>저소득가정
아동, 청소년
지원</td><td>- 꿈나무 장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꿈나무 장학금 지급 (월 1회)
• 생일선물비 지급 (장학생별 연 1회)
• 중/고등학교 진학 대상자에게 진학지원금 지급
• 진로진학, 문화체험 활동 2회 진행
• 전체 장학생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 1회 진행
• 임직원 동반 단체문화체험 프로그램 1회 진행</td></tr>
<tr><td>자립준비
청년 지원</td><td>- 자립준비 청년 대상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원 및 학업 생활 모니터링 (연 3회)
• 생일선물 지원
• 자립준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 기본 교육 및 사업 오리엔테이션, 교류 프로그램 각 1회 진행</td></tr>
</table></td></tr>
<tr><td>문 의</td><td>- 홈페이지 아이들과 미래재단(http://www.kidsfuture.or.kr)
- 전화번호: ☎02-843-8478</td></tr>
</table>

5) IBK행복나눔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연간 근로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및 미혼의 자녀로 고등·대학교 재학생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휴학생, 국외 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지원 불가) - 생활비 지원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자로, 관련 서류제출이 가능한 자 - 우선 고려사항: 지원자의 경제적 상황
신청방법	- 사전 상담(신청 전 지원가능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작성 및 제출 → 심사 → 선정 및 지원
문 의	- 홈페이지 IBK 행복나눔재단(http://www.ibkfoundation.or.kr) - 전화번호: ☎02-3789-3987

6)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4년제 대학	MIU자녀	- 자격요건: 군인, 소방, 경찰공무원 자녀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2, 3, 4학년 학생 - 성적기준: 평점 3.5/4.5 이상 - 연간지원금액: 400만원
	북한이탈 청소년	- 자격요건: 재단이 지원하는 대학의 재학생 중 정부기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 이탈청소년으로 2,3,4학년 학생 - 연간지원금액: 600만원
	지역산학 협력	- 자격요건: 재단이 지원하는 대학에 재학 중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예정으로 학교추천을 받은 학생 - 연간지원금액: 등록금 전액(해당학기)
	의생명 과학	- 자격요건: 재단이 지원하는 대학의 재학생 중 의생명과학분야 연구자가 되고자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3, 4학년 학생 - 연간지원금액: 600만원
대학원	보건의료 정책분야	- 자격요건: 보건의료정책분야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인 학생 - 성적기준: 최종학교 평점 4.0/4.5 이상 - 연간지원금액: 1,000만원
	의생명 과학분야 (해외 석·박사 과정)	- 자격요건: 해외 대학원에서 의생명과학분야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인 학생 - 성적기준: 최종학교 평점 4.0/4.5 이상 - 연간지원금액: 4,000만원
	의생명 과학분야 (국내 석·박사 과정)	- 자격요건: 국내 대학원에서 의생명과학분야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인 학생 - 성적 기준: 최종학교 평점 4.0/4.5 이상 - 연간 지원금액: 2,000만원
문 의		- 홈페이지: 아산사회복지재단 (http://www.asanfoundation.or.kr)

7)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 꿈장학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 - 꿈장학멘토: 장학 기간 동안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학교 전문상담사 중 장학생과 주기적인 만남을 지원함
지원내용	- 멘토를 통해 장학금 지급(멘토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 - 선정 시 재단 소정의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해 매년 재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학교급에 따라 12개월 동안 장학금을 차등 지원함 • 고등학생: 300만원(멘토명의 통장계좌로 3회에 걸쳐서 입금)
신청기간	- 3 ~ 4월 중
신청방법	- 진행과정: 공모 → 선정(선정평가위원회) → 발표 - 신청방법 • 학생: 지원신청서 작성 및 멘토에게 멘토링계획서 작성 요청 • 멘토: 멘토링계획서 작성 → 관련 증빙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경제상황 증빙서류 등)

- SOS 장학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갑작스런 가정의 경제 위기, 학교 부적응 등 긴급하게 장학금 및 멘토링이 필요한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 11~12월은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신청 가능 - SOS장학멘토: 장학 기간 동안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중에서 주기적 만남이 가능하고 성장과정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과의 연계 지원
지원내용	- 중학생 월 20만원, 고등학생 월 30만원 - 장학금이 반드시 장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도하기 위해 멘토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멘토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18시까지 - 꿈장학 공모가 진행되는 3~4월에는 신청을 받지 않음 ※ 2025년 SOS장학은 4월 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추후 일정 공지 예정)
신청방법	- 진행과정: 공모(상시) → 선정(매월, 심의 및 선정) → 발표(다음 달 중순) - 신청방법 • 학생: 지원신청서 작성 및 멘토에게 멘토링계획서 작성 요청 • 멘토: 멘토링계획서 작성 → 관련 증빙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경제상황 증빙서류 등)
문 의	- 홈페이지 삼성꿈장학재단(https://www.sdream.or.kr) - 전화번호: ☎02-727-5400 ~ 5401

8)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든든 학업지원금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대학교 재학생 중 일전 재산기준 이하의 취약계층 가족 (1가구 1학생/1가구 2학생 신청하여도 1학생만 선발함)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일정 중위소득(100%)이하 가정 - 소득환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납부금액
지원내용	- 지속적인 학업 유지를 위하여 학업 관련 비용을 보조(300만원) - 국가 장학금, 또는 국가 및 민간 교육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령 가능
제출서류	- 기본 서류 및 취약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킹 처리)
문 의	- 홈페이지 hy사회복지재단 (https://www.ybz.or.kr/) - 전화번호: ☎02-3449-6426

9) KT&G 복지재단 장학사업

- 행복가정학습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 아동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내 아동)
지원내용	- 학습 관련 물품 구입비 20만원 지원 (1회) 2025년 1월 선정부터 20만원으로 지원금액 확대 - 매월 1개 기관에서 1명 신청 가능하며, 익월 타 대상자 신청 가능 기존 선정 아동은 지원 제외 (확인 필요 시 사무처 유선연락)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사연 접수(사회복지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
문 의	- 홈페이지: KT&G 장학재단(https://scholarship.ktngtogether.com) - 전화번호: ☎02-563-4459

- 문화예술활동비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아동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참여인원: 아동 3~7명 (담당자 제외 아동 3인 미만 시설 지원 불가) - 담당자 1명 지원 가능 (5인 이상 인솔 시, 2명까지 가능)
지원내용	- 문화예술활동비 50만원 지원 (1회) - 사연 접수 시, 지원금 사용계획 필요 지원금 분할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사업접수(공동생활가정 담당자가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
신청기간	- 연 2회 신청 (상/하반기)
문 의	- 홈페이지 KT&G 장학재단(https://scholarship.ktngtogether.com) - 전화번호: ☎02-563-4459

10)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학금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학부생	대학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연 100만 원~등록금 전액)
	국가근로 장학금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학부생 -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 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돌봄청년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원 (시급: 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640시간 우선선발 대상의 경우 학기당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소득요건 有)	대출금리 1.7% ('25.1학기 기준, 변동금리) 등록금대출(한도 내 실소요액) 생활비대출(학기당 20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출금리 1.7% ('25.1학기 기준, 고정금리) 등록금대출(한도 내 실소요액) 생활비대출(학기당 200만원)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1599-2000)

▢ 학습지원

1) 학력인정 평생교육

- 평생교육법에 의거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과정을 통해 학력 인정(학기를 단축하여 운영할 시 초등학교 2년, 중 · 고등학교 1년의 범위에서 단축 가능)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024년 4월 기준)

연번	시 • 도	시설명	연번	시 • 도	시설명
1	서울	서현초등학교	22	대전	대전예지중고등학교
2		서울자동차고등학교	23		대전시립중고등학교
3		신동신중정보산업고등학교	24	경기	계명고등학교
4		일성여자중고등학교	25		안양상업고등학교
5		정암미용고등학교	26		부천실업고등학교
6		진형중고등학교	27		고양송암고등학교
7		청량정보고등학교	28		진영고등학교
8		청암중고등학교	29		진영중학교
9		한림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30		진영초등학교
10	부산	국제금융고등학교	31	강원	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11		부경보건고등학교	32	충북	예일미용고등학교
12		부경보건고등학교 병설중학교	33	전북	진북고등학교
13		부산경호고등학교	34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14		부산미용고등학교	35		군산평화중고등학교
15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중학교	36		남일초중고등학교
16		부산예원고등학교	37		인화초중고등학교
17		부산예원고등학교 병설중학교	38	전남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18		부산조리고등학교	39		홍지중고등학교
19	대구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40	경북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20	인천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41	경남	경남미용고등학교
21		남인천중고등학교			

2) 초 • 중 • 고 교육비 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 2025. 3. 4. ~ 3. 21.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지원내용	- 교육급여 [초 • 중 • 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교육급여로 입학금 •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지원대상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상세 기준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ie.go.kr) 시도교육청 지원 기준 참고	
신청방법 (택 1)	① 방문 신청	② 온라인 신청(PC 또는 모바일)
	부모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초록우산 아이리더"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익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만 7세~만 18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동(학업, 예술, 체육, 자율 등 모집 안내문 참고)
지원내용	- 인재양성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 전문교육과정 연계비(학원비, 레슨비 등) • 교재 및 교구 구입비 • 대회 참가비 • 체력 증진비 • 재능계발 보조비(재능계발장소 연계비, 교통비 등) - 프로그램 지원: 아이리더 발대식, 학업컨설팅, 재능 분야 전문가 멘토 만남, 멘토특강, 초록우산 아이리더 멤버십 활동(분야별 리더 교류 등)
지원자격	- 분야별 세부 지원 자격(재단 홈페이지 참조) - 하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후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서류 제출이 미비하거나, 작성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서류의 허위 기재, 변조,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 초록우산 아이리더로서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 등) • 기존 초록우산 아이리더 대상 중 인재양성지원사업 서비스 종결 기준에 해당하여 전년도 대상자에서 종결된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접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분	세부내용
신청서류	1. 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추천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4번은 초록우산 홈페이지(www.childfund.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5. 등본 6. 재능증빙서류 7. 경제상황 증빙서류
신청방법	- 접수 기간 : 매년 10월 ~ 12월 -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접속(www.childfund.or.kr) 공지사항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이메일 및 우편제출(이메일, 등기우편 제출) - 접수 문의: 지역별 어린이재단 사업기관 리스트 참조 (서울지역본부:(02) 325-2257, seoul-cf@naver.com)
문 의	- 홈페이지 초록우산 아이리더(https://www.childfund.or.kr) - 전화번호: ☎1588-1940

4)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서울	나래희망학교	02-393-4720	강원	마리아의 집	033-264-0194
부산	마리학교	051-253-7543	충북	청주해오름마을	043-285-4438
대구, 경북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041-568-0691
인천	인천자모원	032-772-0071		천안새소망의집	041-568-0695
광주	엔젤하우스	062-651-8585	전북	민들레학교	063-283-1356
대전, 세종	대전자모원	042-934-6934	전남	성모의집	061-279-8004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052-903-9200	경남	범숙학교	055-298-1127
경기	아우름 대안학교	02-1600-0152	제주	사회복지법인청수 (애서원)	064-773-2010
	나래대안학교	02-393-4720			

- 지원대상: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신청문의: 해당기관, 시·도 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

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지원내용: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문화예술, 체육, 과학, 진로개발,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등)운영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31~4)
  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https://youth.go.kr/yaca/index.do)

6)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지원대상: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이거나 정서 ·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9~18세)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정서 · 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11박 12일) 제공, 상담 · 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학교, 가족센터 등 기관 및 개인 신청 가능
- 신청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www.nyhc.or.kr)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053-665-6914, www.youthfly.or.kr)

7) 진로와 진학 주요 정보 검색 사이트 안내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
고용24(워크넷)	https://www.work.go.kr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http://www.jinhak.or.kr/
고입정보포털	https://www.hischool.go.kr/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Main.do
하이파이브(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https://www.hifive.go.kr/index.jsp
하이인포(서울시 인문계고)	https://hinfo.sen.go.kr/
대입정보포털	http://www.adiga.kr/

4 양육지원

▢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임신, 출산, 육아, 보육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제공 - 온라인 전문가 상담 - 절차: 회원 로그인 → 상담분야 게시판 이동 → 상담란 입력 → 답변 확인 - 분야: 임신, 출산, 육아, 심리 • 정책상담, 어린이집 이용상담 등
문 의	-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2) 서울시 임신 • 출산 정보 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서울시 모자보건서비스 정보 제공 - 부모교육 신청 및 자료 배포 - 상담실 운영 - 의료기관, 산후도우미, 수유시설 등 정보 제공 - 임신 및 출산 정보 제공(임신주기별 특징, 출산, 순산, 산후조리 등) - 양육 정보 제공(아동 발달단계, 예방접종, 모유수유 등) - 직장맘지원센터 안내 - 직장맘의 모성보호 및 일·가족 양립지원 - 직장·가정 내 고충 상담, 법률 상담, 역량강화교육, 직장맘 커뮤니티 등 -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3개 센터 운영
문의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seoul-agi.seoul.go.kr) -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www.workingmom.or.kr/mom_home) -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www.gworkingmom.net) -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www.seoulworkingmom.or.kr/sb)

3) 우리동네 키움포털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돌봄 서비스 및 시설 검색: 우리동네 키움포털 시설 정보: 초등돌봄: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어린이집 영유아돌봄: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정보: 우리동네 키움포털 → 초등 & 영유아돌봄 → 시설별 서비스 소개 - 각종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우리동네키움센터(만 6~12세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방과후 어린이집(만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아동), 공동육아방(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보호자), 공동육아나눔터(만 12세 미만의 자녀 및 보호자), 아이돌봄서비스(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
문 의	- 홈페이지 (icare.seoul.go.kr)

▢ 임신·출산 지원

1)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사업)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신청방법	- 산부인과 방문,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 확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온라인 신청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 (약국 포함)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의료비, 처방 약제비
신청방법	- 통합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 연계 - 직접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월 90,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월 200,000원 -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수시 신청(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사용 범위: 유흥•사행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지원금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잔액확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또는 사용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문자·알림톡·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서 확인되는 바우처 잔액은 실시간이 아니므로, 정확한 잔액 및 이용내역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바우처 지원일 ~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 후 신청: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후)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지원내용	- 소득 수준별 차등 (정부지원금에 한함) - 영아종일제: 시간당 2,326원 ~ 9,886원 - 시간제: 시간당 2,326원 ~ 9,886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정부지원 신청) - 서비스 지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사용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자동 결제

-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국민행복카드 출시 및 사용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국번없이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1566-3232 (*4번선택)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BC카드	www.bccard.com	☎1899-4651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1899-4282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1566-3336
	KB국민카드	card.kbcard.com	☎1599-7900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1544-8868
※ 기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2) 해산급여

구분	세부내용	
해산급여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	- 수급자가 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긴급지원 해산비는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서비스 항목: 산모 건강관리(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기간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상이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건강관리

4)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구분: 관내 임산부, 출산수유뷰(출산 후 4개월 이하), 영·유아 65개월 이하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 대상자(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 · 지도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 보충식품 지원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보충식품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의 식품을 가정으로 배달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문의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내용	-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유산 •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16 ~ 21주: 50만원 / 22 ~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문 의	- 고용노동부: ☎1350

6)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e보건소(www.e-health.go.kr)’ 및 ‘아이마중’ 어플을 통해 신청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7)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검사비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확진검사비지원: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환아관리: 질환에 따른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 온라인신청: ‘e보건소(www.e-health.go.kr)’ 및 ‘아이마중’ 어플을 통해 신청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인구보건복지협회: ☎02-2639-2826

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 -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 온라인신청: ‘e보건소(www.e-health.go.kr)’ 및 ‘아이마중’ 어플을 통해 신청
문 의	- 영유아 난청 관리 위탁사업단(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02-848-5326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9)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 - 고용보험 가입자 및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지원내용	-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 -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 최대 1년 동안 지급 가능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사용기한: 최대 1년 6개월 가능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시청 가능 - 육아휴직은 기간 내 총 4번에 나누어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신청시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 - 회사 신청 • 육아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회사는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보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급여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필요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육아휴직 승인서(회사발급) - 재직증명서 - 급여통장사본
문 의	-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https://1350.moel.go.kr/home/) -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 자녀 성장 지원

1) 청소년 특별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 - 비행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지자체별 신청 및 지원 시기 상이)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내용	지원 종류	지원내용	세부사항	지원금
	생활지원	- 의식주 등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 신체/정신적으로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이내
	학업지원	- 교육비용 및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수업료, 학원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	-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별도
	법률지원	-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 청소년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내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
문 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2) 자녀장려금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원대상</td><td>-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td></tr>
<tr><td>지원내용</td><td>-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td></tr>
<tr><td>신청기간</td><td>-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대상자</th><th>산정대상</th><th>신청기간</th></tr>
<tr><td rowspan="3">선택</td><td rowspan="2">반기신청</td><td rowspan="2">근로소득자</td><td>‘24년 상반기 소득</td><td>‘24.9.1.~19.</td></tr>
<tr><td>‘24년 하반기 소득</td><td>‘25.3.1.~17.</td></tr>
<tr><td>정기신청</td><td>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td><td>’24년 연간 소득</td><td>‘25.5.1.~6.2.</td></tr>
</table>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 6. 3. ~ 12. 1. 입니다.</td></tr>
<tr><td>신청방법</td><td>- 전화신청: ARS전화(1544-9944)
- 홈택스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온라인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대상자가 동의 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제도: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td></tr>
<tr><td>문 의</td><td>- 국세청: ☎126</td></tr>
</table>

3) 아름다운 동행: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위시박스’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법적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연령 8세~19세) 중 열정과 재능이 뛰어난 자 ※ 법적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없을 경우 기관을 통해 신청
지원내용	- 법적 한부모가족에 속한 미성년 자녀에게 장래희망 실현에 필요한 물건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녀의 원활한 재능개발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ex)악기, 미술도구, 운동용품 등
지원범위	- 50만원 이내(택배비 포함) ※ 현금(학원비), 전자기기(컴퓨터, 태블릿PC), 일반 의류, 가구 등 지원제한
지원절차	- 신청(수시지원) → 심사 및 선정(다음달 1일~10일) → 통보 및 지원(다음달 11일~15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 → 지원 신청 → 위시박스 → 신청하기
문 의	- 아름다운 동행: ☎02-737-9595

▢ 보육 지원

1) 아동수당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bokjiro.go.kr)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부모급여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지원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한 경우: - 0세 어린이집 지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 - 1세 어린이집 지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현금2.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장애아동수당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9만원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bokjiro.go.kr)
문 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가정양육수당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아동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 (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bokjiro.go.kr)
문 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복지로(bokjiro.go.kr)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 포함)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bokjiro.go.kr)
문 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한부모가족상담전화: ☎1577-4206

6)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18세 이하 자녀
지원내용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bokjiro.go.kr)
문 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한부모가족상담전화: ☎1577-4206

7) 시간제 보육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이용단가: 5천원(지원단가: 3천원, 본인부담: 2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방문신청: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문 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8) 방과후 보육료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하지 않음)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일반아동: 월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할 경우 장애아방과후보육료의 50%(293,000원)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일반아동은 월 20만원 지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bokjiro.go.kr)
문 의	- 교육부: ☎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9) 영유아 보육료 지원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원대상</td><td>-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분</th><th>0세반</th><th>1세반</th><th>2세반</th><th>3~5세반</th></tr>
<tr><td>기본</td><td>540,000원</td><td>470,000원</td><td>394,000원</td><td>280,000원</td></tr>
<tr><td>야간</td><td>540,000원</td><td>470,000원</td><td>394,000원</td><td>280,000원</td></tr>
<tr><td>24시</td><td>810,000원</td><td>712,500원</td><td>591,000원</td><td>420,000원</td></tr>
</table>
</td></tr>
<tr><td>신청방법</td><td>-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bokjiro.go.kr)</td></tr>
<tr><td>문 의</td><td>- 교육부: ☎02-6222-6060</td></tr>
</table>

10)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2.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 취학대상 아동('18.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월 최대 200,000원 범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bokjiro.go.kr)
문 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44-0079 - 교육부: ☎02-6222-6060

▢ 돌봄지원

1) 아이돌봄 지원사업[4)]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종합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기관연계 서비스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최대 3명/ 아이돌보미 1인당)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최대 5명/ 아이돌보미 1인당) - 우선순위: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아동 관찰 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이용시간: 1회 3시간 이상 신청(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종합형) • 기본형: 학교, 보육 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 불가, 준비된 식사 데워주기만 가능) 등 •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세탁, 놀이공간 정리, 청소, 식사, 설거지 등) •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기관연계 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이용시간: 1회 3시간 이상 신청(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비용은 서비스 유형마다 상이(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bokjiro.go.kr)
문 의	-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4) 아이돌봄서비스(https://idolbom.go.kr/indexPage.do)

2)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bokjiro.go.kr)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서울형 아이돌봄비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친인척 조력자: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지원내용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 민간형: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 돌봄 아동수별 시간당 지원액

아동 수	시간당 지원액	월 지원액
1명	7,500원	15~30만원
2명	11,250원	22.5~45만원
3명	15,000원	30~60만원

신청방법	- 지원방식: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 신청시기: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돌봄활동: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 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 돌봄비 지급: 지원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권 지급
문 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4808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지역아동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학교밖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를 포함)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신청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 ~ 중3) - 우선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다자녀
지원내용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기초학습,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활동, 귀가 지도 - 방과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방문, 유•무선 전화로 면담 후 참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
문 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92~5

- 우리동네 키움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6세~12세의 아동
지원내용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시설 - 돌봄방식 구분 / 내용 정기 돌봄 / - 일정한 기간(한달 이상)동안 원하는 요일 및 시간대에 이용 일시 돌봄 / - 학교 휴업 및 공휴일,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이용
운영시간	- 학기 중: 13:00 ~ 20:00 - 장·단기 방학 중: 09:00 ~ 18:00 ※ 센터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이용요금	- 이용 아동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자치구별 이용료 상이

구분	세부내용
신청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돌봄서비스 신청(온라인, 전화, 방문) - 전화신청의 경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 센터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문 의	- 홈페이지: 우리동네 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 우리동네 키움센터: ☎02-120

▢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기관

1)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시설이용 - 서울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및 도서, 육아용품, 백일·돌상 대여/ 장난감 수리 및 기부·교환 - 전자책도서관: 제약 없이 육아 관련 도서를 포함한 전자책 무료 이용 (1회 최대 5권까지 대출 가능) - 아이사랑플래너 양육상담: 양육·심리상담 전문가 상담 지원 -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심리상담, 노무상담, 법률상담
문 의	- 홈페이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seoul.childcare.go.kr) - 대표 전화번호: ☎02-772-9814~9

2) 드림스타트[5)]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0세(임산부)이상 만 12세(초등학생)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지원내용	-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영역별 서비스 제공 - 서비스별 세부 프로그램은 거주지 지역센터로 문의

구분	세부내용
신체/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인지/언어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5) 드림스타트(http://www.dreamstart.kr)

	부모/가족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문 의	- 대표 전화번호: ☎02-6454-8500 -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www.dreamstart.go.kr)	

3)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6)]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및 보호자
지원내용	- 상담(개인, 채팅, 게시판, 전화) - 심리검사(대면, 온라인) - 청소년 동반자: 찾아가는 상담, 정서적 지원, 생활지원 연계, 프로그램 지원 연계
신청방법	- 전화를 통한 신청: ☎02-2285-1318

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9세~24세) -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지원내용	- 상담지원: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대면, 전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상담) - 교육지원: 학업 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학력 취득 지원, 학교 복귀 지원, 대학입시 지원 등 -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직업탐색,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자립지원: 근로 권익 보호, 기초 소양교육,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 건강검진: 건강생활 관리, 체력관리, 건강검진(본인부담 없음) - 기타서비스: 급식지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
지역센터	-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 → 지역꿈드림 찾기 - 서울 26개 지역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중

6)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http://www.teen1318.or.kr/)

5) 시소와 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통합사례관리, 양육정보지원, 양육활동지원, 부모-아동 관계증진지원, 양육상담, 양육자지원체계구축, 영유아가정 관계형성프로젝트(띵동놀이터), 자조공간기반 양육지원, 희망브릿지-영유아발달지원체계구축, 지역사회연계활동
문 의	- 홈페이지: https://sisomapo.com -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02-706-0610

6) 따움상담센터(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 동작구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장애 및 발달지연,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 및 아동(초등학생 6학년까지)과 학부모(보호자가 동반해야 이용 가능) - 동작구 관내 거주자 및 직장인, 직계가족(자녀, 손자녀)만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이용금액: 1회 25,000원(검사 및 평가비용은 종류에 따라 상이)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아동은 지원범위 내 치료비 50% 감면

프로그램	내용
검사안내	종합심리검사, 놀이평가, 언어검사, 영유아발달검사 등
상담프로그램	놀이, 언어치료, 인지학습, 사회성증진프로그램, 부모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비대면 프로그램, 미술 등

신청방법	- 전화로 예약 접수 후 방문 ☎02-825-5575
문 의	- 따움상담센터 홈페이지: www.dccic.go.kr - 대표 전화번호: ☎02-825-5575

5 자립 및 취업지원

▢ 취업 및 창업 교육지원

1)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Ⅰ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Ⅰ유형	- 취업지원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 URL - https://www.work24.go.kr

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 제고를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구분	세부내용
내 용	- 의무참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함 - 희망참여 • 법 제7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은 희망시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 가능
선정 방법	-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함
대상 선정	- 근로능력 있다고 판정된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진행 절차	- 조건부 수급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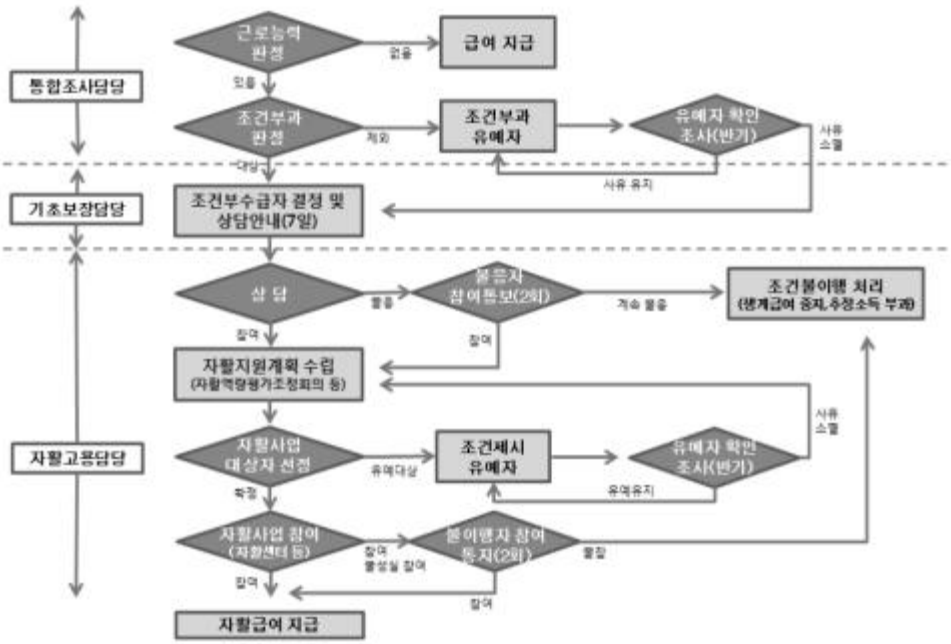 - 희망 참여자 기준 - 상기 절차 중 상담부터 준용(조건 부과 및 유예 여부 미적용)
지자체 부서별 업무 처리	- 업무처리 유관 부서: 통합조사관리팀 조사, 기초생활보장팀 보장결정 - 부서별 업무 범위 - 통합조사관리팀: 자산조사, 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전출입 통보

	- 기초생활보장팀: 보장결정, 통지(조건부수급자 결정통지 포함) - 자활고용지원팀: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참여 관리, 평가 및 사후 관리
참여 자격	- 재외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로 보장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 신청 가능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대책(22.11.24)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자활근로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구분	세부내용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 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대상 아님

- 평가방법

자활지원계획

- 자활대상자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수립
- 대상: 모든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 절차
  - ① 초기상담: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활역량평가표 참조하여 초기상담 실시,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② 대상자별 판단: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 (조건부 수급, 조건제시 유예, 조건부과 유예)
  - ③ 자활사업 배치: 근로능력, 의욕 및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 의뢰
  - ④ 대기자 처리방안: 자활사업 대기기간이 1개월 초과할 경우 다른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함
  - ⑤ 사후조치: 조건이행 여부, 유예상황, 사업 참여 결과를 최소 3개월마다 재확인하여 적절한 조치 취함(조건부과 유지 또는 변경)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평가 결과	사업		실시기관	기준
85점 이상 (집중취업지원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85점 미만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55점 미만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지역자활센터 지부별 현황

지부명	지역자활센터 개수	지부명	지역자활센터 개수
강원지부	18	서울지부	30
경기지부	33	울산지부	5
경남지부	20	인천지부	11
경북지부	19	전남지부	23

광주지부	9	전북지부	17
대구지부	10	제주지부	4
대전지부	5	충남세종지부	16
부산지부	18	충북지부	12
총계		**250**	

자활근로 인건비

구분	시장진입형/ 기술 • 자격자	사회서비스형/ 기술 • 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4,220/68,220	56,210/60,210	32,980
급여단가	60,220/64,220	52,210/56,210	28,980
실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565,720	1,357,460	753,480
비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

※ 표준소득액은 자활근로 사회보험 소득신고 등 월 평균 서독 적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

3) 국민내일배움카드제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내용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55~100%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11.6~3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1350) - HRD-Net(www.hrd.go.kr)을 통해 내일배움카드 신청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02-719-8431)
훈련과정 수강신청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고용센터 방문 필요)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자
발급과정	- 신청 → 접수 → 서류확인 → 발급가능 여부 결정 → 발급 및 카드수령
문 의	- 고용노동부: ☎1350

4) 서울시 인력개발기관

- 서울 우먼업

기관명	서비스 내용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 디지털역량 강화 -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 여성인력개발기관 역량 강화 -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지원서비스 일자리 부르릉 - 서울우먼업 통합홍보/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 - 서울광역새일센터 운영
여성발전센터	- 전문 및 일반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운영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및 정부 지원사업 위탁운영 - 취업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반 기업체 간담회 운영 - 여성창업플라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창업컨설팅
여성인력 개발센터	- 실업자 및 재직자(국비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기타특강 운영 - 취업 상담 및 알선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구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성능력개발원		동작구 노량진로 10	☎02-813-1906	https://swrd.seoulwomanup.or.kr
여성 발전 센터	남부	금천구 독산로50길 23	☎02-802-0922	https://nambu.seoulwomanup.or.kr
	동부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02-460-2300	https://dongbu.seoulwomanup.or.kr
	북부	노원구 동일로207길 50	☎02-3399-7699	https://bukbu.seoulwomanup.or.kr
	서부	양천구 남부순환로371	☎02-2607-8791	https://seobu.seoulwomanup.or.kr
	중부	마포구 토정로35길 17	☎02-719-6307	https://jungbu.seoulwomanup.or.kr
여성 인력 개발	강북	강북구 덕릉로108, 3층	☎02-980-2377	https://gangbuk.seoulwomanup.or.kr
	강서	강서구 까치산로134, 5층	☎02-2692-4549	https://gangseo.seoulwomanup.or.kr
	관악	관악구 쑥고개로75, 1층~5층	☎02-886-9523	https://gwanak.seoulwomanup.or.kr

구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센터	구로	구로구 공원로63, 2층	☎02-867-4456	https://guro.seoulwomanup.or.kr
	노원	노원구 공릉로187, 5층	☎02-951-0187	https://nowon.seoulwomanup.or.kr
	동대문	동대문구 왕산로60-1, 6층	☎02-921-2020	https://ddm.seoulwomanup.or.kr
	동작	동작구 사당로299	☎02-525-1121	https://dongjak.seoulwomanup.or.kr
	서대문	서대문구 신촌역로10, 4층	☎02-332-8661	https://sdm.seoulwomanup.or.kr
	서초	서초구 강남대로216, 3층	☎02-6929-0011	https://seocho.seoulwomanup.or.kr
	성동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5층	☎02-3395-1500	https://sd.seoulwomanup.or.kr
	송파	송파구 중대로9길 34, 2층	☎02-430-6070	https://songpa.seoulwomanup.or.kr
	영등포	영등포구 영중로61	☎02-858-4514	https://ydp.seoulwomanup.or.kr
	용산	용산구 청파로139-21	☎02-714-9762	https://yongsan.seoulwomanup.or.kr
	은평	은평구 녹번로76	☎02-389-1976	https://ep.seoulwomanup.or.kr
	종로	종로구 대학로11길 23, 2~4층	☎02-765-1326	https://jongno.seoulwomanup.or.kr
	중랑	중랑구 망우로32길 20	☎02-3409-1947	https://jungnang.seoulwomanup.or.kr
	강동	강동구 양재대로 1458 5층	☎02-475-0110	https://gd.seoulwomanup.or.kr/
	장애	강서구 화곡로 346 2층	☎02-6929-0002	https://wsbt.seoulwomanup.or.kr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지원내용	-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경력개발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취업자신감 고취 - 직업교육훈련: 직무능력강화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실시 - 취·창업연계: 인턴지원, 취업알선 서비스, 창업유관기관 연계 - 경력단절예방: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개선지원, 경력단절협력망구축, 인식 개선사업 - 취업 후 사후관리: 고용유지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구축 지원
문 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5)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러닝 교육)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 colspan="2">온라인교육</td><td>창업·경영 교육, 재창업패키지,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등 다방면 창업 관련 자료 제공</td></tr>
<tr><td rowspan="3">현장 교육</td><td>업종 전문 기술 교육</td><td>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 역량 강화 및 경영 여건 개선 촉진을 위해 업종별 전문고급기술 교육을 지원합니다.
<table>
<tr><td>지원대상</td><td>- 소상공인, 예비창업자</td></tr>
<tr><td>교육기간</td><td>- 공고일로부터 ~ 10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td></tr>
<tr><td>지원한도</td><td>- 업종기초(20만원 한도, 5시간 내외, 국비 100% 지원)
- 업종심화(40만원 한도, 10시간 내외, 자부담 10%)
- 업종고급(60만원 한도, 20시간 내외, 자부담 10%)</td></tr>
<tr><td>지원내용</td><td>-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 과정을 보유한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맞춤형 교육지원</td></tr>
</table></td></tr>
<tr><td>경영 개선 교육</td><td>소상공인 지속성장 및 경영개선,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위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table>
<tr><td>지원대상</td><td>- 소상공인, 예비창업자</td></tr>
<tr><td>교육기간</td><td>- 공고일로부터 ~ 12월(교육별로 상이)</td></tr>
<tr><td>지원한도</td><td>- 교육별로 상이(교육과정 참고) 국비지원 100%</td></tr>
<tr><td>지원내용</td><td>- 수출·창업교육, 지역맞춤교육, 소외계층교육, 찾아가는 주문식 교육 등</td></tr>
</table></td></tr>
<tr><td>상생 협역 교육</td><td>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증진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table>
<tr><td>지원대상</td><td>- 소상공인</td></tr>
<tr><td>교육기간</td><td>- 프로그램 별 상이</td></tr>
<tr><td>지원한도</td><td>- 국비지원 100%(무료)</td></tr>
<tr><td>지원내용</td><td>-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최신 트렌드(AI, 로컬라이징, 디지털화 등)를 반영한 교육 지원(오프라인 실습 교육)</td></tr>
</table></td></tr>
<tr><td rowspan="2">수강 방법</td><td>온라인</td><td>-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 나의 강의실 입장 → 학습 → 이수증 출력</td></tr>
<tr><td>현장</td><td>- 회원가입 → 교육과정 검색 → 각 현장교육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td></tr>
<tr><td colspan="2">문 의</td><td>- 홈페이지 (http://edu.sbiz.or.kr)
- 오프라인 교육: ☎1357
- E-러닝 교육 시스템: ☎1644-5302</td></tr>
</table>

▢ 창업 자금 대여

1)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창업 • 운영자금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원대상</td><td>-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td></tr>
<tr><td>제한대상</td><td>-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 6회차 이상 변제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민법」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법인</td></tr>
<tr><td>지원내용</td><td>-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
<table>
<tr><th>구분</th><th>창업자금</th><th>운영자금</th><th>시설개선자금</th><th>긴급생계자금</th></tr>
<tr><td>대출한도</td><td>7천만원</td><td>2천만원</td><td>2천만원</td><td>1천만원</td></tr>
<tr><td>대출기간</td><td>6년 이내</td><td>5.5년 이내</td><td>5.5년 이내</td><td>5년 이내</td></tr>
<tr><td>금리</td><td colspan="4">연 4.5%</td></tr>
</table>
-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td></tr>
</table>

	-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문 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https://www.kinfa.or.kr)

2) 열매나눔재단

- 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창업 기본 교육 및 준비 상담 - 창업자금 최대 3,000만원 무이자 • 무담보 • 무보증 대출(3개월 거치, 57개월 원금 상환) - 성실상환 시 최대 200만원 상환금 감액 - 1:1 맞춤 창업 컨설팅 - 사후관리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중위소득 70% 이하) - 서울, 인천, 경기(일부) 소재 창업예정자(기창업자는 창업 후 6개월 이내)
진행절차	
문 의	- 열매나눔재단: ☎02-2038-8514

- 취약계층 여성 자립지원사업 ‘더나은 네일’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재단 운영 네일숍 '더나은네일' 인턴 근무(최소 4개월, 최대 6개월) - 활동 장학금 지원 - 타 네일숍 서비스 체험 및 관련 교육 제공 - 전문가 코칭을 통한 네일아트 기술 훈련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소지자
진행절차	
문의	- 열매나눔재단: ☎02-2038-8514

3) 아름다운재단

- 한부모여성 창업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

구분	세부내용
사업대상	-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돌보며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 가구주 지원
지원자격	- 구체적인 창업 계획이 있는 한부모여성 가구주 - 가구 전체의 한달 소득이 중위소득 70%기준보다 낮은 한부모여성 가구주

구분 (단위: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0%	2,752,861	3,517,747	4,268,441	4,975,734	5,645,364

- 2025년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위소득 기준을 따르며, 부동산, 차량 등 보유한 재산 기준은 없음
- 희망가게 접수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전 신청횟수도 소급 적용
- 신규창업에 한함
-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의 형태로 창업하려는 사람
- 가게를 열 장소의 가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사람
- 민간기관,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 세금 체납이 있는 사람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을 창업하려는 사람

<table>
<tr><td>지원내용</td><td>- 보증금 포함 창업 대출금 4,000만원 지원 (8년 상환/이자1%)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 전후 1:1 사례관리자 동행
-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 통합 지원</td></tr>
<tr><td>지원지역</td><td><table>
<tr><th>수도권</th><th>강원권</th><th>대전권</th><th>대구권</th><th>광주권</th><th>부산권</th></tr>
<tr><td>서울/경기/
인천</td><td>원주/춘천</td><td>대전/천안/
청주/충남북
일부</td><td>대구 및
경북 일부</td><td>광주/전남북
일부</td><td>부산/김해/
양산/창원/
울산</td></tr>
</table></td></tr>
<tr><td>지원내용</td><td>- 점포임차보증금 및 운영자금대출금 합계 최대 4,000만원 대출지원 (보증금 신청 필수)
<table>
<tr><th>내용</th><th>금액</th><th>조건</th></tr>
<tr><td>대출금</td><td>최대 4,000만원</td><td>-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 이자: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이자포함))</td></tr>
</table>- 전문 창업컨설팅 지원: 상권 및 입지 분석,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개업 후 사후관리 등
- 통합지원: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td></tr>
<tr><td>접수기간
및 심사일정</td><td><table>
<tr><th>구분</th><th>61차</th><th>62차</th><th>63차</th></tr>
<tr><td>접수</td><td>2/1 ~ 2/28</td><td>5/1 ~ 5/30</td><td>8/1 ~8/29</td></tr>
<tr><td>심사</td><td>3/3 ~ 3/27</td><td>6/2 ~ 6/26</td><td>9/1 ~ 10/1</td></tr>
<tr><td>최종발표</td><td>3/28</td><td>6/27</td><td>10/2</td></tr>
<tr><td>선정자
오리엔테이션</td><td>4/4 ~ 4/5</td><td>7/4 ~ 7/5</td><td>10/17 ~ 10/18</td></tr>
</table>- 접수, 심사 일정은 아름다운재단과 협력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발표 이후 선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필참
-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이 진행되며, 전담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본격적인 창업을 진행
- 창업자금의 원금은 사업을 개시하고 3개월 뒤부터 상환</td></tr>
<tr><td>신청 및
지원 절차</td><td>- 모집공모 → 서류심사 → 1차 면접심사(창업의 준비성) → 신용조회 → 2차 면접심사 및 기술심사(업종의 전문성) → 현장실사(가정방문) → 최종발표</td></tr>
<tr><td>신청방법</td><td>-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fax, e-mail 접수 불가)</td></tr>
<tr><td>문 의</td><td>-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02-3675-1240</td></tr>
</table>

- 한부모여성 재기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맏자녀 기준 고3 이하 자녀 양육중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족
지원내용	-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비 및 생활안정금 1인당 최대 350만원 지원 - 긴급지원금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대면 네트워크) 지원
문 의	-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 사업관련문의 grant@bf.or.kr

▢ 근로복지공단

1)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육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가구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913,610	3,146,126	4,020,282	4,878,218	5,686,554	6,451,844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 중위소득 80% 원칙 적용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

	•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로 예외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 기준 제외
대출 대상 훈련	- 아래에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집체•비대면 실시간 원격 훈련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www.jobgohrd.or.kr**
대부한도 및 방법	- 총 대부한도: 1인당 1천만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50 ~ 200만원 이내 -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대상월의 익월 10일까지 대부 신청(소급 신청 불가, 월별 신청) - 기접수 훈련과정 외 다른 훈련과정 대부 신청 시 대부대상월 대부액 200만원 초과 불가 (예시: 1/21-5/30 훈련 (140시간 이상) 1월 훈련: 15일 미만으로 대부대상월에서 제외 (접수불가) 2월 훈련: 3/1 ~ 3/10까지 신청, 3월 지급 - 신규신청 3월 훈련: 4/1 ~ 4/10까지 신청, 4월 지급 - 추가신청 4월 훈련: 5/1 ~ 5/10까지 신청, 5월 지급 - 추가신청 5월 훈련: 6/1 ~ 6/10까지 신청, 6월 지급 - 추가신청 * 신규 신청 이후 동일한 훈련에 대한 월별 지급 신청은 '추가신청' 유형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동일, 보증번호 추가 발행) - 부적격 사유 • 추가신청자의 경우 대부 적격여부 판단하여, 훈련기간 중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재 등의 사유 발생시 대부실행 중단 -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10일까지(휴일인 경우 익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실행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법정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해 월별 대부 신청 - 훈련개시월과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모두 15일 미만일 경우에만 합산 → 합산하여 15일 이상일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 (개시월, 종료월 중 하나만 15일 미만인 경우 합산 적용 불가)
금리	- 이자율: 연 1% -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 대부기간 내 월별 신청, 매월 보증서 발행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인증(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 후 신청 -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 불가
접수방법	- 연중 수시 접수(단, 투입시기 협의)
문 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생활안정자금

※ 6종: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구분	세부내용	
혼례비	융자개요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 1,250 만원 범위 내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252만원 이하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table>
<tr><td rowspan="6"></td><td>융자조건</td><td>-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td></tr>
<tr><td>보증방법</td><td>-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td></tr>
<tr><td>증빙서류</td><td>
<table>
<tr><td>공통</td><td>-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td></tr>
<tr><td>정규직</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td></tr>
<tr><td>비정규직</td><td>- 근로계약서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간제, 단시간, 파견</td></tr>
<tr><td>특수형태</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td></tr>
<tr><td>1인 자영업자</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td></tr>
<tr><td colspan="2">-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td></tr>
</table>
</td></tr>
<tr><td>접수</td><td>-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td></tr>
<tr><td>선발</td><td>- 1차 수시(즉시)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td></tr>
<tr><td rowspan="4">의료비</td><td>융자개요</td><td>-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 불가</td></tr>
<tr><td>융자한도</td><td>- 1,000만원 범위 내 실제 비용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td></tr>
<tr><td>신청기한</td><td>-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td></tr>
<tr><td>신청대상</td><td>-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td></tr>
</table>

<table>
<tr><td rowspan="7"></td><td>재직요건</td><td>-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td></tr>
<tr><td>소득요건</td><td>- 월평균소득이 252만원 이하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td></tr>
<tr><td>신청제한</td><td>-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td></tr>
<tr><td>융자조건</td><td>-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td></tr>
<tr><td>보증방법</td><td>-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td></tr>
<tr><td>증빙서류</td><td>
<table>
<tr><td>공통</td><td>-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요양시설 이용 •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융자대상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융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td></tr>
<tr><td>정규직</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td></tr>
<tr><td>비정규직</td><td>- 근로계약서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간제, 단시간, 파견</td></tr>
<tr><td>특수형태</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 • 도급 • 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td></tr>
<tr><td>1인 자영업자</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td></tr>
<tr><td colspan="2">-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td></tr>
</table>
</td></tr>
<tr><td>접수</td><td>-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td></tr>
</table>

	선발	- 1차 수시(즉시)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노부모부양비	융자개요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융자대상자인 피부양자 여부 :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청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융자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이전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있지 않고,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융자한도	- 2,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신청기한	-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소득요건	- 월 평균소득이 252만원 이하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융자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융자대상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융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정규직: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간제, 단시간, 파견

		<table><tr><td>특수형태</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 • 도급 • 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td></tr><tr><td>1인 자영업자</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td></tr><tr><td colspan="2">-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td></tr></table>
	접수	-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선발	- 1차 수시(즉시)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장례비	융자개요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융자대상자인 피부양자 여부 :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청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융자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이전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있지 않고,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252만원 이하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table>
<tr><td rowspan="8"></td><td>신청제한</td><td>-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td></tr>
<tr><td>융자조건</td><td>-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td></tr>
<tr><td>보증방법</td><td>-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td></tr>
<tr><td>증빙서류</td><td><table>
<tr><td>공통</td><td>-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융자대상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융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td></tr>
<tr><td>정규직</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td></tr>
<tr><td>비정규직</td><td>- 근로계약서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간제, 단시간, 파견</td></tr>
<tr><td>특수형태</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 • 도급 • 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td></tr>
<tr><td>1인 자영업자</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td></tr>
<tr><td colspan="2">-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td></tr>
</table></td></tr>
<tr><td>접수</td><td>-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td></tr>
<tr><td>선발</td><td>- 1차 수시(즉시)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td></tr>
<tr><td rowspan="2">소액생계비</td><td>융자개요</td><td>- 근로자의 개인사정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휴직이 신고 된 경우 (부득이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 확인된 휴업·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td></tr>
<tr><td>융자한도</td><td>- 200만원 범위 내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td></tr>
</table>

<table>
<tr><td rowspan="10"></td><td>신청기한</td><td>-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td></tr>
<tr><td>신청대상</td><td>-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td></tr>
<tr><td>재직요건</td><td>-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td></tr>
<tr><td>소득요건</td><td>- 월평균소득이 252만원 이하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td></tr>
<tr><td>감소요건</td><td>- 융자대상 월 소득·매출이 융자대상 직전 달의 월 소득·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td></tr>
<tr><td>신청제한</td><td>-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td></tr>
<tr><td>융자조건</td><td>-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td></tr>
<tr><td>보증방법</td><td>-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td></tr>
<tr><td>증빙서류</td><td>
<table>
<tr><td>공통</td><td>-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등 휴업•휴직 확인 가능 서류 또는 사업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 확인 가능 서류
- 별지 제4호서식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월의 소득•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td></tr>
<tr><td>정규직</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td></tr>
<tr><td>비정규직</td><td>- 근로계약서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간제, 단시간, 파견</td></tr>
<tr><td>특수형태</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td></tr>
<tr><td>1인 자영업자</td><td>-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td></tr>
<tr><td colspan="2">-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td></tr>
</table>
</td></tr>
<tr><td>접수</td><td>-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td></tr>
</table>

	선발	- 1차 수시(즉시)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자녀양육비	융자개요	-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	-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500만원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신청기한	-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재직요건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252만원 이하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융자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정규직: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간제, 단시간, 파견 특수형태: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접수	-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선발	- 1차 수시(즉시)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 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접 수 처	-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	
문 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산형성 지원

1)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세부내용
가입대상	- 신청하는 날을 기준, 만 19~34세 청년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50%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50%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본인저축액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지급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처리절차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문 의	- 복지로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2) 꿈나래통장

-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 만 14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가구(3자녀 이상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저축목적	- 자녀 교육비(가입 신청 시 지정한 참가아동 대상)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table>
<tr><td rowspan="5">지원내용</td><td colspan="10">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3">생계·의료급여 수급자</th><th colspan="4">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th><th>비고</th></tr>
<tr><td colspan="2">본인저축액
(선택)</td><td>5만원</td><td>7만원</td><td>10만원</td><td>5만원</td><td>7만원</td><td>10만원</td><td>12만원</td><td>-</td></tr>
<tr><td colspan="2">매칭지원금</td><td>5만원</td><td>7만원</td><td>10만원</td><td>2.5만원</td><td>3.5만원</td><td>5만원</td><td>6만원</td><td>-</td></tr>
<tr><td rowspan="2">총
적립
금</td><td>3년</td><td>360만원
+이자</td><td>504만원
+이자</td><td>720만원
+이자</td><td>270만원
+이자</td><td>378만원
+이자</td><td>540만원
+이자</td><td>648만원
+이자</td><td rowspan="2">매월
적립
시</td></tr>
<tr><td>5년</td><td>600만원
+이자</td><td>840만원
+이자</td><td>1,200만
원+이자</td><td>450만원
+이자</td><td>630만원
+이자</td><td>900만원
+이자</td><td>1,080만
원+이자</td></tr>
</table>
</td></tr>
<tr><td>신청절차 및
일정</td><td colspan="10">- 신청기한은 매년 상이함
-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 자격여부 심사 → 선정 → 통장개설</td></tr>
<tr><td>저축방법</td><td colspan="10">- 매월 자동이체</td></tr>
<tr><td>문 의</td><td colspan="10">-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거주지 주민센터</td></tr>
</table>

3) 디딤씨앗통장

- 양육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하여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가입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 (베이비박스 아동, 입양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모자가족,조손가족,부자가족,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 **입양아동**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지원기간	-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액 - 추가 적립액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 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가입기간	-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중도해지는 사망, 이민 등의 사유에만 가능)
지원내용	- 아동이 직접 저축을 하거나, 후원받을 경우 정부가 1:2 비율로 지원 • 적립가능 금액: 월 최대50만원, 연 600만원까지이며, 월 최대 지원한도는 10만원 - 기본매칭적립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정부매칭 지원금으로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 - 추가적립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 가능, 월 5만원 넘는 추가 적립액 국가 매칭 불가(최대지원금 월 최대 10만원)
신청절차	- 동 주민센터 신청 → 자격여부 심사 → 선정 → 통장개설(신한은행)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문 의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주민센터

6 의료지원

▢ KT&G 복지재단

1) 성인 보호자 의료비지원[7]

구분	치료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2인 이상 가정 내 보호자 (만19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내 성인) - 등본 상 단독세대 또는 시설수급자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의료비 100만원 지원 - 치료비, 수술비, 재활, 보장구 구입 등 (간병비 제외) - 병명 제한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치료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
지원절차	
제출서류	※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①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2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② 경제상황 증명서류 (택1)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관련 증명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중위소득 100%이하 증명서(아래 2개 서류 모두 제출, 세대 내 소득발생 가구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③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 노출 필수) ④ 기관 후원금 통장사본 ⑤ 기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⑥ 개인정보동의서 (KT&G 복지재단(http://www.ktngwelfare.org/business/kangaroo)→사업안내→취약계층지원사업→의료비지원→제출서류(필수확인)→첨부파일
문 의	- KT&G 복지재단: ☎02-563-4459

7) KT&G 복지재단(http://www.ktngwelfare.org/business/kangaroo)→사업안내→취약계층지원사업→의료비지원

2) 아동 의료비지원[8)]

구분	치료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 아동 (만18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내 아동)
지원내용	- 의료비 500만원 지원 - 치료비, 수술비, 재활, 보장구 구입 등 (간병비 제외) - 병명 제한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치료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
제출 필요 서류	※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①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2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② 경제상황 증명서류 (택1)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관련 증명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중위소득 80%이하 증명서(아래 2개 서류 모두 제출, 세대 내 소득발생 가구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③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 노출 필수) ④ 기관 후원금 통장사본 ⑤ 기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⑥ 개인정보동의서 (KT&G 복지재단(http://www.ktngwelfare.org/business/kangaroo) →사업안내→취약계층지원사업→의료비지원→제출서류(필수확인)→첨부파일
지원절차	지원절차 ※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사회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 (개인 신청 불가) 01 재단 홈페이지 사연접수 02 매 월 마지막주 1명 선정 03 2주 이내 기관 후원금 통장 입금 04 결과보고 제출
문 의	- KT&G 복지재단: ☎02-563-4459

8) KT&G 복지재단(http://www.ktngwelfare.org/business/kangaroo)→사업안내→취약계층지원사업→의료비지원

▢ (재)아름다운 동행

1) 개안수술 지원사업[9)]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가정 환자 • 망막질환, 각막이식 등 안과적 수술로 실명 예방 또는 시력 회복이 가능한 자 차상위 및 수급자 우선 지원
지원금액	- 개안수술에 필요한 수술비 및 치료비 (본인부담액 총액)
지원범위	- 망막질환: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 - 각막이식수술: 각막손상으로 인하여 이식수술이 필요하며, 각막이식 가능한 환자 - 기타 안질환: 백내장, 녹내장 등 안질환 수술이 필요한 환자 - 각막이식수술은 지정병원에서만 수술 가능(동국대 일산 병원) - 입원비의 경우 일반기준(4인이하)으로 지급됨 - 지원결정 후 수술에 한해 지원됨 - 지원제외: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 간병비, 보호자 식대,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및 해당 지원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의료비는 제외
지원방법	- 매월 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 지원 - 연중 수시 진행
지원절차	- 복지사업수행단체(종합사회복지관, 병원 사회사업팀도 가능)를 통해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개인신청불가)
서류 및 신청방법	-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 → 지원신청 → 지원사업 안내 참고
문 의	- 나눔사업팀: ☎02-737-9595

2)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구분	재활치료비
지원대상	- 서울/경기 지역 거주하는 사회참여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시설 거주자 제외)
지원내용	- 사회참여 및 육아지원을 위한 500만원 내외의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사용 및 관리 교육 서비스 제공 - 보조기기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문 의	-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9) 아름다운동행(www.dreaminus.org)

▢ 한국여성재단

1)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여성가장 (개인 신청 불가능)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사례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치과 치료비(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가능. 교정치료 불가) - 심사과정 중 연계된 치과의 검진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절차	서류 접수 ⇒ 1차 서류 심사 ⇒ 2차 검진치과 연계 및 심사 ⇒ 최종심사 및 발표 ⇒ 치료 및 사례관리 ⇒ 결과 보고 ⇒ 의료비 지원 (결과보고 검토 후) - 개인 직접 신청 불가, 반드시 추천단체를 통해 이메일 접수 - 상·하반기 신청기간 홈페이지 참고
문 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1팀: ☎02-336-6389

▢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의료비 지원[10)]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등록체류, 미등록체류 포함) - 다문화가족 및 직계혈족(형제, 자매 제외) - 난민 및 그 가족(위 지원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 - 기타 의료소외계층 (내국인의 경우 서울적십자병원 내 의료사회사업팀 우선 상담)
지원기준	- 마지막 입국일 기준 최근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자 -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 작성 시 일정 점수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안과 등 - 외래 및 입원 지원 (지원불가: 외래약,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CD복사, 치과 치료, 보호자 식대) -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지원률(50~100%) 결정
지원절차	센터담당자 전화문의 및 의뢰서 송부 ⇒ 서울적십자 병원 진료 후 희망진료 센터방문 ⇒ 환자 병원 내원 및 면담 ⇒ 내부심사 후 지원율 결정 ⇒ 외래 또는 입원치료 시행 - 반드시 서울적십자병원 진료 후 희망진료센터방문 - 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본원 진료협력팀을 통해 입원 결정 후 상담 진행
문 의	-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02-2002-8740

10) 희망진료센터(http://www.rch.or.kr/hope/)

▢ 우천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지원인원: 분기별 2인 (모금 종료 후 해당 신청기관 계좌로 입금) • 국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중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 예정인 자 • 질병의 제한은 없으나, 암, 희귀난치성 질병 등 우선 지원 대상 있음 • 진단 및 검사를 위한 비급여항목 신청 가능(치료 계획 첨부) • 일반적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기타 재단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네이버 해피빈 공개모금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선정자의 사연 및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함
지원내용	- 재단 지원 치료비 100만원 + 네이버 해피빈 및 기타 모금액 전액 - 실제 총 지원금액은 모금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대상자 직접 신청 불가 - 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 신청 가능
지원방법	- 선정 후 의료비는 개인이 아닌 신청기관의 계좌로 입금 - 선정 후 약 2개월 모금 진행 - 모금 완료 후 3주 이내 치료비 전달식 진행 및 모금액 지급 예정(추후 협의) - 지원 후, 기관 공문과 함께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재단양식) 1부 제출요망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하여, 신청기간에 따라 신청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https://www.woocheon.or.kr
문 의	- 분기별 1회(연4회) - 재단사무국: ☎02-851-6798

▢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의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수술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 기타사항: 치료 후 사회복귀가 가능한 경우, 외국인은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본인에 한함 ※ 제외대상 만성질환, 장기입원 환자, 치과/정신과 치료, 미용성형, 로봇수술, 교통사고, 각종 상해 및 사고, 자살시도 환자 등 제외
지원내용	- 수술 등 긴급 치료비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수혜 금지) - 지원한도: 1인당 1천만원 이내 (연 1회) - 지원금액: 신청금액 별도 심의(의료비 및 재산 정도를 심사 후 차등 지원)

지원절차	해당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 진행 ⇒ 결정 통보 (병원: 공문) ⇒ 의료비 영수증 등 제출(매월 10일까지 도착) ⇒ 의료비 지급(매월 말일까지 해당병원에 입금) - 심사를 통해 결정된 대상자 의료기관으로 입금
지원방법	- 해당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 개인신청 불가 - 온라인 접수(향후 영수증 등은 우편으로 원본 제출)
문 의	-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7 위기지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 rowspan="4">긴급
지원
대상
기준</td><td>위기
사유</td><td>-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임신·출산·양육등으로 소득이 미미한 경우(각지자체조례에 명시)</td></tr>
<tr><td>소득</td><td>-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794,010원, 4인기준 4,573,330원)</td></tr>
<tr><td>재산</td><td>-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td></tr>
<tr><td>금융</td><td>-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td></tr>
<tr><td colspan="2">지원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td><td><table>
<tr><th>종류</th><th>지원내용</th><th>지원 금액</th><th>최대횟수</th></tr>
<tr><td>생계</td><td>- 식료품비, 의복비, 난방비 등 생계유지비</td><td>73만 500원/월(1인 기준)
187만 2,700원/월(4인기준)</td><td>6회</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지원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td><td>
<table>
<tr><th>종류</th><th>지원내용</th><th>지원 금액</th><th>최대횟수</th></tr>
<tr><td>의료</td><td>-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td><td>300만원 이내</td><td>2회</td></tr>
<tr><td>주거</td><td>-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가능
(생계비 지원 중 또는 종료 후 3개월이내)</td><td>39만 8,900원/월 이내
(대도시 1인 기준),
66만 2,500원/월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3,000만원이하대출지원
(서울.경기.인천기준/본인부담금5%)</td><td>12회</td></tr>
<tr><td>복지시설 이용</td><td>-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td><td>55만 2,000원/월(1인 기준)
149만 4,100원/월(4인기준)</td><td>6회</td></tr>
<tr><td>교육</td><td>-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td><td>초: 12만 7,900원/분기
중: 18만 원/분기
고: 21만 4,000원/분기 및 수업료중:입학금</td><td>2회
(4회)[11]</td></tr>
<tr><td>그 밖의 지원</td><td colspan="2">-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 원/월
-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각 1회</td><td>1회
(연료비 6회)</td></tr>
<tr><td>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td><td colspan="2">-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상담 등 기타 지원</td><td>횟수제한 없음</td></tr>
</table>
</td></tr>
<tr><td>지원절차</td><td>
<table>
<tr><th>지원 절차</th><th>세부내용</th></tr>
<tr><td>지원요청 및 신고</td><td>-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 요청/신고 발생시 현장 확인
- 대상자,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군・구청장</td></tr>
<tr><td>현장 확인</td><td>- 1일 이내 실시
-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td></tr>
<tr><td>지원결정 및 지급</td><td>- 현장 확인 후 지원 필요시 지체없이 실시</td></tr>
<tr><td>사후조사</td><td>- 소득 및 재산/ 1개월 이내</td></tr>
<tr><td>적정성 심사</td><td>- 3개월 이내/ 사후조사보고서 토대</td></tr>
<tr><td>적정, 부적정</td><td>- 적정: 종료/지원연장
- 부적정: 지원 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td></tr>
</table>
-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정적 결정 후 처리
</td></tr>
<tr><td>문 의</td><td>-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td></tr>
</table>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childsupport.or.kr/)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오프라인 등기 서류 발송
	지원요건	- **지원 요건** :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9개월) - 1회에 한 해 3개월 연장 가능
	문 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서울형 긴급복지

구분		세부내용
긴급 지원 대상 기준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요위기사유: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용 준용)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구분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09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11) 주거지원(최대 12개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재산	- 4억 900만원 이하
	금융	- 1,0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		- 위기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생계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700원
의료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1회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추가위기사항 1회 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 추가
  - 의료지원: 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 국민기초생활 생계, 의료 등 지원 시 중복지원 제외

지원절차

위기 가구		지원결정		지원		사후조사(확인)		사후관리
신청자, 담당공무원, 기타 모든 주민 등 위기가구발굴	긴급 ↗ ↘	① 담당자 선지원 ②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② 동/구 사례회의	➜	생계비 • 의료비 등 지원 (현물/현금) 동/구→대상자	➜	**① 기존 복지대상자** (수급자,긴급복지 등) ↓ **② 일반대상자** 차상위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	타제도 후원연계 (구/동)

문 의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02-120

▢ 바보의 나눔: 여성가장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혹은 종사했으나 실직한) 실질적 여성가장 (차상위, 저소득층 포함 비수급권자 우선 지원) -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범위	-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야

생계비	-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신청 불가 - 대출금 상황 신청 시 대출 발생 사유 기재

	의료비	- 병원에서 환자의 병원 미납금 신청 불가 - 긴급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 병원 내 의료비 지원 등 외부 자원 연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재단으로 신청하는 사유를 담당자 기술지에 기재
신청단체	-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월 기준 최대 1명까지 신청 가능)/개인신청 불가	
접수기간	- 매월 5일 18시까지 접수 (5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다음 날까지 접수 가능)	
접수방법	-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 여성가장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지원절차	지원절차	세부내용
	서류접수	- 매월 5일까지
	서류검토	- 매월 12일까지까지 신청자료 보안요청 및 내용 정리
	서류심사	- 매월 22일까지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 (심사분야: 여성, 의료, 복지)
	최종발표	-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지원금 지급	- 매월 말 ~ 익월 초, 신청 단체로 송금 (신청 단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재송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기관 후 1개월 이내
문 의	- 나눔사업팀: ☎02-727-2504	

▢ 신한희망재단: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과 재기 목표가 있는 가정 및 개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09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항목	항목세부	지원금액
생계주거비	- 공과금, 월세, 주거환경 개선비, 이사비, 주거물품 구입비	1가구당 최대 300만원
생활비	- 생활 필수물품, 주부식, 피복 등	1가구당 최대 150만원
교육양육비	- 보육료 및 학비, 급식비, 교복구입비, 직업훈련 활동비	1가구당 최대 300만원

	<table><tr><td>의료비</td><td>- 입원(통원)치료비 및 수술비, 심리치료비, 의료기기(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검사비, 간병비</td><td>1가구당 최대 500만원</td></tr><tr><td>재해·재난구호비</td><td>- 항목 구분 없이 필요 금액 지원</td><td>가구당 최대 1,000만원</td></tr></table>
신청단체	-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
지원절차	<table><tr><th>지원절차</th><th>세부내용</th></tr><tr><td>모집 공고</td><td>- 차수별 모집 공고</td></tr><tr><td>기관 신청</td><td>- 개인의 경우, 기관을 통해 신청</td></tr><tr><td>선정 심사</td><td>- 주 1회 심사</td></tr><tr><td>선정 및 지원</td><td>- 기관입금, 최소 1주 ~ 2주 소요</td></tr><tr><td>지원금 집행 및 사례관리</td><td>- 기관별 모니터링</td></tr><tr><td>결과보고</td><td>- 종료 후 1개월 이내</td></tr></table>
신청기간	- 평일 10시 ~ 18시
신청방법	- 신한희망사회프로젝트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 지원신청
문 의	- 신한희망사회프로젝트 사무국: ☎02-1600-2062

▢ 이랜드복지재단 위기 지원사업 'SOS위고(WE GO)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로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 가정
지원내용	- 치료비: 일반 치료비, 수술시 발생하는 보장구 (최대 500만원) - 생계비: 수도광열비, 식료품비, 생필품비, 의복비, 자녀 학습비 (최대 300만원) - 주거비: 월 임대료,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LH 임대보증금(최대 300만원) - 자립비: 치과진료비, 취업자격 교육비 (최대 500만원) 간병비, 자녀돌봄비 (최대 200만원) - 물품비: 생필품, 식료품, 의류(물품) (30만원) -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생계비, 주거급여 월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회, 단기/일시 지원으로 1가정 생애 1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soswego.co.kr), 사례관리 기관을 통한 접수 (개별 신청 불가,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통한 신청)
신청절차	

구분	세부내용
신청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신청(상시접수)
심사	- 영역별 심사(지원 사각지대, 위기 상황, 경제 상황, 삶의 변화 및 문제 해결 가능성)
발표지원	- 접수 이후 3일 이내 발표
지원 사례관리	- 현금지원 및 물품 지원 - 물품지원은 SOS위고 이랜드 복지재단 봉사단을 통한 신청만 가능 (문의 필수)
결과보고 모니터링	- 결과보고서(지원금 소진 이후 1개월 이내 작성 및 제출), - 예산집행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대상자 후기 및 사진 제출

문 의	- 홈페이지: 이랜드재단(https://www.everys.co.kr/) - 이랜드복지재단: ☎02-2644-0110

▢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집중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 가능성이 높고 자립•재기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및 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 - 단, 자살 시도자, 자살 의도자, 자살 유가족 등은 중위소득 140% 이하 적용
지원내용	- 위기 상황 극복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생계비와 주거비, 화재복구비, 심리치료비 등
지원절차	지원신청 ⇨ 1차 심사 및 전화(현장)조사 ⇨ 2차 심사 ⇨ 지원결정 및 지원금 지급 (사례관리기관) ⇨ 사례관리 및 결과보고
신청방법	- 신청자: 사회복지시설 및 지자체,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개인신청 불가) -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 SOS 복지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문 의	-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2563

8 기타지원

▢ 저소득한부모 요금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신청 및 문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용 쌀 할인지원 (기준가격의 약 60~90% 할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전기] 한국전력공사 (☎123) [가스]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이동전화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1인당 1회선(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선까지 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
과태료 50% 이내 감면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 (난방) 주거지의 단열, 창호 공사 및 보일러 보급 지원 - (냉방) 에어컨 보급 지원
문 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 에너지 바우처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대상 - 기후민감계층: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 포함 가구,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지원내용	-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문 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운전면허 교육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발급받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
지원내용	- 운전면허시험 교육 총 12시간 지원(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교육 접수 -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면허시험장 강서, 부산남부, 대구, 인천, 용인, 의정부, 원주,청주, 대전, 전북, 전남, 포항, 제주
문 의	- 각 지역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스포츠 강좌 이용권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정 등의 5~18세 유 • 청소년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일정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확인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문 의	- 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svoucher.kspo.or.kr)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연 14만 원)
신청방법	- 온라인: www.mnuri.kr, 공식 문화 누리카드 모바일 앱 - 오프라인: 가까운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www.mnuri.kr), 모바일 앱([공식] 문화누리카드)

▢ 4대궁 • 종묘 • 조선왕릉 무료입장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발급받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
지원내용	-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 종묘 • 조선왕릉 무료입장
문 의	- 각 궁, 종묘, 왕릉 관리사무소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신청절차</td><td>
<table>
<tr><td>서류준비</td><td>-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운로드 가능
(help.scourt.go.kr 민원안내-양식모음)
- 첨부자료
•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td></tr>
<tr><td>가정법원 제출
(등록 기준지·주소지 관할)</td><td>-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td></tr>
<tr><td>출생신고</td><td>-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td></tr>
</table>
</td></tr>
<tr><td>도움 받을 수 있는 곳</td><td>-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지원내용: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 구조 지원
- 신청서류: 신분증, 도장,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 사건의 첨부자료(위 신청 절차 참고)
① 가구원수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세대원포함)
② 건강보험가입여부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 기준중위소득 확인용: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td></tr>
<tr><td>문 의</td><td>-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양육비 이행 상담(☎1644-6621)</td></tr>
</table>

<table>
<tr>
<td rowspan="7">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안내</td>
<td rowspan="6">복지서비스
지원</td>
<td colspan="2">-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등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양육 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하며,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보완</td>
</tr>
<tr>
<td>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td>
<td>-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 당 월 21만 원~36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2인 가구 기준 약 248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317만 원</td>
</tr>
<tr>
<td>보육료</td>
<td>-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54만원 보육료를 국민행복 카드로 지원(어린이집 보육료)</td>
</tr>
<tr>
<td>가정양육수당</td>
<td>-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 지급</td>
</tr>
<tr>
<td>아동수당</td>
<td>-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td>
</tr>
<tr>
<td>부모급여
(영아수당)</td>
<td>-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中 택1</td>
</tr>
<tr>
<td>건강보험</td>
<td colspan="2">-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 취득대상: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직장가입자)
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
-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간소화(’23. 5월)
-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td>
</tr>
</table>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 어린이(13세 미만)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 이용권 지급 - 서비스 내용: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진료비 지원, 곰팡이 제거, 건강나누리캠프 등 선택
문 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23, 1827)

▢ 온가족보듬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손)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출산·양육지원 등 제공 및 긴급위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봄, 긴급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법률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문 의	- 가족센터 대표번호 (☎1577-9337, www.familynet.or.kr)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9 ~ 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4,000원, 연 최대 168,000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문 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질병·장애 등으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지원내용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 차액은 본인부담
문 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여행 활동 지원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규정 및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준연령 준용 - 저소득층(1,000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100명):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서울·지방 지역 내 개별 숙박여행(1박 2일) 상품 - 1박 2일 여행상품(조식 및 1식 포함), 숙소 부대시설 이용권 및 여행자 보험 포함 - 인근 관광지 액티비티 체험권(남산타워 케이블카, 영화 티켓 등) 포함
신청기간	- 2025년 4월 ~ 5월 여행활동 참가자 모집 및 선정
신청방법	- 서울행복여행(www.happyseoultour.or.kr)을 통해 접수 및 예약
문 의	- 서울시 관광정책과: ☎02-2133-2787

▢ 서울 IT희망나눔세상: 사랑의 PC 신청

- 서울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중고PC 와 자치구,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무상으로 기증 받은 중고PC를 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보급

구분	세부내용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서 수혜자격이 있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기타취약계층 -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보급제외	- 서울시, 자치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타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보급 받은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2대를 신청한 경우 세대 당 1대만 보급
제출서류	- 개인 (공통) 주민등록등본 (해당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확인서 별도 첨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비영리 단체증명서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IT희망나눔세상 → 사랑의PC 신청 - 서류제출방법: 팩스 및 우편, 메일 등 - 팩스: 02-768-8992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랑의 PC 담당자 앞 - 메일: seoulpc@seoul.go.kr
문 의	- 서울시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91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사업[12)]

- 연탄쿠폰(광해광업공단)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취약계층(한부모,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 연탄 구매비용 : 가구당 47.2만원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6월 ~ 8월 - 사용: 10월 ~ 4월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12) 한국에너지재단(https://www.koref.or.kr/)

▢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2012.1.1. 이후 출생자, 2025년도 기준)
지원내용	-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 전액 지원
지원백신	- 총 19종, 지원 연령 확인 필요 • B형간염(HepB) • 결핵(BCG, 피내용)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 폴리오(IP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 A형간염(HepA)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 인플루엔자(IIV) •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 파상풍/디프테리아(Td) •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DTaP-IPV-Hib-HepB) • 폐렴구균(PCV)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 수두(VAR)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접종기관	-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사이트 확인
문 의	-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완화

구분		내용
다인 다자녀	승용 자동차	- 2,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2,500cc 미만, 가구원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차령 10년 이상 또는 1,000만원 미만
	승합 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1,000만원 미만
생업용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금순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7세 이하 자녀 양육 한부모 및 청소년 가정 - 양육의지가 있는 한부모 및 청소년 임산부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사업내용	- 통합사례지원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 7개의 자립로드맵 운영(긴급위기지원/임신출산지원/의료비지원/양육지원/심리정서지원/느린 학습자지원/라이프코칭) - 100% 방문 상담을 통해 지원결정
상담신청	- 상담신청 페이지: http://kumsncc.com
문 의	- ☎010-4935-5007, 010-3485-3007 - 이메일: kumsncc@naver.com

▢ 긴급 비상 전화번호

내용	번호	내용	번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120	생명의 전화	☎1588-9191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고민 상담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긴급 전화상담 및 보호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희망의 전화	☎129	어플(앱)	‘다 들어줄 개’

▢ 안전교육 관련

기관	세부내용
학교안전지원시스템 (www.schoolsafe24.or.kr)	- 주관: 교육부 - 내용: 학교안전교육 안전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안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를 교육부 안전 교육 7대 표준안과 교육과정 연계분류에 맞추어 탑재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주관: 행정안전부 - 내용: 재난에 대한 각종 정보를 탑재 (국민행동요령, 재난현황, 안전시설정보, 지진옥외대피소 등)
행정안전부 안전한TV (www.safetv.go.kr)	- 주관: 행정안전부 - 내용: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 대처요령 등을 다양한 영상물로 제작 및 송출
맞춤형 교통 안전 교육 (http://tgis.eseoul.go.kr/traffic_safety/index.html)	- 주관: 서울특별시 - 내용: 연령 및 대상자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자료 탑재
국민안전교육플랫폼 (kasem.safekorea.go.kr)	- 주관: 행정안전부 - 내용: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생활안전/교통안전/자연재난안전/사회기반체계안전/범죄안전/보건안전)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체험관 등 관련 정보 제공

▢ 안전체험시설 현황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관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		
교육목표	놀이와 체험학습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살아있는 지식을 제공		
교육내용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는 방법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을 무료로 운영		
정기휴무	매주 토요일	교육시간	10:30, 13:30 / 6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30명(최소인원 10명 이상)	대상연령	만 5~7세
이용대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입장료	무료
예약방법	- 홈페이지 예약(https://trafficedu.koroad.or.kr ->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관 예약) - 전화 예약(☎02-3498-2072)		

- 목동재난체험관

위 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09		
예약방법	- 홈페이지 예약(https://www.mokdongdstc.com/) - 전화 문의(☎02-2655-2088)		
이용대상	개인, 단체, 기관	입장료	무료
디지털 안전 체험관			
교육목표	재난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학습 및 체험		
교육내용	빨리대피하기 도움요청하기		
정기휴무	매주 월~금	교육시간	10:00, 11:00, 14:00, 15:30 / 6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4~100세
빗물저류배수시설 홍보관			
교육목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알 수 있다.		
교육내용	빗물저류배수시설이 만들어진 이유와 공사과정을 소개한다.		
정기휴무	매주 월~금	교육시간	10:00, 11:00, 14:00, 15:30 / 3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4~100세
자연재난 가상현실(VR) 체험			
교육목표	재난 상황을 가상현실(VR)을 통해 가상으로 체험하여 더욱 쉽고 재미있게 재난 시 대처 상황을 학습 할 수 있다.		
교육내용	화재 가상현실체험, 풍수해 가상현실체험, 지진 가상현실체험		
정기휴무	매주 월~금	교육시간	10:00, 11:00, 14:00, 15:30 / 3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7~50세
재난방탈출체험			
교육목표	자연재난 상황을 게임 기반 학습으로 체험하며 중요 임무를 수행해 볼 수 있다.		
교육내용	홍수, 태풍, 지진, 쓰나미, 화재, 폭염. 가뭄 안전교육		
정기휴무	매주 월~일(예약 시 운영)	교육시간	10:00, 11:00, 14:00, 15:30 / 6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4~100세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위 치	서울 성북구 화랑로 376		
교육목표	안전체험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능력 향상		
교육내용	응급처치, 화재안전, 풍수해, 지진 체험 등		
정기휴무	매주 토~일요일	교육시간	09:00, 14:00 / 12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100명	대상연령	만 5~60세
이용대상	단체 (유치원, 초중고, 장애인 특수학교 등)	입장료	무료
예약방법	- 전화 예약(☎02-975-5315)		

-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위 치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35길 53		
예약방법	- 홈페이지 예약(https://www.isafeschool.com/) - 전화 문의(☎02-406-5868)		
이용대상	개인, 단체, 기관	입장료	무료
미세먼지 • 기후변화 VR체험교육			
교육목표	어린이와 가족들이 VR체험을 통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의식을 가져요		
교육내용	미세먼지 • 기후변화 VR체험교육		
정기휴무	매주 월~토	교육시간	상시 / 3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20명	대상연령	만 6~100세
주말안전체험교육			
교육목표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교육과 안전퀴즈를 풀며 안전의식과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봐요		
교육내용	생활(1주), 재난(2주), 교통(3주), 대형교통안전(4주), 응급처치(1~4주)		
정기휴무	매주 월~금, 토	교육시간	10:00, 13:00 / 9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20명	대상연령	만 3~100세
교통안전교육			
교육목표	교통안전 규칙에 대해 배우고 코스에 따라 자전거 체험을 해보아요!		
교육내용	횡단보도, 통학버스(안전벨트),자전거 안전교육		

정기휴무	매주 토~일	**교육시간**	10:30, 13:00, 15:00 / 9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20명	**대상연령**	만 3~8세
대학생 견학프로그램			
교육목표	향후 교육종사자가 될 대학생 및 어린이 안전 관련 직종 취업 예정자들에게 아동안전교육방법 전수 및 시범 진행		
교육내용	안전체험관 전관 시설견학 및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기휴무	매주 토~일	**교육시간**	상시 / 6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60명	**대상연령**	만 18~64세 (대학생 대상)
대형교통안전교육			
교육목표	철도 · 선박 · 항공 내 안전수칙을 배우고 비상탈출 체험을 해보아요!		
교육내용	철도안전, 선박안전, 항공안전		
정기휴무	매주 토~일	**교육시간**	10:30, 13:00, 15:00 / 9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60명	**대상연령**	만 4~100세
생활안전교육			
교육목표	우리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방법을 배워봐요!		
교육내용	가정안전, 신변안전, 승강기안전		
정기휴무	매주 토~일	**교육시간**	10:30, 13:00, 14:30 / 9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40명	**대상연령**	만 3~5세
안전동화구연교육			
교육목표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교육내용	교통, 위생, 화재 동화구연교육(주제 택1)		
정기휴무	매주 목~일	**교육시간**	상시 / 4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25명	**대상연령**	만 2~3세
응급처치안전교육			
교육목표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고 배워보아요!		
교육내용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체험		
정기휴무	매주 토~일	**교육시간**	10:30, 13:00, 15:00 / 45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20명	**대상연령**	만 4~100세

재난안전교육			
교육목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재난사고의 종류와 대처방법을 알아보고 배워봐요!		
교육내용	지진, 화재, 태풍안전교육		
정기휴무	매주 토~일	교육시간	10:00, 13:00, 15:00 / 45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20명	대상연령	만 4~100세

-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위 치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63		
예약방법	- 홈페이지 예약(https://www.yangcheon.go.kr/anjun/anjun/main.do) - 전화 문의(☎02-2620-4397~9)		
이용대상	개인, 단체,	입장료	무료
심폐소생술 교육(평일 일일 3회)			
교육목표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실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수 있도록 함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실습		
정기휴무	매주 토	교육시간	10:00, 13:00, 15:00 / 12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7~65세(7세 보호자 동반)
심폐소생술 심화반(마지막주 금요일 14:00)			
교육목표	심폐소생술 재교육자를 위한 심화반으로 소아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실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수 있도록 함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실습, 소아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실습		
정기휴무	매주 월~목, 토~일	교육시간	14:00 / 18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20~65세
직장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교육목표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실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수 있도록 함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실습		
정기휴무	매주 월~수, 금~일	교육시간	18:50 / 12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20~65세

외상응급처치 교육			
교육목표	출혈, 화상, 골절, 개물림 사고 등 외상사고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		
교육내용	출혈, 화상, 개물림 사고 발생시 대처법, 응급지혈법, 상처드레싱, 붕대법 실습		
정기휴무	매주 토~일	교육시간	10:00 / 12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8~65세
가족단위 심폐소생술 교육(매주 토요일 10:00))			
교육목표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실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수 있도록 함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실습		
정기휴무	매주 월~토	교육시간	10:00 / 120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30명	대상연령	만 7~65세 (어린이(7-13세) 보호자 동반)
물소화기이용 가상체험			
교육목표	위급상황시 대처능력 향상		
교육내용	물소화기를 활용한 화재진압에서 발생시까지 상황별 대처법 체험		
정기휴무	매주 일요일	교육시간	상시 / 15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5명	대상연령	만 6~60세 (7세미만 보호자 동반)
승강기체험			
교육목표	위급상황시 대처능력 향상		
교육내용	승강식 피난기, 피난사다리 등 완강기사용법		
정기휴무	매주 일요일	교육시간	상시 / 15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1명	대상연령	만 6~60세 (7세미만 보호자 동반)
연기피난체험			
교육목표	위급상황시 대처능력 향상		
교육내용	열, 연기속에서 대피요령과 피난방법 체험		
정기휴무	매주 일요일	교육시간	상시 / 15분 소요
교육인원	최대 20명	대상연령	만 6~60세 (7세미만 보호자 동반)

▢ 보아스사회공헌재단 '보리'의료비 지원 앱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지원대상</td><td>-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그 외 의료급여 1종, 2종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 가능
- 치과는 서울, 경기 외 협력병원 인근 거주자도 신청가능</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지원과목</th><th>내용</th></tr>
<tr><td>안과</td><td>-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td></tr>
<tr><td>치과</td><td>- 충치치료
- 크라운(지르코니아)
- 임플란트
- 임플란트 틀니
- 틀니
- 교정(부정교합)
- 협력병원 재능기부로 35%지원</td></tr>
<tr><td>내과</td><td>- 위 내시경 검사
- 대장 내시경 검사
- 5대 암 검진
- 대장용종절제술
- 위용종절제술
- 내시경이물제거술</td></tr>
<tr><td>정형/신경외과</td><td>- 무릎인공관절수술
- 고관절인공관절수술
- 어깨회전근개파열수술
- 어깨인공관절수술</td></tr>
<tr><td>이비인후과</td><td>- 청각장애진단
- 축농증 수술
- 만성비염수술
- 비중격교정술
- 보청기</td></tr>
</table>
</td></tr>
<tr><td>지원방법</td><td>- '보리'앱을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보리앱 이용가이드 확인</td></tr>
<tr><td>문 의</td><td>- ☎1661-1402 (상담시간 9:30~16:00)</td></tr>
</table>

▢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

구분	주소	전화번호
강북삼성병원	종로구 새문안로 29	☎1599-8114
건국대학교병원	광진구 능동로 120-1	☎1588-1533
경희대학교 병원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02-958-8114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구 구로동로 148	☎02-2626-1114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북구 고려대로 73	☎1577-0083
삼성서울병원	강남구 일원로 81	☎1599-3114
서울대학교병원	종로구 대학로 101 의생명연구원 1층	☎1588-5700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구 언주로 211	☎1599-6114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 연세로 50-1	☎1599-1004
이대목동병원	양천구 안양천로 1071	☎1666-5000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1688-7575
중앙대학교 병원	동작구 흑석로 102	☎1800-111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구 반포대로 222	☎02-1588-1511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 왕십리로 222-1	☎02-2290-8114
경희대학교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02-958-8114

V.
부록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2027)

1 2 3 4 5

부록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3~'27)

Ⅰ 수립 배경

◈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시행('21.4) 됨**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기반 마련
* (국정과제 48)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단계적 확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등

□ 한부모가구는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이하)**가 절반**에 달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자립기반도 취약**

○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로 낮으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도 **27.9%에 불과**해 **낮은 상황**

○ 한부모는 **임신·출산 및 자녀의 돌봄 문제로 학업 유지 및 취업에 애로**

※ 청소년한부모(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 비율 24.9%('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취업 시 어려움을 겪는 사유로 자녀 돌봄 문제가 18.4% 차지('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주거, 의료, 직업 훈련, 인식 개선 등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다변화 요구 증대**

* 생계비, 양육비 등 제외하고, 주거지원(13.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6.9%), 의료지원(6.8%), 직업훈련/취업/학업 지원(3.6%), 사회적 인식/차별 개선(3.5%) 순('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Ⅱ 정책 진단

□ (정책 성과)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07)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

○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15.3월)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21.6월)

□ (개선 과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

➡ 한부모가족이 처한 **제반 환경과 정책적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 과제 도출 필요**

Ⅲ 추진 과제

비전	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 든든한 국가

목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한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대과제1]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적정성 검토

* (현행) 양육비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 상향*** 및 **생계비 지원 범위****에 대한 **합리적 지원 기준 검토**

* (현행)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한부모 72% 이하)

** (현행) 시설입소 한부모 대상(중위 60%)에게만 월 5만원 지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등 제외)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수요자 중심 기능·특성별 시설 유형 개편** 및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속 확대**

* 기본 입소기간 확대(현행 대비 1~2년) 및 연장기준 완화 등

** 주택 수 현황(누적) : ('21) 222호 → ('22) 245호 → ('23) 266호 목표

○ 영구임대 주택(공급 규모 40m^2 이하) 공급 시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 (현행)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등 → (개선) 한부모 가족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추가

3 한부모가족 건강관리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 **단계적 상향**하고,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전국 보건소로 확대** 추진

* (현행)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개선) 단계적 연령 상향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임상심리사 배치, 고위기 청소년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 효과성 측정 등 자살·자해 관련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대과제2]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1 자발적 양육비 이행 촉진

○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채권 확보 및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성년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 개선**을 **위한 면접 교섭** 지원

○ **양육비 이행 소송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 **저소득층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자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정보제공 · 상담 ·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및 기술 · 경영 지도 등

2 고의적 양육비 채무 이행 강화

○ **이행명령 결정** 후 **양육비 불이행 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송달방법 특례를 적용****해 **소송 기간이 단축**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 (현행) 이행명령 불이행 → 감치명령 → 제재조치(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 (개선) 이행명령 불이행 →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 검토

** (현행) 양육비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교부송달 및 공시송달(약 3개월 소요) → (개선) 주민등록표 주소지로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약 10일 내외 소요)

○ **운전면허 정지 대상*** **확대 및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 단축**(3개월 이상 → 10일 이상)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 (현행) 생계유지 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 유예 → (개선) 생계유지 목적 및 양육비 이행계획 승인 받은 자에 한하여 정지처분 유예

○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효과 등의 분석 · 평가**를 거쳐 **선지급제 도입 관련 검토**

2025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매뉴얼

한부모가족 종합가이드북

발 행 처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75, 4층
T E L 02-861-3020
F A X 070-7469-3024
홈페이지 www.seoulhanbumo.or.kr

※본 자료집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있습니다.